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7

한 · 중 · 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姜文盛 · 朴淳讚 · 宋有哲 · 尹美京 · 李 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政策研究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姜文盛·朴淳讚·宋有哲·尹美京·李 根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간사

세계경제의 무역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의와는 담을 쌓고 지냈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FTA 체결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기에 모색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통상대국의 꿈을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저희 경제사회연구회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우리 경제 운영에 중·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한·중·일 FTA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초부터 이 연구에 필요한 연구재원을 확보하고, 2002년 하반기에 이 연구를 주관할 연구기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말 중국의 주룽지 당시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검토를 제안함으로써 저희 연구회의 연구주제 선정이 시의성이나 내용 면에서 바람직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매년 10권 내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연구 첫해인 2003년에는 한·중·일 FTA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2004년에는 각 산업 및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며, 연구 마지막 연도인 2005년에는 한·중·일 FTA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2003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 첫해에는 9권의 보고서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연구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참여 연구기관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연구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협동연구에 참여한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진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연구회의 玉台煥 사무국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鄭仁敎 FTA 연구팀장은 광범위한 연구분야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협동연구의 보고서가 한·중·일 FTA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방향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文 石 南

2003년도 한·중·일 FTA 협동연구 보고서 제목

보고서 시리즈 번호	보고서 제목	집필 책임기관
03-01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2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3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산업연구원
03-04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03-05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03-06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 연구원
03-07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8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9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서 언

1880년 일본에 修信使로 갔던 金弘集이 국내에 들여온『조선책략』은 당시 청나라 주일공사관이 참사관으로 있던 황준헌이 저술한 것입니다. 황준헌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선・일본・청국이 펼쳐야 할 외교정책을 이 책에서 논술하였습니다. 주된 결론은 조・일・청 3국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배워야 하며,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는 동양 3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선에 제시하였는데,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속하며, 미국과 연대할 것을 권유하는 '親中國・結日本・聯美邦' 입니다.

21세기의 상황이 구한말과 같지는 않지만, 황준헌의 제안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regionalism)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동아시아지역만이 그런 추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다자무역체제의 진전에만 노력해 왔고, 중국은 2001년에서야 다자무역체제인 WTO에 가입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중국 역시 자유무역협정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주의 핵심은 한・중・일 3국이 어떠한 형태로 경제통합을 이룩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질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역규범 분야는 한·중·일 3국이 '규범 중심의 경제통합(rule-based economic integration)'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한·중·일 3국 모두 유교사상에 바탕을 두고 근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전체국가 및 사회의 운영이 법률의 바탕 위에 있는 법치(法治)라기보다는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인치(人治)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 아래 한·중·일 3국간의 경제통합 논의에서 규범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본 보고서는 이러한 규범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무역규범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의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운용현황과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고, WTO규범과 같은 다자체제의 규범,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규범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 분야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논의될 경우 어떠한 점이 쟁점사항으로 될 것인지 판별하였고,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제기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무역규범 관련 협상이 진행될 경우 이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각종 무역규범의 강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각종 무역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국은 우리보다 비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이 이룩될 경우 3국간 무역규범의 조화(harmonization)를 통해 3국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대외통상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업, 일반 국민 등 우리 경제주체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한·중·일 무역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한·중·일·한일·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이 시작되어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 무역투자정책실의 姜文盛 박사, 朴淳讚 박사, 宋有哲 박사, 尹美京

박사와 서울대 경제학과의 李根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으며, 집필과정에서 본원 蔡旭 부원장, 무역투자정책실 金準東 박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의 池晩洙 박사와 공주대학교 李鍾華 교수, 한양대 韓弘烈 교수, 숙명여대 兪鎭守 교수 등이 귀중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의 추진에 있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제사회연구회에도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200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원산지 규정>

한·중·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3국간 FTA의 원산지 규정의 기본 원칙은 공평하고 투명하며,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성 있고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단명료하고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정으로 구성된다면 FTA의 기본 목표라 할 수 있는 무역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를 들 수다. 그 이유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산업구조 및 보완관계가 한·중·일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입장관철에 있어서 한국의 향후 산업구조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은 과감히 양보하고 우리의 산업구조전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각국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정

책적 함의도 갖고 있다.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산지 규정은 향후 산업발전의 방향에 따라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원산지 규정은 21세기 한국의 산업발전 전망에 기초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덤핑>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반덤핑에 대해 견지해야 할 입장과 원칙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이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 자국산업을 보호하여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데 남용되는 수단인 반덤핑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공동의 반덤핑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이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 조사당국의 자의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반덤핑 개정조례는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새롭게 개정된 것이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면 규정이 더 모호하고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한국과 일본은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DDA협상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듯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 마련되어야 할 반덤핑협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모호한 규정을 지니고 있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을 대폭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DDA협상 규범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반덤핑 프렌즈 그룹에 속하고 현행 WTO 반덤핑협정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일 3국의 입장과 공동노력은 동북아 FTA의 추진에 따른 반덤핑협정의 제정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WTO 보조금협정보다도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상계조사개시 및 상계조치 부과 건수의 통계를 살펴보면 WTO보조금협정보다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규범 설정은 한국에 이롭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 반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되는 특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계조사를 실시할 경우 특별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보조금 규율을 WTO 보조금협정보다 강화할 경우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WTO규율 수준에서 보조금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농업보조금의 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부문의 수출보조금을 금지하면서 WTO 농업협정에서의 보조금 규정보다도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진전된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중이 높아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농업 현실상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중·일 FTA 협상과정에서도 농업보조금 문제에 한국의 농민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 한국정부로서도 농업보조금을 규제할 유인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한·중·일 FTA 협상과정에서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중국의 규정 중 일부 조항은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하지 않는데, 한·중·일 FTA 추진시 이러한 부분이 협상과정에서 거론되

고 사전에 시정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판정을 내려 상계조치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러한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경쟁정책>

경쟁규범의 실체 내용의 조화는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경쟁법의 집행은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등을 전제로 수행되는 것으로 법제의 통일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주권 국가간 단기간에 조화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경쟁정책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통상마찰의 방지라는 점에서 경쟁법의 조화보다는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쟁법의 대상이 되는 실체규정은 한·중·일 모두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으며 규제강도가 대체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실체규정보다는 대다수의 자유무역협정에서와 같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국의 경쟁법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 대한 예양을 존중하면서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협력 체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외적용의 발효 기준, 절차적 관할권 확보 과정에서의 협력을 위한 통보, 협의, 국제예양 및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사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각국과 양자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일본 및 중국과 정기적으로 경쟁당국간 회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분산된 집행체계는 이러한 협의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국이 포괄적이고 통일된 경쟁법제와 집행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3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반독점법(안)의 조속한 도입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에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것도 이 과정의 가속화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의 경우에는 경쟁법 수준의 차이가 많은 나라들간의 FTA인 NAFTA가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다. 특히 NAFTA는 멕시코에서의 경쟁법 도입 및 경쟁촉진을 위한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NAFTA는 국영기업, 공기업 등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을 고려한다면 한·중·일 FTA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중국의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실체 내용의 측면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필요설비에 대한 접근 등이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는 TRIPS-plus방식을 채택하여 3국이 최소한 TRIPS협정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동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TRIPS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으나 한·일은 가입한 반면 중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표법조약을 중국이 가입토록 유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일부국의 국내 지적재산권법과 TRIPS 규정과의 불합치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국내 지적재산권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조항자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와 침해억제책의 유효성에 집중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TRIPS에서 포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도 각국간의 집행력에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국내의 집행부분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특히 중국의 집행력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중국의 국내적 시행조치를 좀더 투명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TRIPS 수준의 지적재산권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훈련, 집행 등을 협력 및 감독할 기구를 설치한 지적재산권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를 한・중・일 3국간에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상표권의 담당부처가 특허청 및 문화관광부 (중국은 지식산권국, 국가공산국, 상표국, 국가판권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제분쟁발생시 효과적인 대처와 협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에서 저작권 분야는 각국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조약이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고, 현재 일본만이 가입한 실정이다. 인터넷의 활성화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조약의 준수여부가 TRIPS가 규정한 수준을 넘는 쟁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이 지적재산권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일정한 수준까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 주제는 이미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미 특허절차의 통일과 조화를 꾀하는 특허법조약이 체결되었다(2000년 체결). 어떠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 즉 특허요건(특히 비기술분야로의 특허대상확대)에 대해 각기 나라별로 상이한 법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실체특허법조약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선행기술공동조사의 확대, 데이터베이스

의 활용, 한·중·일 지역특허청설립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실질적 보증을 통하여 지적재산 창출을 확대하고, 3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차 례

발간사 ····· 5

서언 ····· 7

국문요약 ····· 10

제1장 서론 ····· 25

1. 연구배경 및 목적 ····· 25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 25

나. 연구의 목적 ····· 27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8

제2장 원산지 규정 ····· 31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 31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 31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 33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 36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 40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 43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 43
3. 한・중・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 44
가. 한국 ····· 44
나. 중국 ····· 50
다. 일본 ····· 52
4.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 54

제3장 반덤핑 ····· 59
1. 반덤핑과 무역 ····· 60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 60
나. 한・중・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 64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 68
2. WTO의 반덤핑협정 ····· 74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 74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 75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 76
가. EU(European Union) ····· 77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 77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 78
라. NAFTA ····· 79
마. 캐나다-칠레 FTA ····· 79
바. 한국-칠레 FTA ····· 80
4. 한・중・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 82
가. 덤핑의 결정 ····· 83
나. 피해판정 ····· 88
다. 덤핑의 조사 ····· 95

라. 반덤핑 조치 ····· 99
마. 재심 ····· 104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105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 109
1. 보조금과 무역 ····· 109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 109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 110
2. WTO 보조금협정 ····· 111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 111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 114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 120
가. 보조금 관련 규정 ····· 120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 124
4. 한・중・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 127
가. 보조금 운용 현황 ····· 127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 143
다. 상계조치제도 ····· 146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155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 155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 156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 157

제5장 경쟁정책 ····· 158
1. 경쟁정책과 무역 ····· 158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 162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 162

나. 경쟁관련 WTO 규정 ····· 166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 169
4. 한・중・일 경쟁법・경쟁정책 ····· 175
가. 개관 ····· 175
나. 한・중・일 경쟁정책의 특성 ····· 177
다. 역외적용 ····· 181
라. 경쟁환경 ····· 184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188

제6장 지적재산권 ····· 191
1. 지적재산권과 무역 ····· 191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 194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 199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 202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 204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 205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 207
마. 소결: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209
4.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 210
가.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 210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중・일간의 쟁점 ····· 223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 231
라. 소결 ····· 235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236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39
1. 요약 ····· 239

가. 원산지 규정 ····· 239
나. 반덤핑 ····· 241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 242
라. 경쟁정책 ····· 244
마. 지적재산권 ····· 245
2. 정책적 시사점 ····· 247
가.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247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 248

참고문헌 ····· 250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 263

Executive Summary ····· 275

표 차례

<표 1-1> 주요 FTA에 포함된 항목 비교 ····· 26
<표 2-1> 품목별 원산지 규정 구조 ····· 38
<표 2-2> 핵심정책쟁점(Core Policy Issues) ····· 39
<표 3-1> 미국의 반덤핑제도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 62
<표 3-2> 한·중·일 3국간의 반덤핑 조사 건수 ····· 65
<표 3-3> 중국 반덤핑조사로 인한 수입의 변화 ····· 66
<표 3-4> 중국 반덤핑조사 품목의 수출경쟁력 ····· 67
<표 3-5> 지역경제통합체에서의 반덤핑제도 철폐 여부 ····· 81
<표 4-1>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 조항 ····· 113
<표 4-2> 주요 FTA 또는 CU별 보조금 관련 규정 ····· 123
<표 4-3> 지역무역협정별 상계관세 규정 ····· 126
<표 4-4> WTO 통보대상 보조금 ····· 128
<표 4-5> 한국의 보조금 통보 현황 ····· 128
<표 4-6> 2001년 통보된 한국의 보조금 현황 ····· 129
<표 4-7> WTO 통보된 보조금 규모(2000년 기준) ····· 130
<표 4-8> 2002년 통보된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현황 ····· 132
<표 4-9> WTO에 통보된 일본 중앙정부의 보조금 규모(2000회계연도) ·· 134
<표 4-10> 2001년 통보된 중국의 보조금 현황 ····· 136
<표 4-11> 중국의 지역별 1인당 GDP(2001년도) ····· 138
<표 4-12> 중국의 보조금 규모 추정(1998년 기준) ····· 140

<표 4-13>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 현황 ····· 141
<표 4-14> 상계조치제도 관련 규정: 「관세법」을 중심으로 ····· 147
<표 4-15> WTO에 통보된 제소국가별 상계조사개시 현황(1995~2002년) ·· 148
<표 4-16> 중국의 상계조치제도 관련 WTO 가입 합의사항 및 이행사항 ··· 152
<표 4-17> 한·중·일 3국의 상계조치제도 비교 ····· 154
<표 4-18> 한국의 연도별 상계조사개시 피제소 및 상계조치 건수 ···· 155
<표 5-1> 현재 WTO협정에 반영된 경쟁관련 조항 ····· 167
<표 5-2> 자유무역협정: 경쟁정책 관련 내용 ····· 172
<표 6-1> TRIPS 협정문의 구성 ····· 196
<표 6-2> NATFA의 지적재산권 영역의 조항 구성 ····· 203
<표 6-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영역의 조항 구성 ····· 204
<표 6-4>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영역의 조항 구성 ·· 206
<표 6-5> TRIPS 규정과 지역무역협정 ····· 208
<표 6-6> 한·중·일 삼국의 국제조약 가입 비교 ····· 219
<표 7-1> 무역규범별 추진 제안 ····· 248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세계경제의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무역규범(trade rules)에 대한 다자·지역·양자간 논의는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활성화의 배경에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 등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교역이 급증하자, 다자차원의 '무역규범의 조화(harmonization)'가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s), 관세동맹(Customs Unions: CUs)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에서도 참여국간의 통일된 무역규범 마련이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무역규범에 대한 초기 논의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규정, 세관통과절차 등에 집중되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중이던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 이후 다자·지역·양자간 무역협상에서 논의되는 무역규범의 범위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정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철폐와 같은 이슈에 관심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비관세장벽은 물론 환경 및 노동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 역시 FTA 조문에 포함되고 있다. 또한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분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 1-1> 주요 FTA에 포함된 항목 비교

구 분	호주・뉴질랜드	미・이스라엘	AFTA	NAFTA	캐나다・칠레	멕시코・칠레	미・요르단	EC・멕시코	한・칠레
출범연도	1983	1985	1992	1994	1997	1999	2001	2001	-
관세철폐	○	○	○	○	○	○	○	○	○
수량제한금지	○		○	○	○	○		○	○
세이프가드조치	○	○		○	○	○	○	○	○
반덤핑・상계조치제도	○	○	○	○	○			○	○
원산지 규정	○	○	○	○	○	○	○	○	○
세관통관절차	○		○	○	○	○	○	○	○
투자	○		○	○	○	○		○	○
서비스	○	○	○	○	○	○	○	○	○
기준・인정(MRA)	○	○	○	○		○		○	○
위생・검역	○	○	○	○		○		○	○
정부조달	○	○	○	○		○	○	○	○
지적재산권	○		○	○		○	○	○	○
경쟁	○	○	○	○	○	○		○	○
분쟁해결		○	○	○	○	○	○	○	○
전자상거래							○		
인력이동				○	○	○	○		○
노동				△	△		○		

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AFTA(ASEAN 자유무역협정: 브루나이, 다루살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는 협정본문이 아닌 부속협정으로 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1』, 채훈(2003)에서 재인용, 개별 자유무역협정의 출범연도와 한・칠레 FTA 항목의 경우 저자 작성

1983년 출범 당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모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ZCER)은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쟁해결에 대한 규범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앞서 지적한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무역규범 범위확대에 획기적인 협정으로 평가되는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특히 NAFTA는 부속협정을 통해 환경 및 노동과 같은 일종의 사회적 이슈(social issues)를 무역과 연계하고 있다. 부속협정 중 '환경협력에 대한 북미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AAEC)'은 환경보존 및 개선,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증진, 환경관련 법률 및 정책의 공조 등을 협정목표로 삼고 있으며, '노동협력에 대한 북미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NAALC)'의 목표는 근로조건 및 생활수준의 향상, 노동법 집행 공조 등이다.

이와 같은 환경 및 노동 이슈의 고려는 미국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미국-요르단 FTA에서도 계승되었다. 미국-요르단 FTA는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이 부속협정이 아닌 본 협정에서 거론된 첫 자유무역협정이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규범까지 마련되었다. 또한 NAFTA 이후 '기업인의 일시적인 입국(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범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나. 연구의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무역규범의 조화는 필수조건이며, 거론되는 무역규범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될 경우 '무역규범의 조화'는 반드시 고려될 협상이슈라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무역규범 운용현황을 비교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범 및 여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규범을 비교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무역규범의 대상은 원산지 규정,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긴급수입제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표준관련조치, 정부조달, 투자, 서비스, 통신 등 여러 가지이나,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규정,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에 연구초점을 맞춘다.

우선 원산지 규정의 경우 한·중·일 3국간 교역되는 상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거나 관세를 철폐할 경우 3국간 교역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반덤핑과 상계조치의 경우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로서 한·중·일 3국이 이들 조치들의 법적·제도적 틀과 운용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3국의 보조금 운용실태를 비교·분석하는데,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확보에 한계가 있어 WTO에 통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 협상시 경쟁정책 분야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역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증진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의 인식공유가 중요한바, 3국의 제도적 측면을 고찰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중국이 협상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전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중국의 열악한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한·중·일 FTA 추진시 고려하여야 할 부문을 제시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원산지 규정이 고찰되는데,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WTO의 원산지 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을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을 비교·분석한 후, 한·중·일 3국의 원산지 규정 및 운용현황을 비교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반덤핑과 관련된 경제학의 이론적 배경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이하 반덤핑협정)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주요 규정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반덤핑제도를 비교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정) 및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현황과 상계조치 관련 제도를 비교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5장에서는 경쟁정책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WTO에서 경쟁정책 관련 규범과 여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책 규정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경쟁법·정책 및 경쟁환경을 비교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6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과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및 현황을 비교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제7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한 규범비교와 현황파악이 연구방법으로 주로 이용된다. 분석에 이용된 문헌은 WTO, OECD 등 국제기구

에서 발간된 보고서와 한·중·일 3국 정부의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되었으며, 개별 분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가 검토되었다.

제2장 원산지 규정

1990년대 들어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역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GATT 24조와 관련하여 GATT/WTO에 통보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 수는 25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170개 이상의 FTA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70여 개 이상의 FTA가 WTO에 통보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간의 관세나 비관세조치에 있어서의 특혜조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산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품의 판정을 결정하는 원산지 규정은 협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협정 체결시에도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도입하기 위하여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진행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WTO에서 행해지고 있는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작업에 대해 살펴본 뒤 한·중·일 3국의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3국간 FTA 체결시 원산지 규정의 협상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상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고 확인하기 위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로 정의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

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조치 등 기타 수입제한 조치와 연계되어 보호무역주의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세계무역자유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원료나 부품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 공정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게 되어 원산지를 판정하는 작업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그 종류에는 특정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 특정국가군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무역상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에 적용되는 특혜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일반적인 상품의 원산지를 반덤핑, 쿼터, 정부조달, 수출입통계작성 등 원산지 판정이 필요한 모든 비특혜무역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타 무역정책상의 목적을 위한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이 있다.

또한 그 기준으로는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세번변경의 해당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세번변경(Change in Tariff Schedule) 기준이 있다. 또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부가가치(Value Added)기준이 있고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생산 공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주요공정(Substantial Process or Operation) 기준이 있다.

이들 기준 중에서 세번변경기준의 장점은 많은 국가가 관세법의 기준으로 HS code를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안정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질적 변형을 나타내는 단일 수준의 세번변경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1] 단순조립과 비단순조립의 구별이 어렵다는

1) HS code의 몇 단위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HS 2, 4, 6, 8단위 중 어떤 단위의 변화가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는가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각 류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점, 또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2]의 발생 등이 그 단점이다. 또한 많은 양의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자에 있어 모든 부품의 세번을 기록하여 원산지의 결정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 HS code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적용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한편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실질적인 변형의 기준으로는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준작성의 어려움, 환율의 변동이나 주요원자재나 부품의 가격변화로 생산비용의 변화가 올 때, 판매가격의 변화가 있을 때 부가가치가 달라져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3]

주요공정기준의 경우, 그 기준이 결정된 이후에는 그의 적용이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자세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일반성이 없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주요공정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나 생산방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무역의 성장이 급속히 진전된 이후 원산지 규정은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수입제품의 생산국 판정뿐만 아니라 수입규제 등의 무역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수입품의

2) 부품과 완제품이 같은 세번하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장난감 기차나 낚싯대 등)가 있는데, 이는 HS code의 본래 목적이 원산지 규정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3) 또한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정확한 수량적 기준(예를 들어 60%)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경우(예를 들어 59.5%)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국적 판정이라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와 생산 활동의 질적인 변화는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으며,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즉 지역주의의 대두는 1990년대에 들어 새로운 조류의 하나인 확대 및 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무역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 규정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다시 말해서 지역간 무역에 특혜관세를 양허하는 경우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특혜관세가 허용되기 때문에, 역외국의 역내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의 판정여부는 제품의 수출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국적기업 및 생산의 세계화(Global Factory)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생산 활동 및 아웃소싱에 의한 역외부품의 사용은 원산지의 결정에 어려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한나라에서 자국산 부품만으로 이루어지던 생산과정과는 달리 현재는 세계 각국의 부품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서 생산과정이 일어나고 있어 원산지 판정이 더욱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잡다기한 원산지 규정이 출현하고 있으며, 각 지역무역협정마다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원산지 규정은 불공정무역, 자국산업보호, 특혜의 제공, 국산품구매(buy national) 정책 등의 적용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즉 2차적 무역정책수단으로서 원산지 규정이 이용되고 있어 원산지 규정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중립성과는 달리 이를 이용한 무역장벽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에 의해 역내산 부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Krishna and Krueger(1995), Falvey and Reed(1998, 2002) 등은 원산지 규정이 부품보호(content protection)를 위해 적용될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은 부품보호정책으로서 효율적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과점체제하에서는 원산지 규정은 시장분할(market segmentation)을 일으

켜 가격차별을 가져옴으로써 역내생산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Ishikawa, Mizoguchi and Mukunoki(2003)의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무역구조의 왜곡도 원산지 규정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관세 등의 보호무역수단이 불공정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규정의 불명료성과 자의성, 규정해석상의 차이점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무역구조의 왜곡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한 특혜지역무역협정이나 개도국 지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들 국가에 대한 특혜의 제공으로 무역구조상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조달의 경우 원산지 규정이 사용되어 자국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자국노동의 고용증대나 하청업체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생산자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구조에 왜곡이 생기게 된다.

또한 투자구조의 왜곡도 발생하게 되는데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따라 기업의 투자지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가 발생하게 되어 투자구조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즉 소지역간의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역내산 제품에 관하여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역외국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투자구조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 기존의 기업보다는 양호한 조건(예를 들어 최신설비, 연금에의 낮은 지출부담, 강성노조의 회피 등)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존기업의 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수입대체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시장을 분할하고 이러한 분할된 시장에서 생산 활동도 수행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볼 때 과잉생산설비의 문제와 이에 따른 생산설비의 활용도 저하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왜곡도 그 부작용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데 실질적 변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경우 생산 단계 중 특정부문에 특화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생산단계를 연구 및 개발, 중간재생산, 최종재생산, 마케팅 및 유통으로 나눈다면, 어떠한 생산단계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거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다고 원산지 규정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생산과정에 특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산업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원산지 규정[4]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의 판정기준에 따라 자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제까지 자국산으로 수출하여 왔던 품목이 그 기준이 변경되어 부품생산국의 제품으로 판정된다면 수출의 부진이나 생산공정의 변화요구, 생산설비의 이전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기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WTO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원산지 규정의 존재에서 오는 혼란을 제거하고자, 공동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의 작업은 지역무역협정에서와 같은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비특혜 원산지의 통일에 관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범세계적인 통일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특혜원산지 규정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자세한 원산지 규정의 정의, 종류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한홍렬(1992) 참고.

이 작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WTO 원산지협정 제9조에 의거하여 WCO의 원산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TCRO)에서 제안 및 기술적 근거제시를 통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미합의사항은 WTO로 송부한 뒤에 WTO 원산지 규정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 CRO)에서 WCO 합의사항에 대한 승인 및 미결 쟁점사항에 대한 결정 등 정책적 결정을 통해 WTO 각료이사회에서 전체작업결과의 승인 및 시행일자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1995년 7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3년 이내인 1998년 7월 완료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시켜 왔으나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완료 시한을 1999년 말로 연장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확인을 위한 WCO의 기술적 검토는 완료된 상태이며, 완전생산물품, 미소가공, 최소가공 등 쟁점별로 논의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WTO 도하개발아젠다(이하 DDA)의 일환으로 원산지 규정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WCO에서는 약 4년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WCO 내에서 합의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1999년 5월에 WTO의 원산지 규정위원회에 통보하였다. WCO의 합의사항은 주로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것으로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CRO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는 각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품목전문가 집단인 WCO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한 분야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합의내용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WCO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 합의내용은 매우 방대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상 전체현황 및 일부 관심품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2-1> 품목별 원산지 규정 구조

구 분	총이슈	타결이슈	미결이슈	타결률
농산물(ch 1~24)	125	66	59	52.8
광물제품(ch 25~27)	10	8	2	80.0
화학제품(ch 28~40)	38	27	11	71.1
가죽(ch 41~43)	8	6	2	75.0
목재 및 제지(ch 44~49)	11	11	0	100
섬유(ch 50~63)	83	52	31	62.7
신발 및 모자(ch 64~67)	14	9	5	64.3
세라믹(ch 68~70)	12	9	3	75.0
보석제품(ch 71)	5	5	0	100
철강(ch 72~73)	12	9	3	75.0
비철금속(ch 74~81)	24	20	4	83.3
금속제품(ch 82~83)	17	17	0	100
기계류(ch 84~90)	86	74	12	86.0
시계(ch 91)	6	5	1	83.3
기타 잡품(ch 92~97)	35	30	5	88.6
합 계	486	348	138	71.6

자료: WTO 통일원산지협상 동향 및 전망(산업자원부)

한편 WCO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실질적인 변형으로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WTO로 이관한 사항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ⅰ) 동물의 사육/비육 및 도축

ⅱ) 육류, 어류, 卵, 채소 등의 건조(drying)

ⅲ) crushing and/or grinding

ⅳ) blending of wine/whiskey

ⅴ) 약품제조를 위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의 혼합(mixing)

ⅵ) 시계의 movement의 생산 또는 최종제품의 완성

vii) 수입된 엔진이 장착된 섀시(chassis)를 이용한 자동차의 생산

viii) 수입 브라운관을 이용한 텔레비전의 생산

ix) sound, image, data의 recording

<표 2-2> 핵심정책쟁점(Core Policy Issues)

쟁점사항	우리 입장	주요국 입장
통일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	선택적 적용 (EU, 브라질, 한국 등 다수국가)	적용 배제 (미국)
직물의 염색 및 날염	염색 및 날염공정 수행국 (EU, 호주, 한국 등 14개국)	직물 생산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 8개국)
철강의 코팅	코팅 공정 수행국 (EU, 브라질, 한국 등 15개국)	강판 생산국 (미국, 아르헨티나 등 4개국)
일반기계류의 조립	세번변경 또는 특정공정 수행국 (미국, 일본, 한국 등 15개국)	45% 부가가치 창출국 (EU, 브라질 등 4개국)
엔진을 장착한 섀시에서 완성차 조립	엔진 장착국 (한국)	완성차 조립국 (미국, 일본, 대만 등 16개국)
가공갑피에서 신발생산	갑피 가공국 (미국, EU, 한국 등 11개국)	신발 조립국 (인도, 일본, 태국 등 4개국)
가축의 도축공정	4개월 사육기준국 (EU, 일본, 한국 등 11개국)	도축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	선박기국 (미국, EU, 한국 등 10개국)	연안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5개국)
설탕의 정제공정	정제공정 수행국 (EU, 일본, 한국 등 7개국)	원당 생산국 (미국, 스위스 등 19개국)
커피의 볶음공정	볶음공정 수행국 (미국, 일본, 스위스, 한국 등 9개국)	커피 원두 생산국 (브라질, 콜롬비아 등 16개국)
우유 조제품 생산	우유 조제품 생산국 (미국, 일본, 한국 등 17개국)	분유 생산국 (EU, 인도 등 3개국)
정제유 생산	정제공정 수행국 (EU, 뉴질랜드, 한국 등 10개국)	조유 생산국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

자료: WTO 통일원산지협상 동향 및 전망(산업자원부)

위에서 살펴본 WCO의 합의결과에 기초하여 WTO의 원산지 규정위원회에서는 WCO 미합의 사항과 전체구조(overall architecture)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즉 25~27류(광물 생산품), 28~40류(화학제품), 44~49류(목재 및 종이류)과 71류(보석 및 금속) 등에 있어서의 WCO에서의 미합의사항인 품목들에 대해 원산지 규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러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현재 이해당사국간 또는 다자간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회원국간 이해관계의 조정은 보다 고위급에서의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WTO의 원산지 규정위원회는 WCO에서 회부된 미타결 분야의 많은 부분을 타결하고, 2002년 7월 93건의 핵심정책이슈를 일반이사회에 송부하여 일반이사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일반이사회에서는 이들 이슈에 대한 타결시한을 2004년 7월로 정하고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1) 적용범위

회원국이 1994년도 GATT 제1조 제1항의 적용을 초과하는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계약적 또는 자발적인 무역제도와 관련되지 않는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률, 규정 및 행정적 판정을 의미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1994 GATT 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 및 제13조의 최혜국대우,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및 모든 차별적인 수량제한 또는 관세쿼터의 적용에서와 같은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에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합의한 바와 같이 비특혜적인 원산지 규정에 관한 조화를 꾀하고 있다.

2) Harmonized System

'Harmonized System'이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임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HS의 수정에 따라 비특혜 통일원산지 규정이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3) 정의(Definition)

비특혜 통일원산지 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manufacturing, producing or processing of goods, methods of obtaining goods, material, origination material, non-originating material, essential character 등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4) 미소규정(De Minimis)

부속서 2에서 결정된 우선원칙(primary rules)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non-originating material은 일정기준(threshold)을 초과하지 못하는 이산 원산지 판정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으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5) 최소공정(Minimal Operation or Process)

대부분의 회원국은 완전생산기준에 관한 부속서 1이나 부속서 2의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즉 세번변경이나 기타기준에 의한 변형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형으로 보기 어려운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해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조항은 원산지 판정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는 최소공정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운송이나 보관의 목적으로 상품이나 상품

가치의 보존을 위한 공정, 선적이나 운송의 원활화를 위한 공정, 상품판매를 위한 공정 등을 최소공정에 포함시킨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ventilation, spreading out, drying, chilling, cleaning, washing, sorting, packing, ionizing, salting, dilution with water 등의 예를 포함시키자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것을 포함할 경우 자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주정을 수입하여 이를 희석하여 소주를 만든다든가, 수입어류를 염장하여 가공한 후 이를 수출하는 국가의 경우 최종생산물이 자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반대하고 있다.

6) Neutral Elements

다른 제품의 생산이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며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섞이지 않는 제품이나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한 건물의 유지나 장비의 운용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연료와 에너지, 장비나 건물의 유지를 위한 예비부품이나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최종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원산지 결정기준

동물 및 광물 등에 관한 완전생산기준에 의한 원산지 규정[5]이 부속서 1을 적용하며,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에 관하여는 부속서 2를 적용함을 제시해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general residual rule에 관하여는 정의를 유보하고 있다.

8) Packing and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포장과 포장 재료와 container의 원산지가 그 내용물의 원산지에 영향을

5) 자세한 내용은 G/RO/W/13/Rev.3 page vi의 Appendix 1 참고.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부문으로 이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물건으로부터 채취된 부품이나 원료와 공해상에서 채취된 수산물 등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해 있다.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부속서 2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Chapter Note/Rules, Principal Rules, Subsidiary Rules, Product Specific Residual Rules의 정의와 그 결정 순서 등이다. 이에 대해서 각국은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Chapter Note와 Principal Rule은 동등한 개념이므로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적용순서를 분야별로 다르게 하여 어떤 분야는 Subsidiary Rule을 Chapter Note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면 Principal Rule이 적용되지 않을 때 Residual Rule을 적용해야 하는 분야도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언제 잔여기준(Residual Rule)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국에서 가격이 100달러인 모자(hat HS 65.06)를 hat-forms와 기타 부품(HS 65.01)을 이용하여 만들었다면 이 경우 비차별원산지 규정의 기본기준(Primary Rule)인 세번변경원칙은 충족된다. 그러나 이 모자를 B국에서 수입하여 B국이 원산지인 다이아몬드나 기타 재료를 이용한 장식을 붙여서 500달러 상당의 모자를 만들고 이를 C국에 수출하였을 경우 C국에서 이 모자에 대하여 A국과 B국 중 어디에 원산지를 인정할 것인

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B국에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기준만을 적용한다면 A국이 원산지가 되게 되지만 A국에서 생산된 모자와 B국에서 생산된 모자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여기준(어떠한 잔여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 존재)을 적용하여 B국에 원산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세번변경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A국에 원산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3. 한・중・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가. 한국

현재 한국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법률체계는 관세법 및 동 시행규칙과 시행령, 대외무역법 및 동 시행규칙과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여러 법률에서도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 및 관리규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의 기준인 관세법 시행령 제53조 4의 제5항에는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의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르면 위 조건에 최소한의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생산물품,[6]

6) 완전생산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당해국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한 살아있는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당해국의 영역에서의 수렵, 어로로 採捕한 물품, 당해국의 건박에 의하여 採捕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및 당해국 또는 당해국의 선박에서 위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이다.

실질적 변형 및 최소가공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7]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는 보다 자세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의 기초로 세번변경기준(HS 6단위의 변경)을 명기하고 있으며, 기초로 특정제품에 관하여는 부가가치기준도 준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특혜관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3조 17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국은 대외무역법 제6절 제23~25조에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기타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원산지의 판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7)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단순한 선별, 구분, 절단 또는 세척작업,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의 경우에는 HS상의 변화가 있다 하여도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음이 규정되어 있다.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도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에는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나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FTA에 의한 수입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거나 원산지 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 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공급자·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이어야 함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는 등의 세부규칙도 정하고 있다.

한국이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 한국의 원산지 규정은 대부분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것이었으며 WTO의 원산지 규정과 일치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칠레 FTA의 체결에 의해 한국도 특혜 원산지 규정을 갖게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FTA 원산지 규정과 같이 한·칠레 FTA의 제4장 원산지 규정의 전체구조(overall architecture)는 정의(definition) 및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일반규정(general rules)과 품목별로 일차적 기준(primary rules), 잔여기준(residual rules) 및 기준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부속서(Appendix 4)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정가격,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상품에 관해 정의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채취된 광물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3.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5.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밖의 생산물
6.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 내에서 상기 5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7. 일방 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채취된 상품
8.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9.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생산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10. 모든 생산 단계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1호 내지 9호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

이와 더불어 간접재료, 중간재, 재료,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 생산자, 생산, 사용된, 재료의 가치에 대한 정의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공제법과 직접법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

방식 1: 공제법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방식 2: 직접법

$$RVC = \frac{VOM}{AV} \times 100$$

RVC: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 비율

AV: 조정가격

VNM: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VOM: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또한 공제법이 사용된 경우 45% 이상이거나 직접법이 사용된 경우 30% 이상일 때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후자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칠레에서 생산이 일어난 경우 그 부품도 칠레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한편 부속서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조정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는 최소허용수준도 기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체가능 상품과 재료,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간접재료,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환적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불인정 공정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는 공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2.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3.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
   가.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나.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다.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 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
라.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밖의 보호재료 도포
마.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바. 물 또는 그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사.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아. 염화, 가당
자. 동물의 도살
차. 분해
카.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

따라서 단순한 가축의 도축이나 주정을 희석하여 주류를 만드는 과정 등에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나. 중국

중국은 2001년 12월 '수입상품 원산지 사전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국내 원산지 관련 법규를 WTO의 원산지 규정에 일치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이 WTO에 통보한 원산지 규정 관련 법규는 다음의 4개이다(WTO 문서: G/RO/53).

1) Provision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Rules of Origin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 Proclamation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3) Proclamation Concerning Changes of the Rules of Origin for the Petroleum Products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4) Provisional Rules of Origin under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이 중 1)의 법규에 따르면 중국은 완전생산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생산품을 들고 있다.

1. 그 국가의 영토나 영해 내에서 채취된 광물
2. 그 국가에서 수확되고 채집된 식물
3. 그 국가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과 그로부터 획득된 생산물
4. 그 국가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5. 그 국가의 선박에 의해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밖의 생산물
6. 그 국가의 가공선박 내에서 상기 5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7. 그 국가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8. 전적으로 1호 내지 7호에서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그 국가 내에서 생산된 상품

또한 한 국가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수입품과 수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이 서로 상이하다. 즉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결정되는 기준인 HS 4단위의 변경의 경우는 동일하나 부가가치기준은 수입품의 경우 30%, 수

출품의 경우는 25%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4)의 규정은 '방콕협정' 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법규 내에서의 원산지를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비원산지 재료나 부품이 그 제품의 FOB 가격의 50% 이하일 경우(최빈개도국인 경우 60%)에는 최종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2003년 10월 현재 중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혜원산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 일본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싱가포르 EPA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원산지 관련 규정은 GSP를 제외하고는 비특혜 원산지 관련규정이었다. 일본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관세의 결정, 원산지 표시제도의 규제, 수입통계작성, 원산지 인증제도 등의 목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는 공정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와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는 최소공정(minimal operation)의 기준을 갖고 있다. 한편 통산성이나 공정거래위원회[8]에서 원산지 결정 필요가 있을 때는 과정심사(processing test)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혜원산지 규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부가가치 기준까지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원산지 규정 집행기관은 세관, 통산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이다. 통상산업성은 수입쿼터, 수입승인 등 수입을 규율하기 위해 원산지

8)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법(competition law)에 적용할 목적으로 원산지의 판정이 필요하다.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이러한 관세를 사용한 예가 없어 실질적인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식이라 주장하고 있는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FTA에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갖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유사하나 정의 부분에서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다른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통관절차에서 규정되고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원산지로 인정되는 역내가치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QVC = \frac{FOB\text{-}NQM}{FOB} \times 100$$

QVC: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 비율

FOB: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free on board 가격으로 그 제품이 수출될 경우 감축, 면제 또는 환급되는 국내소비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가격이다.

NQM: 다음에 의해 정의되는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NQM = TVM - QVM$$

TVM: 재료의 총가치

QVM: 역내가치

한편 불충분한 작업(insufficient operation)에 대해서도 한・칠레 FTA보다는 상세하지 않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20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지 않음도 규정되어 있다.[9)]

일・싱가포르 EPA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일반적인 FTA협정보다는 간략하며 사용되지 않는 규정의 포함과 같은 개념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별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부속서에도 모든 HS Code의 Chapter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1류에서 24류 중에서 10류(곡물), 21류(각종의 조제식료품), 22류(음료・알코올 및 식초), 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제조품)를 제외한 나머지류, 26류(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31류(비료), 37류(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41류(원피와 가죽), 42류(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5류(코르크와 그 제품), 46류(짚・에스파르토 기타 粗物 재료의 제품, 籠 세공품 및 枝條 세공물), 64류(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들과 이들의 부분품), 84류(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6류(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8류(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9류(선박과 수상구조물), 92류(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7류(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가 제외되어 있다.

4.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한・중・일 FTA의 목적이 3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산지 규정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TA

9)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제5장 통관절차에 규정되어 있으며, 1,000달러 미만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3국간 FTA의 원산지 규정의 기본 원칙은 공평하고 투명하며,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성이 있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단명료하고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정으로 구성된다면 FTA의 기본 목표라 할 수 있는 무역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3국간 FTA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원산지 규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확정하여 언급하기 어렵지만 완전생산(wholly obtained)의 기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상을 통해 3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변형의 기준으로 세번변경의 원칙 아래 주요공정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품목의 특성, 3국의 산업구조의 특성,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 규정이 통관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면 회원국간 관세인하의 혜택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통관비용의 증대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원산지 규정의 제정이 요청된다. 하지만 비회원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첨부되어야 한다.

한편 한·칠레 FTA와 일·싱가포르 EPA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특히 일・싱가포르의 경우 품목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이 대부분 국내 부가가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칠레의 경우 공제법 45%, 직접법 30%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에 있어서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품목별로도 3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다르고, 특히 한국은 한・칠레 FTA의 경우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하는 FTA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산지 규정의 결정에 있어 한국의 향후 산업구조에 대한 전망을 포함한 보다 세심한 고려가 요청된다.

또한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일・싱가포르 EPA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3국간 FTA에서는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중국의 취약한 투명성을 고려한다면 기관발급이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겠지만 과다한 비용의 발생이 우려된다. 문제의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자발적인 발급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싱가포르 EPA는 HS코드에서 농산물로 취급되고 있는 1류에서 24류 중에서 대부분의 류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한・중・일 3국간 FTA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농산물 분야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준 마련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현재에도 농산물의 허위 원산지 표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 또한 일・싱가포르 EPA에는 한일간 교역규모가 큰 공작기계 및 컴퓨터 관련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84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없는 점도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또한 한・중・일 FTA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자동차에 관한 원산지 규정도 한・칠레 FTA에서는 공제법 45%, 직접법 30%의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해 일・싱가포르 EPA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없는 점도 향후 협상에 있어 결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NAFTA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산업구조 및 보완관계가 한·중·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AFTA에서는 역내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즉 물품이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취득된 경우나 역내산 재료를 가지고 역내 생산 공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한다. 역외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번변경 기준으로 판정하며, 세번변경기준만으로 북미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입장관철에 있어서 한국의 향후 산업구조 발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은 과감히 양보하고, 우리의 산업구조 전개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의 원산지 결정이 요구되는데 서비스의 국제교역이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산지 결정도 한·중·일 3국간의 지역무역협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것이므로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이에 관한 원산지의 결정은 제품에 관한 원산지 판정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할 부분은 북한에 대한 고려이다. 특히 중국·일본과의 북한의 교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북한산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서 한국산을 인정해 줄 것인지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수출·수입이 아닌 반입·반출에 의한 거래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부품을 우리가 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할 경우 이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이냐 북한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중국이 북한산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수출할 경우,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북한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가 여부가 그 제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3국간 합의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원산지 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그 반면 각국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정책적 함의도 갖고 있다.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산지 규정은 향후 산업발전의 방향에 따라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원산지 규정은 21세기 한국의 산업발전 전망에 기초한 정책적 고려가 보다 반영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반덤핑

2003년 현재 WTO/DDA 규범협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덤핑협정의 개정논의는 반덤핑협정의 폐지 및 유지 여부 그 자체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협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공식출범하면서, 의장성명서 제28항에서 WTO 반덤핑협정의 규율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과 목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반덤핑협정의 존재 그 자체는 인정해야 하고, 다만 일부 문제점이 있는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목적이 3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은 DDA 반덤핑협상의 범위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내린 반덤핑조치의 대부분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규범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DDA협상 규범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반덤핑 프렌즈 그룹(antidumping friends group)에 속하고, 현행 WTO 반덤핑협정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일 3국의 입장과 공동노력은 동북아 FTA의 추진에 따른 반덤핑협정의 제정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할 때 반덤핑제도에 대해 견지해야 할 입장과 원칙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이 활용하고 있는 반덤핑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반덤핑과 FTA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반덤핑제도의 철폐 또는 유지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한다. 반덤핑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근거는 약탈적 덤핑인데, 이는 현실세계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탈적 덤핑을 이유로 제소한 사례에서 약탈적 덤핑이 성립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해 반덤핑제도가 폐지되면, 다른 회원국이 보조금 및 독과점 금지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어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반덤핑제도는 이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주장이나, 이 연구는 반덤핑제도가 전략적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밝힌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FTA 체결시 반덤핑제도는 궁극적으로 철폐하되 다만, 과도기적으로 한·중·일 3국의 무역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반덤핑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반덤핑제도는 현재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한 여타 국가의 반덤핑제도가 지니고 있는 불투명성과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조항을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의 반덤핑규정, 특히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관행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다음, 개선되어야 할 조항의 내용을 제시한다.

1. 반덤핑과 무역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수입제품에 의해 야기되는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동하는 수입규제조

치이다. 수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서 무역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반덤핑조치는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현재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세계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출범한 WTO체제 이후 반덤핑제소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장벽의 주된 형태가 반덤핑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995~97년 3년간 세계 전체 반덤핑제소는 624건이었으나, 1998~2000년에는 897건으로 이전에 비해 43% 이상 증가하였고, 2001~02년까지 2년간 반덤핑제소는 638건을 기록하여, 1995~97년간 반덤핑제소 건수를 초과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반덤핑제도의 활용국인 선진국만이 아니라 인도 및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이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반덤핑조치는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반덤핑조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다자간 무역협상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관세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발동요건이 어렵지 않은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덤핑조치가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반덤핑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Prusa(2001)는 1980~94년 사이에 미국의 반덤핑조사를 대상으로 덤핑제소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입액을 이용하여, 반덤핑제소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년간의 수입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 수입의 연간 차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표 3-1>은 Prusa(2001)의 분석결과를 표시하고 있는데, 반덤핑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먼저 수입금액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덤핑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 판결 이후 3년간 약 50%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덤핑제소 이후에 합의 조정된 경우와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에도 무역제한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에 덤핑제소 1년 후에 수입은 33% 감소하며,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입은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덤핑제소만으로도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소위 덤핑제소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덤핑 판정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잠정관세의 징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반덤핑규범은 덤핑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제소만으로도 외국의 수출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rusa(2001)는 협의 조정된 경우에도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를 정치적 압력에서 찾고 있다. 즉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산업체는 정부가 외국정부와 수출자율규제(VER)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표 3-1> 미국의 반덤핑제도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수입금액으로 평가	차분으로 평가
덤핑확정판결(t+1)	-54.95**	-59.36**
덤핑확정판결(t+2)	-48.53**	-49.65**
덤핑확정판결(t+3)	-50.66**	-55.53*
무혐의(t+1)	-33.87**	-26.51
무혐의(t+2)	-29.67*	-15.13
무혐의(t+3)	-30.70	-16.45
협의 조정(t+1)	-43.93**	-62.93**
협의 조정(t+2)	-39.14*	-58.96*
협의 조정(t+3)	-60.29**	-78.44**

주: * 5% 수준의 유의도, ** 1% 수준의 유의도
자료: Prusa(2001)

연도별 수입의 차이를 사용한 분석을 보면, 반덤핑조사 및 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금액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덤핑확정판결의 경우, 수입이 약 50% 감소하고, 협의조정으로 끝난 경우에 수입은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덤핑확정판결, 무혐의 및 협의조정의 경우에 각각 모형별, 연도별 수입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Prusa(2001)는 각 경우에 대해 기업은 가격을 달리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협의 조정의 경우에 기업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덤핑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에 기업은 가격인상을 통해 반덤핑관세로 인한 손실을 상계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고 본다.

반덤핑조치가 무역장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관세 및 쿼터 등의 무역제한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Anderson(1992, 1993), Clarida(1993) 등은 반덤핑조치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고, USITC(1995), Staiger and Wolak(1994), Morke and Kelly(2002)는 특정 산업에 국한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Prusa(2001)를 포함한 이와 같은 분석은 해당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파악하는 부분균형분석이다. 즉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은 증가할 수 있으나, 철강을 중간재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싼 철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산업과의 전후방 연계성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Gallaway *et al.*(1999)은 일반균형연산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으로 미국이 취한 반덤핑조치로 인한 후생비용을 분석하고 있다. 표준 CGE 모형과 같이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과 완전경쟁에 기초하여 Armington 가정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품은 불완전 대체를 가정하고 있다. 기초연도를 1993년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이 반

덤핑 및 상계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후생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확정판결의 경우에는 약 50%, 부정적 판결의 경우에도 30%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반덤핑조치로 인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의 잉여가 감소하여 경제전체의 후생이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한·중·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WTO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중국이 308건으로 가장 많이 반덤핑제소를 당한 국가이며, 한국이 160건, 일본이 88건을 제소당하여 한·중·일 3국 모두 세계 피제소국 최상위층에 속한다. 이에 반해 중국이 같은 기간에 발동한 반덤핑제소 건수는 21건, 한국이 57건 그리고 일본은 단 2건만을 기록하고 있다. 한·중·일 3국 모두 반덤핑제도를 수입규제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보다는 반덤핑규제를 받는 국가들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이 국내 내수에 비해 수출이 경제에서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의 반덤핑 조사 및 제소 현황을 보면, 세계적으로 피제소국인 한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의 무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57건인데, 그 대상 국가를 보면 중국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7건, 미국 6건 및 대만 3건으로 나타나 중국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 1997년 반덤핑법이 제정된 이후 2002년까지 중국이 조사를 개시한 21건의 반덤핑조사에서 한국은 17건, 일본은 12건, 미국은 10건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반덤핑조사의 주 대상국이 한국과 일본이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3건에 달한다.

<표 3-2> 한·중·일 3국간의 반덤핑 조사 건수

제소국가	對한국	對중국	對일본
한국	-	10	7
중국	17	-	12
일본	1	0	-

자료: 한국무역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중국이 반덤핑조사를 실시한 연도를 보면,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으로 인해 관세 및 각종 무역장벽이 크게 낮아져서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반덤핑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구조가 對韓 의존형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는 크게 완화되고 있다. 현재 외국에 대해 정식으로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아직 정식으로 발동은 하지 않았으나 중국 및 베트남산의 섬유류(타올)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연장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일본은 주로 수입할당제, 견사, 견직물에 대해 한일 견직품협회에서 수량을 결정하는 수입승인품목의 운용, 할당관세,[10] 선적전 검사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나, 일본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관련 수입규제가

10) 할당관세는 쿼터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은 현재 경제산업성 장관의 명의로 매년 2회에 걸쳐 할당 수량을 정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1년 4월 일본은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덤핑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7월부터 5년간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반덤핑조사는 1994년 파키스탄산 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취해졌다. 한국에 대해서는 1988년 니트 스웨터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진행된 후 처음 발동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피소를 당하고 있는 중국이 발동하는 반덤핑조사는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반덤핑조사가 수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7~2002년에 개시된 21건의 반덤핑조사로 인한 각 품목의 수입변화를 분석한다. <표 3-3>은 반덤핑조사가 개신된 연도를 t로, 그 다음해를 t+1로 표시할 때 해당품목의 평균적인 수입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품목의 수입은 조사개시 다음해에 약 23.8%, 2년 뒤에는 62.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 중국 반덤핑조사로 인한 수입의 변화

(단위: %)

	t+1	t+2	t+3
수입의 변화율	-23.8	-62.5	-58.9

자료: 자체분석(Kotis 무역통계 이용)

앞서 반덤핑조치는 무역왜곡적인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는 중국이 불공정거래로 조사한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다. 중국이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다면 외국의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

약 경쟁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반덤핑조사는 공정한 경쟁조건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효율적인 자국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3-4> 중국 반덤핑조사 품목의 수출경쟁력

품 목	t-1	t	t+1	품 목	t-1	t	t+1
신문용지	-0.94	-0.99	-0.98	에프시론카프로락탐	-0.90	-0.94	-0.99
폴리에스테르 필름	0.23	-0.01	-0.34	아트지	-0.83	-1.00	-
스테인레스 스틸	-0.84	-0.97	-0.94	카데콜	-0.97	-0.92	-
아크릴산 에스테르	-0.80	-0.81	-0.88	무스프탈산	-0.99	-0.99	-
염화메틸렌	-0.93	-1.00	-1.00	합성고무	-0.94	-0.94	-
폴리스티렌	-0.92	-0.95	-0.97	냉연강판	-0.93	-0.93	-
라이신	-0.98	-0.98	-0.96	PVC	-0.98	-0.98	-
폴리에스터 칩	-0.98	-0.92	-0.42	TDI	-0.99	-0.98	-
폴리에스터 단섬유	-0.99	-0.98	0.07	페놀	-0.99	-0.98	-
아크릴레이트	-0.88	-0.84	-0.88	MDI	-1.00	-0.99	-

자료: 자체분석(Kotis 무역통계 이용)

<표 3-4>는 2002년까지 개시된 반덤핑조사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t는 조사가 개시된 연도의 수출경쟁력을 말한다. 수출경쟁력은 (수출-수입)/(수출+수입)으로 계산되는데, +1은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이고, -1은 수출경쟁력이 매우 약한 경우를 표시한다. 반덤핑조사를 벌인 전품목에서 수출경쟁력 지수는 거의 -1에 가깝게 나타나 중국은 수출경쟁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반덤핑 제도의 목적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FTA를 비롯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으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및 상계관세 등의 수입제한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FTA에서 각 회원국의 반덤핑규범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철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 규정에 따르면 FTA를 비롯한 지역경제통합체의 경우에 반덤핑규범은 회원국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역내 국가의 합의에 의해 반덤핑규범은 역내 무역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덤핑규범이 역내 회원국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WTO의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최혜국 대우의 예외조항인 GATT XXIV 5(b), 5(c) 및 8(b)에 따라 반덤핑규범을 역내 회원국에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통합과 반덤핑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1) 반덤핑조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라는 견해, 2) 반덤핑은 어떤 경제적인 근거도 갖지 못하는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견해, 3) 공동의 독점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덤핑은 공평성(level the playing field)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앞 단락에서 반덤핑조치가 수입을 제한하여 경쟁력이 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 번째 견해와 관련하여 독점금지법과 반덤핑규범의 관계에 대해 논한다. 특히 회원국의 상이한 규제와 법을 효과적으로 조화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통합의 심화(deep integration)와 역내자유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i) 역내자유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의 심화(deep integration)가 필요한지, ii) 만약 그렇다면

독과점 금지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통합의 심화에 필요한지에 대해 논한다.

1) 경제통합의 심화정도

Lawrence(1996)는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천층통합(shallow integration)과 심층통합(deep integr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천층통합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을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 즉 내국민대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 treatment)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와 쿼터가 철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덤핑규범도 역내무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심층통합은 상품, 생산공정, 생산자 및 자연인에 영향을 미치는 각 국가의 규제와 정책의 차이로 인한 시장분할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 각 국가의 법과 규범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ii) 특정영역에서는 공동의 법과 규범을 마련(harmonization)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경제통합을 천층통합과 심층통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현된 대부분의 경제통합체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경제통합체의 형태는 4가지가 가능한데, i) 천층통합(shallow integration)은 이루어지고 심층통합(deep integration)의 요소는 전혀 없는 경우, ii) 천층통합의 달성과 더불어 심층통합의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iii) 천층통합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심층통합의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iv) 천층통합도 완전히 달성되지 않고 심층통합의 요소도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지역경제통합이 더욱 심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경쟁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은 완전한 천층통합(shallow integration)의 달성을 위해 독과점 금지법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있다. 즉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을 마련하는 것이 반덤핑제도를 폐지하는 전제조건이 되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진다.

2) 반덤핑제도의 폐지를 위한 전제조건

반덤핑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통합체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11] 정부가 자국의 반덤핑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는 이유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반덤핑법이 존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기업의 약탈적 덤핑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이유로 반덤핑제도는 외국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체를 형성하려는 국가가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반덤핑제도를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이 없으면 약탈적 덤핑과 외국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개별 국가의 산업과 국가가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가) 약탈적 덤핑

반덤핑법의 경제적 근거는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에 있다. 약탈적 덤핑은 외국기업이 국내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원가 이하로 가격을 책정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탈적 덤핑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또한 설사 약탈적 덤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각 국가의 반독점 금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Hoekman 1998). 마쓰시다 사건과 같은 실제 판례도 약탈적 덤핑은 합리적인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12] 반덤핑 조치는 수출국의 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대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한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11) 지역경제통합에서 반덤핑법과 독과점 금지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Hoekman and Mavroidis(1996), Marceau(1995), Hoekman(1998)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2) 마쓰시다 사건은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인 마쓰시다(Matsushita) 등이 자사제품 가격을 미국에서 매우 낮게 책정하여 미국 전자회사인 제니스(Zenith) 등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자, 제니스 등이 마쓰시다 회사가 약탈적 덤핑을 자행하고 있다고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합리적인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윤미경 외(1999)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왜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반덤핑제도는 약탈적 덤핑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3]

나)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조치

지역경제통합의 목적이 무역정책수단을 제거하여 역내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역내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역내 자유무역의 목표에 역행하는 무역정책을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기를 원한다. 즉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덤핑제도가 다른 회원국의 전략적 정책수단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파악해야 한다.

외국정부가 자국의 무역장벽을 높여서 자국시장을 보호할 경우에 반덤핑조치가 외국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Stewart 1996).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역경제통합의 목적이 관세 및 쿼터의 제거를 통한 역내 자유무역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다른 회원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회원국이 임의로 철폐된 관세를 다시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을 마련하는 것과 반덤핑법의 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다른 회원국이 독과점 금지법을 악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회원국이 외국기업간의 합병을 허용하면 합병된 기업이 독점력을 바탕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국내 후생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Barros and Cabral(1994),

13) 반덤핑제도의 경제적 근거와 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Willig(1994) 및 Chae (1996) 참고.

Ordover and Willig(1986)는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국내 수입대체산업이 얻는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에 비해 소비자 잉여의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카르텔의 형성을 정부당국이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반덤핑제도가 이러한 외국정부의 자국 독과점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달려 있다. 무역정책이 외국기업의 독점력 강화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후생감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시장구조, 수요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수출카르텔을 형성하는 목적은 수출가격의 인상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데 있기 때문에 덤핑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반덤핑제도는 독과점의 형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또 다른 근거로 외국정부의 투자제한, 보조금 및 산업에의 국가개입 같은 산업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덤핑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외국정부의 산업정책은 국내기업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경제통합제가 외국정부의 산업정책을 통제하지 못할수록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덤핑제도를 철폐하려는 동기는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Dixit(1988), Collie(1991)에 따르면 외국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적인 상계관세의 부과는 실제로 수입국의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된 조건하에서 가능한 것이며, 또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보조금 및 기타 산업정책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 반덤핑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외국정부로 하여금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유도하지 못하는 데 반덤핑제도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내 소비자의 후생만 더 크게 감소시키는 비효율적인 수단이다(Deardorff and Stern 1987).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의 마련이 반덤핑법의 철폐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반덤핑법

이 경제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인 약탈적 덤핑은 현실세계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독과점 금지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외국의 독과점 금지법 및 산업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후방연계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각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반덤핑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순한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및 쿼터의 폐지와 함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서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중·일 3국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협력이 심화되어 '심층통합(deep integration)'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독과점 금지법을 비롯한 공동의 경쟁법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다만,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과도기적으로 반덤핑규범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정도로 정부의 우려가 너무클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 또는 과도기적으로 반덤핑규범이 필요할 수는 있다. 즉 반덤핑제도의 유지가 경제적인 근거가 아닌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국가의 현행 반덤핑규범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공동의 반덤핑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 반덤핑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각국에서 행해지는 보호무역주의적인 관행을 제거하고 나아가 향후 반덤핑법의 완전한 철폐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반덤핑규범은 현행 보호주의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고 규정이 불명확하여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WTO규정을 넘어서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반덤핑규범을 분석하면서 불투명한 규범의 내용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분석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현행 3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행도 함께 파악한다.

2. WTO의 반덤핑협정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반덤핑관세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규범은 GATT 체제하에서 마련되었다. GATT 제6조는 덤핑의 존재,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피해 및 이들 두 요소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있어, 덤핑과 피해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국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발동이 빈번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적 갈등도 심화되었다. 몇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1994년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었다.

WTO 반덤핑협정이 GATT 체제하에서의 반덤핑협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전의 반덤핑협정은 협정에 조인한 체약국에게만 적용되었던 반면, WTO 체제하에서는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반덤핑협정을 WTO 모든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어, 미국과 EC를 비롯한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도국도 반덤핑제도를 운용하게 되었다. 1990년까지 반덤핑제도는 미국, EC, 호주 및 캐나다 등 선진국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이들 4개국이 세계 덤핑제소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WTO가 출범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부터는 그 비중이 40%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등의 개도국이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빈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18조와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및 구제조치로 나눌 수 있다. 실체적 요건은 덤핑의 존재를 확인하는 덤핑판정과 그러한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야기되었다는 피해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차적

요건은 조사개시의 조건, 제소자의 자격, 조사수행의 방법 등 덤핑조사 및 판정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제조치는 잠정조치, 가격약속 및 덤핑의 확정에 따른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WTO 반덤핑협정은 조사절차 및 방법, 덤핑마진의 결정 등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반덤핑협정의 목적, 원칙 및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반덤핑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이전의 반덤핑협정에 비교하여 모호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하여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현행 반덤핑협정은 덤핑의 결정,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덤핑조사의 발동, 반덤핑조치의 기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덤핑마진이 매우 미미하여 덤핑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미소마진(de minimis)의 경우에 WTO 반덤핑협정 이전의 규정은 계량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현행 협정은 덤핑마진이 2% 이하일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의 국내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구성가격을 산정할 때 일반판매비와 이윤을 이전의 반덤핑규범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여 그 개념이 모호하였던 데 반해, 현행 협정은 실제자료에 의거하여 일반판매비와 이윤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반덤핑조치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선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덤핑이 지속되거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하여 일몰재심의 본

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소자 적격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은 국내 동종상품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의견표명과 찬성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 국내산업이 생산하는 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GATT 체제하의 반덤핑협정에 비해 상당히 구체화하였다.

이전의 반덤핑협정에 비해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이 구체화되고 투명해졌으나, 여전히 불투명하고 모호한 요소가 남아 있어서 덤핑의 판정 및 제반 절차가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현행 WTO 반덤핑협정은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보호주의적인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3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규범 논의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프렌즈 그룹은 31개의 개정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네거티브 덤핑을 덤핑마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로잉(zeroing)의 금지, 재심절차의 개선, 미소마진의 상향조정,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방식의 임의적 선택 금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의 규범을 비교하면서 상세히 논한다.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본 절에서는 세계 도처에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경제통합과 반덤핑제도에 대해 논하였던 경쟁법의 도입과 반덤핑제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

한다.

가.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은 상품의 역내교역을 완전히 자유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 노동 및 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통합체이다. 아울러 시장의 통합이 아닌 시장을 분할하는 각종 국내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보조, 독점, 정부수주 및 경쟁정책에 대해 공동의 원칙을 확보하고 있고, 이는 개별국가의 기관은 물론 초국가적 기관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지역경제통합체 가운데서 EU는 심층통합(deep integration)을 상당 정도로 진척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국가들은 로마조약에서 조약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과도기에 한해 개별 회원국의 반덤핑규범을 인정하고, 과도기가 지난 이후의 역내교역에 대해서는 반덤핑제도의 적용을 금지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과 반덤핑제도의 폐지는 상호 별개의 문제로 진행되었다. 즉 로마조약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를 제외하면 관세 및 쿼터가 제거되면서 반덤핑제도도 동시에 철폐되었다. 로마 조약 91조에 반경쟁적 행위 및 정부보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반덤핑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1970년대 초반 자유무역협정으로 EFTA는 EC의 경쟁법을 상당 부분 도입하여 EFTA의 경쟁법은 EC의 경쟁법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EC는 EFTA 국가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EU 국가들과 유럽자유무역지대(European Free Trade Area: EFTA)[14]가 공동시장을 형성할 목

14) 스위스는 제외

적으로 추진된 EEA에서 EFTA 국가는 반덤핑조치의 철폐를 협상목표로 정하였고, EEA 제26조에서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협정 당사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EEA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금지되었다. 다만, 농산품(HS 코드 1-25)은 반덤핑조치의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다. EU가 반덤핑조치를 EFTA 국가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EEA를 통해 EU 단일시장은 EFTA 국가로 확대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EEA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덤핑법의 폐지되었지만,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은 1983년 체결되었는데,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1988년 상품에 대한 자유무역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정문 서문에 “반덤핑의 유지는 회원국간 상품에 대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제4조에서 역내 무역에 대한 반덤핑조사 및 조치의 발동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제도를 철폐한 것은 단일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일시장을 창출한 EU와는 달리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서 상계관세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1983년 당시 양국간 경쟁법은 상당히 달랐다. 호주는 미국의 경쟁법과 유사했던 반면, 뉴질랜드는 영국의 경쟁법과 흡사하였다. 1986년 뉴질랜드는 호주의 경쟁법과 거의 유사하도록 경쟁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문에서는 자국의 경쟁법을 역내무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NAFTA

NAFTA는 회원국간의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나, 보조금의 사용 및 역내 무역의 경쟁에 대한 원칙은 현행 WTO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별다른 진척이 없다. 또한 역내무역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치는 취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NAFTA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하에서 최종 덤핑판정시 양국의 독립된 패널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캐나다 정부는 반덤핑법의 철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NAFTA 협정에서 철폐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미국 산업계가 반덤핑법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 NAFTA에 반덤핑법이 철폐되지 못한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Hoekman 1998). 반덤핑법의 철폐,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의 마련 등은 협상의제가 되지 않았다.

마. 캐나다-칠레 FTA

캐나다와 칠레는 1996년 양자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칠레는 캐나다와의 FTA가 NAFTA에 가입하는 데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캐나다-칠레 FTA는 관세와 쿼터뿐만 아니라 반덤핑제도를 철폐함으로써 NAFTA 이상을 달성하였다.[15] 양자간 무역에서 관세가 제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가 취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칠레 FTA 협정 M-01에서 어떤 반덤핑조사도 개시되지 않고 상대 국가의 상품에 대한 재심도 하지 않으며, 진행중인 모든 반덤핑조사도 종료하도록 하여, 반덤핑법의 즉각적인 효력정지와 철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M-04조에서 무역조건이 크게 변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대 국가에 대해 반덤핑규범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15) 협정 전문은 http://www.sice.oas.org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양국이 함께 상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반덤핑규범은 캐나다와 칠레간의 무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캐나다-칠레 FTA에서 상계관세는 철폐되지 않았으나, 보조금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독과점 금지법을 조화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J-01조에서 각국은 반경쟁적 영업활동을 배척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양국의 담당기관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 내용을 볼 때, 캐나다-칠레 FTA는 공동의 경쟁법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반덤핑법이 철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제 사례이다.

바. 한국-칠레 FTA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반덤핑과 관련하여 제7장에서 양국은 WTO 반덤핑협정하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WTO 반덤핑협정하에 취해진 반덤핑조치는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는 NAFTA의 경우와 동일하게 반덤핑제도는 철폐되지 않았다. 또한 공동의 경쟁법은 마련되지 않고,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이 감소하지 않도록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몇몇 지역경제통합체에서의 반덤핑법의 철폐 및 공동 경쟁법의 도입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체결된 지역경제통합체는 각기 서로 상이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층통합(shallow integration)을 반덤핑법의 철폐를 포함하는 조건 없는 상품의 자유무역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를 실현한 지역경제통합체로는 EU, EEA, 호주-뉴질랜드 FTA 및 캐나다-칠레 FTA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을 마련한

지역경제통합체는 EU, EEA 및 호주-뉴질랜드 FTA인데, 접근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호주-뉴질랜드 FTA는 각 국가의 법이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택한 반면, EU는 각 회원국의 법을 조화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단일 경쟁원칙을 확립하고 초국가적인 기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EU와 EEA에서 각 회원국은 공동의 경쟁법 또는 매우 흡사한 경쟁법을 마련하였으나, 이것이 반덤핑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EA가 형성되기 전에 EU와 유사한 경쟁법을 지닌 EFTA 국가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발동한 데서 알 수 있다. 이들 지역경제통합체가 역내 무역에 대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폐지한 것은 단일시장을 창출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EU가 중·동구권 국가 및 지중해연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경쟁법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반덤핑조치를 계속 발동했던 사실에서도 경쟁법의 마련이 반덤핑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지역경제통합체에서의 반덤핑제도 철폐 여부

	반덤핑제도의 철폐	회원국 독과점 금지법의 조화
EU	○	○
EEA	△	○
NAFTA	×	×
호주-뉴질랜드	○	○ (상당 정도)
캐나다-칠레	○	×
한국-칠레	×	×

주: ○ 반덤핑 철폐, △ 부분철폐, × 반덤핑 유지

4. 한·중·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할 때, 반덤핑제도가 과도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 각국의 반덤핑규범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공동의 반덤핑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국의 현행 반덤핑규범과 관행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1년 11월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중국은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WTO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반덤핑 관련 규정도 2001년 1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이하 개정조례)로 새롭게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반덤핑 관련 규정을 1994년 제정된 대외무역법 제30조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WTO 반덤핑협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여러 나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개정조례는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 구조례를 크게 보완하였다. 구조례는 덤핑과 보조금을 동시에 포함하여 6장 42조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에 개정조례가 덤핑과 보조금을 분리하고 반덤핑조례는 6장 59조, 보조금은 6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반덤핑법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세법 51~56조, 관세법 시행령 58~71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10~20조에 걸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WTO 반덤핑협정과 매우 흡사하다. 일본의 반덤핑규범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영향으로 제소자 적격, 관계사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신규수출자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규범 내용에 있어서 WTO 반덤핑협정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또한 반덤핑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덤핑규범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Komuro 1997). 이에 반해 중국의 반덤핑규범은 새롭게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2000

년 이후 활용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용빈도가 높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중국 반덤핑규범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한국, 일본 및 WTO 반덤핑협정을 상호 비교분석한다.

가. 덤핑의 결정

중국의 구조례는 덤핑을 "수입상품의 수출가격이 그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라고 정의하는 데 반해, 개정조례는 제3조에서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수입제품을 그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상적인 무역과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을 추가로 삽입하였는데, 이러한 덤핑의 정의에 대한 수정은 WTO 반덤핑협정에서 정의한 덤핑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정조례에 삽입된 문구는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및 "다른 나라의 상권으로 도입(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이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을 삽입한 것은 중국으로의 판매를 의미하는데, 단순한 환적 또는 계약의 청약 등은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16]

한국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을 덤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수출국에서의 동종상품의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위한 제품의 판매를 덤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

16)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판매의 개념에 단순한 청약(offer)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3가지 입장이 있었다. 가) 상품이 실제로 일국의 관세선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판매로 보는 견해, 나) 실제로 수입되지 않고 단순한 청약의 경우도 판매로 보는 견해, 다) 실제로 수입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판매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미국과 EU에서는 취소불가능한 판매청약(irrevocable offer to sell)은 판매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중·일 3국의 덤핑에 대한 정의는 법조문상 약간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외국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1) 정상가격의 결정

가) 현행규정

중국 개정조례 제4조는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거래과정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이 있을 경우에 동 비교 가능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조례와의 차이는 "정상거래과정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이 있을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2.1조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조례 제4조 2항에서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국에 대한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정상거래의 의미에 대해 중국의 개정조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WTO 반덤핑협정은 수출국의 국내시장 소비를 위한 동종제품의 판매가 수입국에 대한 조사대상상품 판매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매는 정상가격의 결정에서 충분한 수량(a sufficient quantity)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정조례에는 정상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기준, 수출자의 회계자료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은 단위비용 이하로의 판매규모가 상당기간 동안 실질적 수량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격이 합리적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는 반면,[17] 중국의 개정조례에는 이러한 조

17) 상당한 기간이란 일반적으로 1년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단위비용 이하의 판매는 조사대상거래에서 판매된 수량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상당한 수량으로 간주된다.

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경제무역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 중국의 반덤핑판정을 보면, 상당수의 판정에서 원가 미만의 판매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비정상거래로 취급되어 정상가격의 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Huang 2002). 이러한 관행은 정상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덤핑으로 판정하게 되는 경우를 양산하게 된다.

한국은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정의하고,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즉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를 위한 판매가 수입국내 판매량의 5% 이상인 경우 정상가격의 결정에서 충분한 수량으로 간주하고 있고, 단위비용 이하로의 판매규모가 20% 이상을 차지하면 단위비용 이하의 판매가 실질적 수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WTO 규정과 합치된다.

나) 개선방향

WTO 반덤핑협정 제2.2.1조와 한국 및 일본의 규정을 보면, 단위당 비용미만의 판매량이 20% 이상인 경우에 정상가격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원가 미만의 판매를 정상거래에서 관행상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관행은 생산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고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 또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였을 때 생산자가 평균비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즉 비록 가격이 평균비용을 충당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가변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이다. 예를 들어 관광지에 있는 식당이 비수기에도 가변비용만 충당할 수 있다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고정비용은 영업의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현행 반덤핑협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적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하는데, 한·중·일 FTA의 체결에 있어서 원가 미만의 판매에 대한 규정은 WTO 반덤핑협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가 미만의 판매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해당가격이 가변비용 미만이고 동시에 경쟁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로 국한하거나(Ahn 2002), 또는 판매의 상당 수준이 원가미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거래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2) 덤핑마진의 산정

가) 현행규정

중국의 개정조례 제6조에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는 가중평균가격을 비교하는 방식, 개별거래가격을 비교하는 방식 및 가중평균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교한다는 구조례에 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가격비교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WTO 반덤핑협정에 근접하였고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 제2.4조는 공정한 비교를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조례에서는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어서 불확실성과 조사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는 여전히 높다. WTO 반덤핑협정은 거래 단계, 거래 시기, 판매조건의 차이 등의 가

격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차이들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개정조례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판정을 보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였다고 언급한 판결 보고서는 찾아 볼 수 없다(Huang 2002). 또한 한국 및 일본산 스테인레스 강판 사건(1999. 6 조사개시, 2000. 12 확정판결)을 보면 가중평균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할 때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중국 반덤핑 집행의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한국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 원칙적으로 거래량 및 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래별 비교(transaction-to-transaction) 또는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의 비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무에서도 가중평균방식으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고 있으며, 특히 네거티브(-) 마진을 영(0)으로 처리하는 제로잉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반덤핑규범은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의 비교에 있어서 WTO 및 한국과 동일하게 3가지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 및 EC에서의 관행과는 달리 제로잉을 행하지는 않고 있다(Komuro 1997).

나) 개선방향

조사당국이 덤핑마진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 계산방식으로 제로잉과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의 비교(Average-to-Transaction)를 들 수 있다. 한국은 제로잉을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중국의 관행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제로잉은 네거티브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여 덤핑마진이 인위적으로 생기게 하거나 확대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하여 역내무역에 적용하는 과도기적인 반덤핑협정을 마련한다면 제로

잉의 금지를 명문 규정화되어야 한다.

Ahn(2002)은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개별수출가격(average-to-transaction)을 비교하는 방식이 채택되면,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항상 높다 하더라도 덤핑마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매거래마다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항상 높다 하더라도, 가중평균된 정상가격이 특정기간의 수출가격보다 높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WTO 반덤핑협정은 제2.4.2조에서 수출자가 구매자, 지역, 기간에 걸쳐 표적덤핑(target dumping)을 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가중평균-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 규정에는 어떤 경우에 표적덤핑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덤핑마진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한・중・일 FTA의 경우 최선은 가중평균-가중평균방식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가중평균-개별거래방식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Ahn(2002)이 지적하였듯이, 덤핑마진의 계산방식은 원심과 재심에서 각기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조사 및 판결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해판정

1) 피해의 결정요소

가) 현행규정

WTO 반덤핑협정에서 피해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the threat of material injury) 또는 그런 산업의 확립에 있어 실질적 지연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한・중・일 3국 모두 WTO 협정의 피해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판정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실질적 피해 판정에 대한 규정은 WTO 협정과 거의 동일하다. 즉 수입물량, 동종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내산업에의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개정조례 제8조는 덤핑이 초래한 중국산업의 피해를 판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덤핑수입품의 수량, 2) 덤핑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의 동종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3) 중국내 동종산업의 지표에 대한 영향, 4) 수출자의 생산능력 및 재고현황 등 WTO협정과 매우 흡사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중국산업에 대해 피해를 초래한 기타요소"를 제8.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중국 개정조례와 관행은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 피해의 위협 및 국내산업의 확립의 지연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WTO협정과는 달리 각각의 피해를 판정할 때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판정할 때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몇몇 사건의 경우, 중국당국은 덤핑수입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되는지를 판정하면서, 피해를 초래하는 여타의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입이 피해의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ce *et al.* 2003).

또한 중국당국은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판정하면서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소급적(retroactively)으로 확정덤핑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WTO 반덤핑협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피해의 위협 또는 산업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고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확정덤핑관세는 피해의 위협 또는 실질적인 지연에 대한 판정일 이후로부터만 부과될 수 있다(제10.4조). 확정덤핑관세가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실질적 피해의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비록 실질적 피해의 위협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덤핑수입으로 피해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제10.2조).

나) 개선방향

중국의 반덤핑규범에서 "중국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 등과 같은 불투명하고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규정은 삭제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 피해와 실질적 피해에 대한 위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중국의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 피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덤핑관세를 부과할 때에 적용하고 있는 소급적 적용방식은 WTO 반덤핑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누적평가

중국의 구조례는 반덤핑조사가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될 경우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누적평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18] 그러나 개정조례 제9조는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고 다음의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중국산업의 피해에 대해 누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덤핑수입제품의 덤핑마진이 2% 이상이고,
2) 그 수입량이 기록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량이 아닌 경우

여기서 기록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량이 아닌 경우란 1개 국가에서 수

18) Kermit and Norton(2000)은 한국 및 일본산 스테인레스 강판 사건에서 중국 조사당국은 피해의 누적적 평가가 합당하다고 평가하면서, 미소마진 이상의 덤핑마진이 존재한다는 것과 수입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출된 덤핑수입제품의 수량이 동종제품의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만, 3% 이하인 개별 국가의 합한 총수입량이 동종제품의 총 수입량의 7% 이상인 경우는 누적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는 WTO 반덤핑협정의 제3.3조의 조항과 동일하다.

한국의 피해판정에 대한 규정도 WTO 협정과 동일하게 덤핑마진이 2% 이상이며,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3% 이상이거나 3% 이하인 수입자의 합계가 전체 수입량의 7% 이상인 경우에 누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누적적 평가의 요건으로 1)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조사대상이고, 2) 누적평가 대상 수입품의 개별 국가의 수입량이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을 넘고, 또한 개별국가별 덤핑마진이 무시할 만한 수준 이상이며, 3) 수입상품간 및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상품간의 경쟁조건(conditions of competition)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과 2)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나, 3)의 경우 상호대체가능성, 판매망의 유사성, 시장판매의 동시성 등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사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19] WTO 반덤핑협정은 개별국가의 총수입량이 7% 이상인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소자는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국가를 제소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7%의 상한선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개별수출국의 수입비중이 3% 이하, 그리고 수입자의 합계가 총수입의 7%라는 무시할 만한(negligible) 수입수량에 대한 기준이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시할 만한 수입수량이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시할 만한 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19)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2001), p. 71.

피해를 입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덤핑제도의 운용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소물량 및 무시할 만한 수입수량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즉각 종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hn(2002)은 미소물량 및 무시할 만한 수입수량에 대한 기준은 총수입이 아니라 시장점유율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0]

아울러 만약 한・중・일 FTA에서 현행 WTO규정에 따라 총수입을 기준으로 미소물량을 판단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면, 한・중・일 3국 중 어떤 한 국가와 여타 비회원국와 합계하여 7%인지, 아니면 3국 중 2국가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7%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국내산업 및 동종제품

가) 현행규정

중국의 개정조례 11조는 국내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WTO 반덤핑협정 제4.1조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과는 달리 생산자가 수출자나 수입업자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있다. 즉 WTO 반덤핑협정은 1) 관련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2) 양측이 함께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받는 경우, 3)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협정 제4.1조 (i) 주 11에서 생산자가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련효과가 관련된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하

20) Ahn(2002)은 총수입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총수입에서 개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되므로 전체수입 규모가 작은 경우가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고, 전체 수입규모가 커서 실질적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오히려 조사종료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정조례에서는 이러한 명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산업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WTO협정과 동일하다. 지역산업에 대한 피해판정에 있어서 그 지역의 생산자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에 대하여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전국적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역 총생산의 몇 %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계량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사안별로 조사당국의 판단에 좌우될 여지가 남아 있다.

한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규정은 WTO협정과 마찬가지로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업자와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에서 8개 항목을 나열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21]

동종상품이라는 개념은 정상가격산정 및 국내산업범위의 확정에 사용된다. 중국의 개정조례 제12조는 동종상품이란 덤핑수입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말하며, 동일한 상품이 없을 경우 덤핑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비슷한 제품을 동종상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관행에서는 조사당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동종상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건(1999. 4 조사개시, 2000. 8 확정판결)에서 동종상품의 결정에 물리적 특성, 제조 공정, 경쟁과 상품간의 대체성이 고

21)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려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국 당국은 제품 모델간에 일정 정도의 대체성(certain degree of substitutability) 및 일정 정도의 경쟁성(certain degree of competition)이 있기 때문에 동종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동종상품이면 대체성과 경쟁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대체성과 경쟁성이 있다는 것이 곧 동종상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중국의 관행은 동종상품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판단된다. WTO 반덤핑협정 제2.6조는 동종상품의 기준으로 제품간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의 주세분쟁(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에 대해 패널은 제품의 특성, 성질, 질적 수준, 최종사용처,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제품의 관세 분류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나) 개선 방향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WTO 반덤핑협정에는 관계사에 대한 정량화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5%의 지분소유를 관계사 판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기업이 수직적 결합관계에 있거나 산업의 성격상 긴밀한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에 5%의 지분소유 기준은 관계사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Ahn(2002)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관계사와 관련된 과중한 입증책임을 들 수 있다. 조사당국은 흔히 수출자가 5% 이상 지분을 지닌 관계사의 모든 판매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제품의 판매와 산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모든 관계사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로 국내외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국내 판매자에 대한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국내 판매자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국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계산되어 덤핑이 발생될 수 있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분소유가 20% 이상일 때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는 5% 지분소유의 기준은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동종상품을 판정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동종상품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종상품에 대한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반덤핑규정에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덤핑의 조사

1) 제소자 적격

가) 현행규정

중국의 구조례는 단순히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혹은 관련조직이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는 중국 국내산업 또는 그를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조직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WTO 반덤핑협정과 매우 유사해졌다. 그러나 '관련조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반덤핑조사가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Huang(2002)은 중국 반덤핑당국은 동종상품의 생산자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동종상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자회사를 대표하는 모기업에게도 제소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구조례와는 달리 개정조례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소비자가격 및 수출가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조사 신청시 덤핑의 존재, 중국산업의 피해, 덤핑수입제품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별첨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WTO 반덤핑협정의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례에서는 신청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개정조례 제17조는 WTO 반덤핑협정의 제5.4조에서와 같이 국내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의견표명자의 50% 이상이고,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산업 생산자의 총생산량이 25% 이상일 때 제소적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소자격요건이 실제로 지켜질 것인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1999년 조사가 개시되어 2000년 8월에 최종판정을 내린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경우를 보면, 최종판정에 단순히 제소자는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한국의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가리킨다. 의견표명 및 찬성자에 대한 기준 등의 제소적격 요건은 WTO 규정과 동일하다.

나) 개선 방향

덤핑 제소자격은 조사개시의 요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덤핑은 조사의 개시만으로도 수출자에게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소자격이 엄격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제소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효율적인 수출자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현행 WTO를 비롯한 한・중・일 3국의 제소자 적격에 대한 규정은 반덤핑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22] 반덤핑제소를 당한 동종제품의 국내생산 35%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협

22) 이 예는 WTO 반덤핑협상에서 제소자 적격에 대해 우리나라가 마련하고 프렌즈 그룹이 제출한 제소자 적격에 대한 문건에서 발췌한 것이다.

회가 있다고 가정하자. 어떤 덤핑제소건에 대해 이 협회는 찬성하였고, 34%의 다른 국내생산자는 반대, 그리고 나머지 31%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생산의 35%를 차지하는 이 협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18%는 찬성, 17%는 반대하였으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반덤핑제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는 의견표명이 50% 이상이고 국내총생산의 25% 이상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제소자 적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국내 총생산의 18%만이 반덤핑제소를 찬성한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반덤핑제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제소자 적격의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DDA 협상에서 프렌즈 그룹은 피해에 대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국내생산자로부터 얻는다는 것에 근거하여,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제소자 적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70% 이상은 이상적인 기준이며, 최소한 국내생산자의 5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때 제소자 적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반덤핑제도의 원칙과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2) 접수사실의 통보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의 통보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요건을 갖춘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절차 개시 전에 관련 수출국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개정조례는 신청서 및 관련 증거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서와 증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수출국의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는 반덤핑 질의서 조사에 관한 잠정시행규칙을 발표하고 2003년 4월 15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대상국가의 생산업자나 수출업자는 반덤핑 입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안 공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에 응소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관행상으로 수출업자가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에 20일 내에 그리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에 30일 이내에 응소해야 했다.[23] 만약 외국의 이해관계자가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하면 그 이후 이해관계자가 제출 자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에 따라 덤핑마진을 책정하고 있다(Grace *et al.* 2003). 이에 따라 수출업자가 이에 대응할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Huang(2002)은 중국 반덤핑 담당자들이 반덤핑제소의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피소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 피소자가 조사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를 보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조사

조사의 실시와 관련된 중국의 조항은 WTO 반덤핑협정과 기본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 이용 가능한 정보와 관련하여 개정조례는 “획득한 사실 및 획득 가능한 가장 좋은 정보에 근거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입수 가능한 정보에 대해 부속서 2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WTO 반덤핑협정과는 달리 중국의 개정조례는 추가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

또한 영업상의 비밀자료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즉 이해관계자의 비밀처리 요청 가능성, 비밀유지가 요구되지 않는 요약문의 요구, 조사기관의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 등을 기술하

23) 여기서 응소란 WTO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자가 질의서에 답변하는 데 최소 30일의 기간을 보장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20일 이내에 응소해야 하는 것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 기간이 아니라, 반덤핑조사 및 진행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질의서는 응소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한다.

고 있다. 이 규정도 여타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WTO 반덤핑협정의 기본 골격은 수용하였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WTO협정은 요약본의 경우에 비밀유지가 요구되지 않는 요약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정조례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조사의 종료에 관하여 개정조례는 구조례에 비해 그 경우를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제27조에서 1) 신청자의 철회, 2) 덤핑, 피해 또는 양자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3)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4) 덤핑수입제품의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수량 및 그 손해가 미소할 경우, 5) 조사당국이 반덤핑 조사의 실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1개 또는 일부 국가의 조사대상 제품이 상기 조항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반덤핑조사는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불투명했던 구조례의 상당부분이 WTO 반덤핑협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한국은 조사개시의 결정이 나면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류를 제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경우 2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 및 이와 관련된 비밀이 아닌 요약본의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은 WTO협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라. 반덤핑 조치

1) 잠정조치

반덤핑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사기간중에 국내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잠정조치를 취한다. 중국은 구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던 잠정조치의 일시 및 기간에 대해

개정조례에서는 WTO 반덤핑협정과 같이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적용할 수 없고, 잠정관세는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협정과의 차이점은 WTO협정 제7.4조는 잠정조치의 연기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규정은 무역의 상당한 비율(significant percentage)을 대표하는 수출자들의 요청에 따라 관할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당국이 조사기간중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로서 피해를 제거하는 데 충분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7.1조에서 명시한 잠정조치의 요건, 즉 조사당국이 조사기간중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예비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중국의 개정조례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잠정조치의 발동요건이 WTO협정에 비해 완화되어 있으나, 덤핑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덤핑조사가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정조치의 요건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우, 잠정조치의 일시 및 기간은 WTO협정과 동일하게 조사개시일 60일 이후에 잠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잠정조치는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2) 가격약속

가격약속은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여 확정적으로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수입국 당국과 피제소자가 가격수정에 대해 합의하여 조사를 종결시키는 조치를 가리킨다. 덤핑관세에 비해 가격약속은 수출업자가 지게 되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내산업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개정조례는 제31~제36조에서 가격약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WTO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한 가격약속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구조례와는 달리 개정조례가 새로이 도입한 규정은 수출자 또는 수출국의 정부만이 가격약속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도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가격약속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이유를 수출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제안하거나 정부당국이 수출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WTO 반덤핑협정 제8.3조는 당국이 수출자의 가격약속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수출자가 너무 많거나 일반정책적인 이유(reasons for general policy)를 포함한 기타 이유(other reasons)를 들고 있는 반면, 중국의 개정조례는 당국이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반덤핑 가격승인에 관한 잠정시행규칙(2002년 4월 15일 시행)에서 가격약속의 승인여부를 판단할 때 1) 덤핑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의 해소여부, 2) 실행을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의 구비 여부, 3)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공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조사를 기피할 가능성 여부, 5)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요소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과 중국의 반덤핑 시행규칙이 제시하는 이유가 매우 불투명하여 당국의 재량에 의해 가격약속의 수락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많다. 특히 중국의 시행규칙 제22조는 가격약속의 계속적인 집행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공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가격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이익을 이유로 가격약속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에서 가격약속을 승인하지 못하는 근거와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반덤핑관세

중국의 개정조례 제37조는 최종판정을 거쳐 덤핑의 성립을 확정하고 이로 인해 중국 산업의 피해를 초래할 경우에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수 있고, 제42조는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의 크기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 데 적절하다면 덤핑마진보다 적은 반덤핑관세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즉 명시적으로 경미과세의 원칙(lesser duty rule)을 –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 개정조례는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반덤핑관세와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비교하여 낮은 것을 덤핑방지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산업피해 구제수준은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을 경우 국내산업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수준으로 정하고 있다.[24]

일본의 반덤핑규범은 반덤핑관세와 산업피해구제 수준을 비교하여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경미과세원칙을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Komuro 1997).

DDA협상에서 프렌즈 그룹은 경미과세의 강행규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덤핑조치의 목적이 관세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실질관세율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 데 있기 때문

24) 무역위원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실무지침 IV에 따르면 산업피해구제수준은 [국산품 적정 판매가격(cif 수입가격+수입통관 제비용)]/수입가격(cif)으로 정의된다.

에 경미과세의 강행규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개정조례는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다는 점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체결에 있어서 경미과세의 강행규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중국의 개정조례 제41조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을 뿐,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Huang(2002)은 실제 관행에서 중국 당국은 피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산업구제수준이 아닌 덤핑마진 전부를 부과하는 것이 정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9.4조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한 덤핑관세는 i)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부과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ii) 반덤핑관세의 지급의무가 예상되는 정상가치로 산정될 경우에는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의 차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조상대상에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 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다 납부된 관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 관세액이 소급적 방식으로 평가된 경우에 환급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망적 방식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환급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하며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정조례는 납부시한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고, 단지 “그 차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반환하거나 또는 세약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수출자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 제9.5조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

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존의 수출자와 관계가 없음을 증명한 신규 수출자에 대한 재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수출자에 대해 한국은 2001년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신규수출자가 기존의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기존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는데,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는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재심

중국의 개정조례는 반덤핑세의 징수기한 및 가격승낙의 이행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재심사를 거쳐 반덤핑세의 징수 종료는 덤핑 및 손해의 계속 발생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될 경우 반덤핑세의 징수기한은 적당하게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대외경제무역부는 국가경제무역부와 협의를 거친 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필요성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일정한 합리적인 시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또한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관련 증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필요성에 대해 재심(2심)을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덤핑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덤핑의 상쇄에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한국도 반덤핑관세의 부과나 가격약속은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사의 요건으로는 1)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

의 시행 이후에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1997년 처음 제정된 중국의 반덤핑법은 그 동안 변화를 거듭하여 현행 중국의 반덤핑 개정조례는 WTO규정에 상당 수준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면 규정이 더 모호하고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또한 반덤핑조사 및 결정의 과정은 타국가에 비해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관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밝혀진 중국 반덤핑 관생의 문제점으로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이해관계자에게 결정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한·중·일 3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반덤핑제소를 당하는 국가이면서, 중국과 한국은 각각 한·중·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반덤핑조례가 제정된 이래 2002년까지 21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는데, 그 중 17건과 12건이 각각 한국과 일본에 대해 취해질 정도로 반덤핑조사의 집중도가 높다(표 3-2 참고). <표 3-3>에서 중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해 중국으로의 수출은 평균 62.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국이 반덤핑조치를 발동한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이들 품목에 있어서 중국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반덤핑조치를 발동하는 주요 목적이 수출자와 국내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

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반덤핑에 대해 견지해야 할 입장과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이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 자국산업을 보호하여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데 남용되는 수단인 반덤핑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한·중·일 3국이 반덤핑조치를 상대 국가의 수출을 저해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한·중·일 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각국이 반덤핑제도를 활용할 경우 역내무역은 결코 촉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1절에서 경제통합과 반덤핑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면서 반덤핑조치의 철폐는 공동의 경쟁법 제정과 같은 어떤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TA가 체결된 이후 역내무역에 대해 반덤핑조치가 발동될 수 있도록 각 국가가 반덤핑제도를 유지해야 할 근거로 반덤핑제도가 약탈적 덤핑의 방지수단이고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는 약탈적 덤핑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외국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반덤핑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와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외국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반덤핑제도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울러 EU, EEA 및 캐나다-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사례에서 경쟁법의 마련이 반덤핑제도 철폐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 각국의 반덤핑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역내자유무역의 실현이라는 목표와는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덤핑제도가 역내무역을 촉진하는 데 걸

림돌이 된다는 것은 2002년까지 중국이 발동한 반덤핑조치로 수출이 24~62%까지 격감한 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표 3-3 참고).

다만,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공동의 반덤핑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이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 조사당국의 자의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반덤핑 개정조례는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새롭게 개정된 것이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면 규정이 더 모호하고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한국과 일본은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DDA협상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듯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 마련되어야 할 반덤핑협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모호한 규정을 지니고 있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을 대폭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1) 네거티브 덤핑마진을 영(0)으로 처리하는 관행인 제로잉의 금지
2) 덤핑마진을 산출하기 위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할 때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가중평균수출가격을 비교방법으로 채택하고, 재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
3) 원가 미만의 국내 판매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제외하지 않거나, 현행 WTO규정의 대폭 완화
4) WTO 반덤핑협정에서 2%인 미소마진의 상향조정
5) 입수 가능한 사실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수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는 요건의 강화
6) 경미과세의 원칙을 명문화하거나 이 규정의 강제화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현행 WTO 반덤핑협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매우 많다. 상세한 내용은 한・중・일 3국의 반덤핑제도를 비교하면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현재 DDA협상 규범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프렌즈 그룹에 속하고, 현행 WTO 반덤핑협정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한・중・일 3국의 입장과 공동노력은 동북아 FTA의 추진에 따른 반덤핑협정의 제정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과 무역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보조금(subsidies)’이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보조금의 경우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상당한 정도의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등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양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한 국가의 경제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디자인하는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경제 정책적 주권이라는 측면이 있다. 반면,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 왜곡적 기능 역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측면에서는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25]으로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무역이론에서는 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외국기업의 이윤을 국내기업으로 이전하는 효과(이윤이전, profit shifting)가 이론적으로 증명되었다(Brander and Spencer 1985). 즉 보조금 지급은

25) 국제무역이론(international trade theory)에서의 전략적 무역정책은 국제적으로 산업구조가 과점(oligopoly) 상태인 경우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이용하여 분석되는 무역정책을 일컫는다(Brander 1995, p. 1397).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국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역정책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정의와 국제무역이론의 정의를 병행한다.

국내기업의 행위를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시켜 외국 경쟁기업의 생산(Cournot경쟁의 경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은 기업간의 전략적 관계(strategic relations)를 변화시켜 과점경쟁이론에서 발생하던 선행위자의 우위(first-mover advantage)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관계의 변화에 대한 유인(incentives)은 결국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변화에 대한 유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개별 정부는 교역조건을 국내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유인을 지니고 있어(Bagwell and Staiger 2002) 적극적인 전략적 무역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26] 따라서 다자·지역·양자간 무역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정부는 일방주의적인 무역정책(unilateral trade policy)을 취할 수 있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이 높은데,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역시 이러한 유인을 지니고 있어 보조금 지급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적인 2국 모형에서 A국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B국은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적 정책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보조금을 지급할 정책적 유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내쉬균형(Nash equilibrium)[27]이다. 하지만 내쉬균형 아래 양국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양국의 후생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의

26) 교역조건의 변화를 통한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형태는 관세부과이다.

27) 내쉬균형은 게임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균형개념으로 경제주체의 상호 최적반응의 집합(collection of mutual best responses)으로 정의될 수 있다. Mas-Colell *et al.* (1995, pp. 246~253) 참고.

상황이 발생한다(Brander 1995, pp. 1409～14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제적 구속력을 지닌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즉 모든 개별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을 지니고 있어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을 억제하는 다자무역협정이 존재한다면 모든 국가의 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Bagwell and Staiger 2002, pp. 13～36; Kang 2000). 1995년 1월 1일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정)'이 발효되었는데, 이에 대한 국제무역이론적 근거가 앞서 설명한 논리이다. 보조금협정은 과거 GATT협정과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써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2.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제1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조금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보조금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자규범이 WTO의 보조금협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채택된 보조금협정은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 달리 규정[28]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품에 대한 보조금의 제

28) 농업부문의 보조금은 농업협정에 의해 규제되는데, 제6조에서는 국내보조 약속, 제7조에서는 국내보조에 관한 일반규율, 제8조에서는 수출경쟁 약속, 제9조에서는 수출보조금 약속, 제10조에서는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5～2000년 동안 무역왜곡(trade-distorting) 국내보조의 감축이 이루어졌는데(개도국의 경우 2004년까지), 생산제한 프로그램 아래 지불이 이루어지는 '블루 박스(blue box)'와 무역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국내보조 정책인 '그린 박스(green box)' 등이 배제되었다. 또한 농업협정은 수출보조금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각각 6년, 10년 동안 감축하여야 한다.

공에 적용될 규칙과 원칙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범이다.

현행 보조금협정은 기존의 GATT 1947에서의 보조금 규정(제16조)에 비해 상당한 규범적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첫째, 보조금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이 보조금협정을 준수함으로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점이 GATT 1947 및 동경라운드 보조금협정과는 다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둘째, GATT 1947과 동경라운드 보조금협정과는 달리 보조금협정은 보조금 및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기본 개념이 정의됨으로써 보조금에 관한 규범체계가 보다 분명하게 되며, 그만큼 관련 분쟁의 여지도 감소하게 되었다. 셋째, 보조금협정은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실상의 수출보조금(de facto export subsidies)은 물론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의 사용도 금지한다. 이로써 보조금을 통한 시장질서 왜곡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넷째, 보조금협정은 조치가능보조금의 중심요소인 심각한 손상이 추정되는 경우와 절차를 강화하였고, 다섯째, 원칙적으로 상계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허용보조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밖에 보조금협정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었으며, 보조금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WTO 분쟁해결양해(DSU)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협정의 어느 규정도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유보가 허용되지 않으며(제32.2조), 이 협정은 회원국에 대한 WTO협정 발효일인 199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라 개시된 상계관세 조사 및 기존조치의 재심에만 적용된다(제32.3조). 확정상계관세의 부과 후 5년의 자동실효를 위하여 기존의 상계관세는 회원국에 대한 WTO협정 발효일 이전에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2.4조).[29] 다만 이 발효일에

29) 그러나 이 규정은 WTO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상계관세의 자동소멸조항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한 해당 회원국의 국내법이 이미 자동실효조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예외이다(제32.4조). 각 회원국은 자국에 대한 WTO협정 발효일 이전에 자국의 법령 및 행정절차를 보조금협정에 일치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32.5조), 보조금협정에 부속된 부속서는 보조금협정의 통합적 일부분을 구성한다(제32.8조).[30]

<표 4-1>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 조항

항 목	내 용	비 고	조항
보조금 정의	정부의 직접적 자금지원	자금의 직접이전(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등),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대출보증 등), 세입포기 또는 미징수(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 재화·용역의 제공 및 구매	(1.1)
	정부의 간접적 자금지원	상기 사항 민간기구에 위임 또는 지도	
	혜택 발생	가격 및 요율결정시 통상적인 시장원리와 차이가 있을 경우	(1.1)
특정성	특정 산업, 기업, 지역에 공여	객관적 요건하에 자동적으로 공여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사후적 개념도 포함)	(1.2) (2)
부정적 효과	피해, 무효화 또는 침해, 심각한 손상	상대국시장, 시장점유율 변화에 따른 잠재적 이익 포함	(5)
	심각한 손상의 형태	수입배제 및 방해 효과(제3국 시장포함), 가격인하 또는 가격인상억제, 시장점유율 변화	(6.3)
	심각한 이익침해의 간주	보조금규모 5% 초과, 영업손실보전, 직접적인 채무감면	(6.1)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적용	금지보조금	보조금 공여가 인정되는 경우	(4)
	상계가능보조금	부정적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7)

자료: 최낙균 외(2000, p. 95)

30) 부속서는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 종가기준 총 보조금지급의 계산, 심각한 손상과 관련된 정보개발절차, 제12.6조에 따른 현장조사절차, 제27.2(a)조에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 등이다.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1) 보조금의 정의

현행 보조금협정은 GATT 1947에서와는 달리[31]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문성 외(200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협정은 체계적인 국제통상질서를 확립하고 예측 가능한 국제통상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고 평가된다. 보조금협정 제1.1조는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재정적 지원(financial contribution)의 공여, (2) 회원국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public body)이 제공한 기여, (3) 기여로 인한 혜택(benefit)의 제공 등이다.[32] 여기서 재정적 기여의 존재((a)(1)항) 외에도 GATT XVI조의 의미에서 직접·간접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키는 소득 또는 가격보조((a)(2)항) 역시 포함된다.

이러한 요건 중 첫 번째 재정적 기여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존재하는데, (1) 자금 및 채무부담의 직접적 이전, (2) 세액공제 등 정부세입의 포기,[33] (3)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구매, (4) 정부가 금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통해 위 3가지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보조금의 두 번째 요건인 행위 주체는 중앙정부는 물론

31) GATT1947 XVI조는 '회원국이 직·간접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여하한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를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32) 상기 3가지 요건 중 두 번째 정부 부분을 제외하고 (1)과 (3)의 2가지 요건만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으나, 행위주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3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3) 동 협정 각주 1에 따르면, "GATT XVI조의 규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 Ⅰ~Ⅲ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소비연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정부와 준국가기관(parastatal agencies) 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민간기업(Schott 1994, p. 87) 및 공기업(Croome 1999, p. 92)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정적 기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앞서 열거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부의 특정 프로그램이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협정은 앞서 지적한 보조금의 세 번째 요소인 '혜택(benefit)'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계조치의 목적상 보조금 수혜자에게 주어진 혜택의 계산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은 일정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은 보조금협정 제14조(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협정 부속서 IV는 심각한 손상의 추정목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용을 근거로 '종가기준 총보조금지급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민간항공기'사건에서 패널은 보조금협정 제1.1(b)조상의 '혜택'이란 용어의 통상적 의미는 다양한 형태의 'advantage'를 포함한다고 하여 '혜택'을 'advantage'로 해석하였다.[34]

2) 특정성

현행 보조금협정에서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정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보조금의 성격상 '특정적(specific)'일 경우에 한해 보조금협정상의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35] 다만,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과 같은 금지보조금은 그 자체로서 특정적이라 간주된다(제2.3조).

보조금협정 제2.1(a)조에 따르면, 보조금이 명시적으로 공여당국 관할 내에 있는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 등 '특정 기업(certain enterprises)'에게 국한된다면 그 보조금은 특정적이라고 판정된다. 또한

34) Vermulst and Graafsma(2002), p. 298.

35) Croome(1999), p. 93.

공여당국(또는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에 따라 설정하고 그 수혜 자격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면 그 보조금에 대한 특정성(specificity)은 존재하지 않는다(제2.1(b)조).

또한 상기 두 원칙의 적용으로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de facto specific)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 등이다(제2.1(c)조).

이러한 특정성 요건은 조치가능보조금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성에 대한 결정은 '명백한 증거(positive evidence)'에 기초하여 입증되어야 한다(제2.4조). 따라서 특정성과 관련하여 요약하자면, 특정성은 해당 법률에 기초한 '법률상의 특정성(de jure specificity)'과 앞서 지적한 '사실상의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으로 구분된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상의 특정성은 법률상 특정성이 외견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조금이 실질적으로는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3) 허용보조금 및 금지보조금의 정의

현행 보조금협정은 Ⅳ부에서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or green-light subsidies)을 규정하고 있다. 허용보조금은 보조금협정 제2조의 의미 내에서 특정적이지 않거나(제8.1조 (a)항) 또는 특정적이지만 보조금협정 제8.2조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금(제8.1조 (b)항)이 해당된다. 이러한 허용보조금은 R&D 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허용보조금이라 주장되는 보조금계획은 보조금협정 제25조에 따라 사

전에 보조금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는데, 통보내용은 다른 회원국이 무역효과를 평가하고 통보된 보조금 계획의 운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제25.3조).

금지보조금(prohibited or red-light subsidies)은 보조금협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부속서 I에서는 수출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export earning)에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보조금협정 각주 4). 조치가능보조금과 달리 특이한 점은 교역상대국의 금지보조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해당 금지보조금의 존재만을 적시하면 되고 이로 인한 부정적 무역효과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4) 부정적 효과 및 심각한 손상

가) 보조금협정 Ⅲ부

보조금협정은 제Ⅲ부에서 부정적 효과의 개념에 근거한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or yellow-light subsidies)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치가능보조금의 핵심요소는 보조금으로 초래된 부정적 효과이며 그 중에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이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가 제거된다면 그 보조금은 계속 존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능보조금에 대한 보상도 하나의 구제수단이 된다.

보조금협정은 사실상 조치가능보조금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조치가능보조금은 보조금협정에 따라 그 자체로서는 부정적 효과가 없어 존속될 수 있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두 번째 조치가능보조금은 심각한 손상이 추정되는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흔히 '심각한 손상 보조금(dark-amber subsidies)'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조치가능보조금은 그 부

정적 효과가 증명되면 WTO 분쟁해결절차나 국내 상계관세절차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보조금협정 제31조에서는 심각한 손상 관련 규정(제6.1조)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9년 말까지 유효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실효된 상태이다.

나)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

보조금협정 제5조에 따르면, 어떤 회원국도 보조금협정 제1.1과 제1.2조에 언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제5조 (a)항), 1994년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이 협정 Ⅱ조에 따른 양허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제5조 (b)항),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제5조 (c)항) 등 세 가지이다.

다) 심각한 손상

보조금협정상의 심각한 손상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XVI조 1항[36]에서 사용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심각한 손상의 위협(threat)을 포함한다(보조금협정 각주 13). 보조금협정 제6.1조에서는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4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종가기준 총보조금지급이 5%를 초과하는 경우(제6.1(a)조), 특정 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제6.1(b)조), 특정 기업이 입은 영업손

36) 위의 조항에서는 심각한 손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에 의하여 다른 체약당사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동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당해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 또는 체약당사자단과 논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제6.1(c)조), 정부보유채무의 면제와 채무상환을 위한 교부금 등 직접적인 채무감면(제6.1(d)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협정 제6.1조는 이미 실효된 상태이다.

5) 전체적인 평가

사실 1절에서 거론된 보조금의 양면성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논란을 거듭하였던 문제로서,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된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의 무역왜곡적 기능을 규제하는 방향에 상대적인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조금협정은 보조금분야에 있어 체계적인 국제통상질서를 확립하고 예측 가능한 국제통상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해결과정에서도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Jackson(1997)이 지적하고 있듯이 WTO 보조금협정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일관된 규범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될 경우 다자통상체제에서 설정된 통상정책의 목표를 훼손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지난 2001년 11월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일반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규범협상의 틀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37]

37) WTO 제4차 각료선언문(WT/MIN(01)/DEC/W/1) 28항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보조금 관련 규정

1) WTO Plus형의 지역무역협정

일부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보조금 규제에 있어 WTO 보조금협정 이상의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로마조약(Rome Treaty, 구체적으로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38] 등이 이에 해당된다. EU의 로마조약 제87.1조와 EEA 61.1조는 경쟁(competition)을 왜곡하거나 왜곡의 위험이 있는 정부보조(state aids)는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특성(social character)을 지닌 정부보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정부보조 등은 허용된다(로마조약 제8.2조, EEA 제61.2조). 또한 생활수준이 낮거나 심각한 실업이 존재하는 지역의 경제개발 보조, 유럽의 공동관심사를 반영한 중요 행사 수행을 위한 정부보조 및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회원국을 지원하는 정부보조, 특정경제활동의 개발을 원활히 하는 정부보조 등은 허용할 수 있다(로마조약 제87.3조, EEA 제61.3조). 이에 덧붙여 로마조약 87.3조 (d)항은 유럽공동체의 무역조건과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 및 유적보존을 위한 정부보조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중앙 유럽 7개국이 참여하는 중앙유럽자유무역협정(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CEFTA) 역시 경쟁을 왜곡하거나 왜곡의 위험이 있는 정부보조를 금지하고 있으나(CEFTA 제23.1조), 해당 조항은 농업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CEFTA 제23.2조).

---

38) EEA는 1992년 5월 EC 12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7개국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등이 맺은 경제통합협정이다.

1983년 1월 발효된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ustralia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ZCERTA)은 WTO가 보조금협정을 통해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기 전에 이미 모든 수출보조금을 금지하여(제9.1조), ANZCERTA는 WTO Plus형의 자유무역협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정부는 매 5년마다 일반검토회의(General Review of ANZCERTA)를 개최하여 이 협정의 이행상황과 향후 보완과제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1988년 개최된 제1차 일반검토회의에서 생산보조금 및 유사 정부보조금 지급의 금지, 회원국간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정산업지원 자제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지원 관련 합의록(Agreed Minute on Industry Assistance)에 서명하였다. 1992년 개최된 제2차 일반검토회의에서는 양국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정적 지원(non-financial assistance)의 금지에도 양국정부가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재정적 지원만을 보조금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WTO 보조금협정보다 규범적으로 강화된 것이어서, ANZCERTA는 보조금 규제에 있어서 여타 자유무역협정 중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간의 자유무역협정인 ANZSCEP(또는 Agreement between New Zealand and Singapore on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CEP)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제7.1조). 또한 ANZSCEP는 상대 회원국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국내보조금의 경우 이 보조금의 제한에 대한 양자협의(consultations)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2조).

2)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WTO 보조금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규제하는 자유무역협정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과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CUSFTA)이다. 사실

NAFTA와 NAFTA의 규범적 모체인 CUSFTA에서는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농업부문에서 농업보조금(NAFTA에서는 국내보조와 수출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한다. 대신 상계관세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NAFTA 1902.1조와 CUSFTA 1902.1조는 개별 회원국이 수입품에 대해 자국의 반덤핑법이나 상계관세법을 적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할 권리 역시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AFTA 1902.2조, CUSFTA 1902.2조). 그러나 이러한 수정 및 보완은 GATT의 보조금 코드(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16조 보조금, 제23조 무효화 또는 침해)와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NAFTA 1902.2(d)(i)조, CUSFTA 1902.2(d)(i)조). 따라서 보조금 관련된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WTO 보조금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NAFTA와 CUSFTA는 농산물을 제외한 상품의 교역에 적용되는 보조금 규율이 WTO 보조금협정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NAFTA와 CUSFTA는 농업부문의 보조금 규제와 관련하여 WTO 농업협정보다도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CUSFTA 701.2조는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NAFTA 조항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NAFTA 부속규정 702.1조), NAFTA 705.2조는 북미 3국간의 농산물 교역에 있어 수출보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특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AFTA 705.3조).

3) 평가

유럽지역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동맹의 경우 농산물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의 교역에 있어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주지역의 자유무역협정 규정은 일반 공산품의 경우 WTO규정을 준용하지만,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보조금 규제에 유럽지역보다 적극적인 것

으로 평가된다. EU의 로마조약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농업 수출보조금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역내교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없다. 이는 EU의 경우 다른 지역무역협정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강해, 역내교역을 한 국가의 국내 교역 정도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규율에 있어 WTO 보조금협정보다 규범적으로 개선되거나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WTO 보조금협정에 비해 이를 포함하는 무역(경쟁)을 왜곡하거나 왜곡의 위협이 존재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유럽 및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이루었져다. 또한 농업부문

<표 4-2> 주요 FTA 또는 CU별 보조금 관련 규정

	수출보조금 금지	무역(경쟁) 왜곡 보조금 금지	농업부문 수출보조금 금지	비재정적 지원 금지	평가
WTO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로마조약	○	○	규정 없음.	규정 없음.	WTO Plus
EEA	○	○	×	규정 없음.	WTO Plus
CEFTA	○	○	×	규정 없음.	WTO Plus
ANZCERTA	○	○	○	○	WTO Plus
ANZSCEP	○	○	○	규정 없음.	WTO Plus
NAFTA	WTO 준용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WTO와 유사
CUSFTA	WTO 준용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WTO와 유사

주: 1) 수출보조금 금지보다 무역(경쟁) 왜곡 보조금의 금지규정이 보조금 규제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유럽경제지역(EEA), 중앙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뉴질랜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ANZSCE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
3) NAFTA의 농업부문 수출보조금의 경우 미국-캐나다간 교역에만 금지되어 있어 「△」로 평가한다.

의 수출보조금 금지에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이 미주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된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이 WTO 보조금규율보다 자유무역(free trade)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NAFTA와 CUSFTA의 경우 농업부문을 제외한 공산품 분야에서는 WTO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WTO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1) WTO와 유사한 규정을 지닌 지역무역협정

WTO에서는 상계관세 관련 규범이 보조금협정을 통해 규정된 반면,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반덤핑과 함께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상계관세의 부과가 허용되며, 보조금협정을 통해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제11조), 증거(제12조), 협의(제13조), 보조금액의 계산(제14조), 피해의 판정(제15조), 국내산업의 정의(제16조), 잠정조치(제17조), 약속(제18조), 상계관세의 부과 및 징수(제19조), 소급(제20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존속기간 및 검토(제21조), 판정의 공고 및 설명(제22조), 사법적 검토(제2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무역협정 중 WTO규율과 유사하게 운용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 New- Age Economic Partnership)이다. 이 협정 제14.5(b)조에서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데, 상계관세는 GATT 1994의 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WTO 보조금협정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양국간 상계관세부과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상계관세부과는 GATT 1994의 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WTO 보조금협정에 부합하여야 한다(제7.1.1조).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반덤핑 부과를 금지한 반면(제3장 참고) 상

계관세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데, ANZCERTA, 캐나다-칠레 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ANZCERTA는 WTO 보조금 코드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상계관세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으나(ANZCERTA 16.1조), ANZCERTA 발효 이후 양국간에 상계관세가 부과된 경우는 없다. 캐나다-칠레 FTA 역시 반덤핑 부과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의 부과가 허용되나, 보조금 정의 및 상계관세부과 금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양자 협의하도록 반덤핑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M-05조). 남미공동시장 역시 상계관세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으나, 경쟁정책과의 조화 차원에서 상계관세의 점진적인 철폐를 논의하고 있다(OECD 2003, p. 134).

2) 상계관세부과를 금지한 지역무역협정

WTO에서 허용되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과감히 금지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EU의 로마조약이다. 이 조약 제92조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경제지역(EEA)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도 상계관세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EEA 26조, EFTA 36조). 그러나 EEA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OECD 2003, p. 134).

3) 평가

전체적으로 WTO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계관세 운용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정도가 심화된 유럽지역의 경우 상계관세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많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상계관세의 부과는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 중 하나로 인식되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어느 정도 지니는 것으로 평

가된다. 따라서 상계관세의 금지는 상품의 자유무역이라는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연구에서는 'WTO Plus'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계관세부과를 허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이 많은 실정이나, 역내 회원국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부과를 금지하거나 금지를 고려하는 지역무역협정도 존재한다. 또한 반덤핑관세를 금지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증가하는 추세여서(제3장 참고), 상계관세분야에도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3> 지역무역협정별 상계관세 규정

	상계관세부과 허용 여부	향후 철폐 논의	평가
WTO	○	×	-
일본-싱가포르 FTA	○	×	WTO와 동일
한국-칠레 FTA	○	×	WTO와 동일
ANZCERTA	○	×	WTO와 동일
캐나다-칠레 FTA	○	○	WTO와 유사
MERCOSUR	○	○	WTO와 유사
로마조약	×	-	WTO Plus
EEA	×	-	WTO Plus
EFTA	×	-	WTO Plus

주: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 한·중·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가. 보조금 운용 현황

1) 개요

WTO 보조금협정 제25조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자국의 모든 특정성 있는 보조금(제25조 2항)을 매 3년마다 완전통보(new and full notification)하고, 그 중간연도에 보완통보(updating notification)하여야 한다.[39] 이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표 4-4>와 같은데,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특정적 허용보조금, 무역왜곡보조금 등이다.

지난 2001년은 완전통보에 해당하는 연도이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통보한 반면 그 당시 회원국이 아니었던 중국은 통보의무가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보조금통보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한 반면, 2001년 완전통보한 회원국은 전체 144국 중 35.4%에 지나지 않는 51국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1년 WTO 보조금위원회에 통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중국의 경우 WTO 가입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39) 보조금협정 제25조 1항은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6조 1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보조금에 관한 통보서를 제출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2항은 "회원국은 자기 나라 영토 내에서 부여되거나 유지되고 제2조의 의미 내에서 특정성이 있는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모든 보조금을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GATT 제16조 1항은 "체약국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떤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키는 소득 또는 가격지원과 같은 모든 형태의 보조금을 공여 또는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범위와 성격, 수출입물량에 대한 추정효과를 서면으로 체약국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WTO 1999).

<표 4-4> WTO 통보대상 보조금

보조금 종류	주 요 내 용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특정 산업·기업·품목 또는 특정 지역에 한하여 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보조금으로서 피해상대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조금
특정적 허용보조금	특정성이 있으나 WTO협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R&D, 지역개발, 환경보조금)
무역왜곡보조금	수출증가 또는 수입감소 효과가 있는 보조금

주: 특정적 허용보조금의 경우 보조금협정의 제8조에 의하여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위의 조항은 이 협정 제31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2) WTO에 통보된 한국의 보조금 현황

한국은 WTO 출범 이후 보조금협정의 통보의무를 준수하여 왔는데, 1996년 4월, 1998년 6월, 2001년 7월 완전통보하였고 1996년 7월, 1998년 6월, 1999년 6월, 2000년 6월 보완통보하였다. 그 동안 한국이 WTO에 통보대상보조금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현황은 <표 4-5>와 같은데, 2001년 현재 총 19건의 보조금을 통보하였다. 이번 통보에 포함된 19건 중 상계가능보조금은 15건이며, 특정적 허용보조금은 4건이다.

<표 4-5> 한국의 보조금 통보 현황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금지보조금	5	4	-	-	-	-
상계가능보조금	17	17	15	15	15	15
특정적 허용보조금	4	3	4	4	4	4
계	26	24	19	19	19	19

자료: WTO(http://www.wto.org/), 1996년 G/SCM/N/3/KOR/Rev.1, 1997년 G/SCM/N/25/KOR, 1998년 G/SCM/N/38/KOR, 1999년 G/SCM/N/48/KOR, 2000년 G/SCM/N/60/KOR, 2001년 G/SCM/N/71/KOR.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된 15건을 산업별로 분류하면, 농업 3건, 임업 2건, 수산업 5건, 석탄산업 1건, 제조업 4건 등이다. 그리고 특정적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 4건은 모두 R&D 또는 환경관련보조금이다. WTO에 통보된 구체적인 보조금 현황은 <표 4-6>에 나타나 있다.

WTO에 제출된 자료(G/SCM/N/71/KOR)에 의하면, 통보된 보조금 중 농업관련 보조금이 2000년에 9,970.5억 원에 이르며, 그 외 임업 11.8억 원, 수산업 1,452.3억 원, 석탄산업 3,394.2억 원, 제조업(외국인 투자기업지원 제외) 135억 원이어서 상계가능보조금 규모는 총 1조 4,963.8억 원이다. 또한 특정적 허용보조금으로 통보된 4건의 보조금 규모는 총 2,262.9억 원이어서, 2001년 WTO에 통보된 총 보조금 규모(외국인 투자기업지원 제외)는 1조 7,226.7억 원이다. 이는 2000년 경상GDP 규모(521조 9592억 원)의 0.33%이다.

<표 4-6> 2001년 통보된 한국의 보조금 현황

보조금 분류	보조금 명칭	소관 부처	목 적
상계가능 보조금	양곡관리사업	농림부	식량안보를 위한 기초농산물의 적정재고유지
	축산업 지원		한우 사육기반 안정지원 및 돼지고기 생산지원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농축산물 품질향상 및 물류비 절감
	합판 및 보드류 시설지원	산림청	합판 및 보드류 생산설비 현대화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임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국산재 이용촉진
	원양어업 개발지원	해양수산부	원양어업자에 대한 어업경영자금지원
	수산물 가공개발지원		우량제품 생산확대, 신제품 개발촉진
	영어자금		어업경영자금 적기 지원
	양식어장 개발지원		양식업 시설확충

<표 4-6> 계속

보조금 분류	보조금 명칭	소관 부처	목 적
상계가능 보조금	외항선박 건조·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부담 완화
	석탄산업지원	산업자원부	구조조정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지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유치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 관세감면	재정경제부	국내 비생산 부분품에 대한 원가절감
	농업기계생산 비축자금 지원	농림부	농기계 공급기반 유지
	석재산업지원	산업자원부	자원의 합리적 개발
특정적 허용 보조금	자동차 저공해 기술개발지원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량 절감
	정보통신 연구개발지원	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지원	환경부	환경문제 기술향상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지원

자료: WTO 자료 G/SCM/N/71/KOR

<표 4-7> WTO 통보된 보조금 규모(2000년 기준)

분류	산업	보조금 명칭	규모(억 원)
상계가능 보조금	농업	양곡관리사업	9,683.0
		축산업 지원	103.8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183.6
	임업	합판 및 보드류 시설지원	1.8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10.0

<표 4-7> 계속

분류	산업	보조금 명칭	규모(억 원)
상계가능 보조금	수산업	원양어업 개발지원	153.0
		수산물 가공개발지원	60.0
		영어자금	976.0
		양식어장 개발지원	27.0
		외항선박 건조·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	236.3
	제조업	석탄산업지원	3,394.2
		외국인 투자기업지원	NA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 관세감면	106.0
		농업기계생산 비축자금 지원	23.2
		석재산업지원	5.8
특정적 허용보조금	R&D	자동차 저공해 기술개발지원	25.0
		정보통신 연구개발지원	1,469.0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지원	461.0
		과학기술진흥기금	307.9
합 계			17,226.7

3) WTO에 통보된 일본의 보조금 현황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WTO 보조금협정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만을 통보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일본은 특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를 고려하여 보조금 통보시 "관련 보조금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성이 없는 경우의 보조금도 통보내용에 포함한다"[40]는 취지를 밝히며 통보하고 있다.

40) WTO 자료 G/SCM/N/71/JPN

<표 4-8> 2002년 통보된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현황

분 류	보조금 명칭
산 업	안전분석코드기술 개선을 위한 계약, 지방의 천연가스 증진을 위한 연구, 석탄수입증진을 위한 연구계약, 대기오염방지기금에 대한 대출보조금, 광기전성 발전 연구, 핵발전소의 기술개발 보조금, 지방도시의 천연가스 소비전환촉진조치 보조금, 지방도시의 천연가스소비 전환시설 공급지원, 석탄화력발전소 기술개발 보조금, 통합석탄기화혼합사이클 발전소의 기술개발 보조금, 쓰레기 발전소 개발비용 보조금, 고효율 쓰레기 발전기술 개발 보조금, 신쓰레기재활용연료 사용 발전기술 개발 보조금, 쓰레기 발전 도입기술 연구보조금, 방사선 폐기물 기준에 대한 실험 및 연구 보조금, 지역냉・난방의 미사용 에너지 관련 보조금, 소・중규모 수력발전 보조금, 소・중규모 수력발전 이자보조금, 지열에너지 프로그램, 수력발전 도입 및 개발증진조사계약, 상업용 핵발전설비 폐쇄 인증테스트 계약, 경수로기술 확인테스트 개선 계약, MOAX-ABWR 발전시스템 시술개발 인증, 소비된 연료저장 인증테스트 계약, 신발전기술 전시테스트 계약, 석유정제 합리화 보조금, 가스석유 탈황화 증진 보조금, 석유산업판매점수제 증진 보조금, 산유국 정제기술개선을 위한 보조금, 석유유출반응 프로그램 보조금, 신연료 R&D 지원, 석유저장설비건축 대출보조금, 저장용 원유・LPG 구매대출 보조금, 석유제품 소매업 구조조정보조금, 석유제품 품질제고 보조금, 고효율에너지 사용설비 민간촉진 보조금, 천연가스추출 보조금, 광물추출 기술개발 보조금, 광업 에너지절약 시스템개발, 석탄산업 구조조정지원, 해외석탄개발 가능성조사 보조금, 석탄생산증진 보조금, 탄광기업증진 보조금, 신산업창출 IT개발 보조금, 정보보완평가 기술인 훈련 보조금, RWC 프로그램,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계약, 초전자기술개발 프로그램, 지역기술 R&D 증진 보조금, 상아산업 보조금, 가죽산업 보조금, 차세대주택기술 R&D 보조금, 태양열주택 설비보조금, 태양열 설비이용촉진 보조금, 차세대항공기 개발 조사비용 보조금, 민간항공기 개발지원, 차세대항공기 R&D 위원회, 석유자원참사기술 R&D 위원회, 중소기업협회 보조금, 전통예술품 제작촉진 보조금 (총 60건)

<표 4-8> 계속

분 류	보조금 명칭
금 융	중소기업 경영강화 세금조치, 수입증가시 세액공제, 국내·해외 광물공탁지출 특별공제, 하이테크 제조산업의 특별기계사용 감가상각, 산업회생특별법 관련 기계류 특별감가상각, 경영혁신을 위한 기계류 특별감가상각, 식품생산과정 조정방법 개선법률 관련 특정설비 감가상각, 어선 추가감가상각, 경영기지강화를 위한 기계류 추가감가상각, 광업의 천공기 특별감가상각, 특정협회에 대한 지불 특별감가상각, 금속채광 광물오염방지 예치금, 특별재해방지 예치금, 특별수선 예치금, 신규광물기지 조사 예치금, 소주제조업을 위한 금융조치, 소금산업의 경영합리화 촉진 조치(총 18건)
농업·임업·수산업	쌀·밀·보리 관련조치, 콩·평지씨 관련조치, 설탕 관련조치, 우유 및 낙농품 관련조치, 육류 관련조치, 계란 관련조치, 채소류 관련조치, 과일류 관련조치, 누에고치 관련조치, 농민연금기금 보조금, 농업현대화기금 이자보조금, 농업·임업·수산업 금융협회 보조금, 수산업 현대화기금 이자보조금, 수산업 신용기금 보조금, 지속가능 수산업 증진 관련 지방정부 프로젝트 기금, 지속가능 수산업 증진 비정부기구 활동 기금, 목재산업 발전기금(총 17건)
수 송	미래선박 R&D 촉진 조치(총 1건)
지방정부	전통예술품 제작촉진 보조금, 섬유산업 촉진조치 보조금, 섬유산업시설 개선 특별기금 대출, 섬유산업촉진 보조금(1), 섬유산업촉진보조금(2), 섬유산업구조개선 지원대출, 수송산업촉진 보조금, 금속예치조사 보조금, 광산안전유지 보조금, 목재산업 안정화 지원대출, 기초산업촉진 및 지원 보조금, 안경산업촉진 보조금, 안경산업 인프라개선 대출, 금속가공기계산업 제조촉진 보조금, 가죽산업 디자인 및 기술훈련 보조금, 가죽산업개발 조치비용 보조금, 벽코산업 안전경영촉진 보조금(총 19건)

자료: WTO 서류(G/SCM/N/71/JPN, G/SCM/71/JPN/Suppl.1)

일본은 2002년 96건의 중앙정부 보조금과 19건의 지방정부 보조금(총 115건)을 통보(G/SCM/N/71/JPN, G/SCM/N/71/JPN/Suppl.1)하였는데, 중앙정부 보조금의 경우 산업, 금융, 농업·임업·수산업, 수송 등 4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표 4-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중앙정부의 산업보조금은 에너지 개발, R&D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금융보조금의 경우 각종 세액공제, 감가상가 우대, 각종 예치금 등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보조금은 대부분 특정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특정성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WTO에 통보된 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00 회계연도의 산업보조금 총액은 792억 3,880만 엔이며, 18건의 금융보조금의 경우 보조금별 적용세율, 감가상각률만이 통보되고 전체 규모는 통보되지 않았다. 농업·임업·수산업의 경우 해당 보조금별로 그 규모를 통보하였는데, 농업보조금은 4,116억 6,900만 엔, 수산업 605억 7,900만 엔, 임업 35.0억 엔에 이르러[41] 농업·임업·수산업 등 1차 산업의 총 보조금 규모(농업·임업·수산업 금융협회 보조금 포함)가 5,070억 7,400만 엔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보조금을 제외한 일본의 보조금 총규모(지방정부 포함)는 5,882.8억 엔에 이르러 2000 회계연도 경상GDP(515.4조 엔) 대비 0.11%를 기록하여 한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표 4-9> WTO에 통보된 일본 중앙정부의 보조금 규모(2000회계연도)

분	류	규 모(억 엔)
산업 보조금		792.4
금융 보조금		NA
1차 산업	농업 보조금	4,116.7
	임업 보조금	35.0
	수산업 보조금	605.8
	농업·임업·수산업 금융협회 보조금	313.3
수송부문		2.7
지방정부		17.0
합 계(수송부문 포함)		5,882.8

주: 금융보조금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적용세율, 감가상각률을 통보하였다.
자료: WTO 서류(G/SCM/N/71/JPN)

41) 농업·임업·수산업 금융협회 보조금 313억 2,600만 엔은 제외하여 계산하였다.

4) WTO에 통보된 중국의 보조금 현황

지난 2001년 12월 143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한 중국은 가입 당시 체결한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 WT/L/432)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WTO 역시 이러한 중국의 의무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과도기 검토 메커니즘(Transitional Review Mechanism: TRM)'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WTO 가입과정에서 중국은 보조금협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을 철폐하는 데 합의하였다.[42] 이 과정에서 중국은 보조금협정 제25조(통보) 규정에 맞춰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통보하였는데,[43] 총 23건의 보조금[44]을 나열하였으며, 이 중 3건에 대한 철폐계획을 제시하였다.[45] <표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이 통보한 보조금 중 다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일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협정 제3조에서 금지된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출보조금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자 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원', '수출관련 대출·외환 거래 우대', '자동차생산 국산화율에 기초한 관세우대' 등 3건에 대해서만 철폐계획을 제시하였다.

'적자 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원'이 특정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면, '적자 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지원' 역시 특정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조금협정 1.1(a)(1)항에 규정된 '정부 또는 공공기관(government or any public body)'의 범위에 지방정부 역시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적자 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지원'에 대한 철폐계획을 밝혀야 한다.

---

42) 가입의정서(WT/L/432) 10.3항

43) 가입의정서(WT/L/432) Annex 5A

44) 가입의정서(WT/L/432) Annex 5A에는 총 24건이 나열되어 있으나, 그 중 항목 23(XXIII)은 항목 17~22에 명시된 소득세 환급의 통계를 통보하고 있어, 보조금 건수에서 제외하였다.

45) 가입의정서(WT/L/432) Annex 5B

<표 4-10> 2001년 통보된 중국의 보조금 현황

보조금 명칭	소관부처	목 적
적자 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원	재정경제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지원
적자 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지원	재정경제부, 지방정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지원
수출관련 대출·외환 거래 우대	국가계획 위원회	자동차수출 증진
자동차생산 국산화율에 기초한 관세우대		자동차산업의 국내공정 증진
경제특구(상하이 푸동지역 제외) 우대정책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기관	지역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기술개발지역 우대정책		특정지역 개방촉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상하이 푸동지역 경제특구 우대정책		특정지역 개방촉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기업 우대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협력 확대
국가정책은행의 대출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개발은행	투자 구조조정
빈곤완화 금융지원	국가계획위원회, 재정경제부, 농업개발은행	빈곤완화
기술혁신·연구개발 기금	재정경제부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농업용수 및 홍수방지를 위한 인프라 건설기금	재정경제부, 지방재정국	농업관개체계 개선 및 홍수방지 시설설비
수출생산품에 대한 세금 및 관세환급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및 관세부담 완화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및 면제		외국인투자촉진, 국내기업의 기술혁신유도, 무역증진
특별산업부문에 대한 투입재 저가공급	-	물가안정을 위한 산업투입재에 대한 가격통제

<표 4-10> 계속

보조금 명칭	소관부처	목 적
임업부문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기관	임업자원의 완전이용
하이테크기업 소득세 우대		하이테크산업개발
쓰레기 이용기업 소득세 우대		자원재활용 촉진
빈곤지역 기업 소득세 우대		빈곤완화
기술이전기업 소득세 우대		기술이전 촉진
재난기업 소득세 우대		재난손실 완화
실업자 고용기회 제공기업 소득세 우대		고용기회 확대
정부지정지역에 수입된 기술 및 투자자의 설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국가위원회	기술수입 및 설비에 대한 비용절감, 외국인 직접투자 및 국내투자유치

자료: 가입의정서(WT/L/432) Annex 5A

또한 '경제특구 우대정책'의 목적이 지역개발에 있다고 중국정부는 밝히고 있으나, 보조금협정에서 허용되는 지역개발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역의 낙후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조금협정 8.2(b)(iii)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1인당 소득[46]이 전체 평균의 85% 이하이거나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전체 평균의 110% 이상인 경우에만 지역의 낙후성이 충족된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상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1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532위안[47]인데, <표 4-11>에 나타난 것처럼 '경제특구 우대정책'에 제시된 지역[48] 중 安徽省(우후시), 廣西

46) 1인당 소득 또는 가구당 소득 또는 1인당 국내총생산 중 하나만 충족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

47) EIU에 따르면 중국의 2001년 1인당 GDP는 US$ 910인데, 환율이 달러당 8.277위안이어서 1인당 GDP는 7,532.07위안이다.

48) 다롄, 친황다오, 톈진, 옌타이, 칭다오, 롄윈강, 난퉁, 닝보, 푸저우, 광저우, 상하이, 베이하이, 친양, 원저우, 하얼빈, 창춘, 항저우, 우한, 충칭, 우후, 사오산, 하이저우, 난사, 곤륜산, 융교, 웨이하이, 잉커우, 둥산 등 29개 도시이다.

省(베이하이시), 重慶을 제외한 지역의 GDP가 이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개발정책이 중국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위의 정책보조금 역시 이들 지역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조금협정에서 마련된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보조금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보조금에 대한 우려는 WTO 가입협상 실무회의에서도 제기되었는데, 중국정부는 WTO 보조금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철폐하겠다고 밝혔다.[49]

<표 4-11> 중국의 지역별 1인당 GDP(2001년도)

(단위: 위안)

지역	1인당 GDP	지역	1인당 GDP	지역	1인당 GDP
베이징	20,926	톈진	18,775	허베이	8,363
산시	5,477	네이멍구	6,635	랴오닝	12,041
지린	7,582	헤이룽장	9,837	상하이	30,189
장쑤	13,030	저장	14,702	안후이	5,576
푸젠	12,475	장시	5,386	산둥	10,487
하남	6,184	후베이	7,835	후난	6,292
광둥	12,498	광시	5,082	하이난	7,184
충칭	5,738	쓰촨	5,373	구우저우	3,082
원난	4,894	티벳	5,346	샨시	5,209
간쑤	4,275	칭하이	6,271	닝샤	5,418
신장	8,027	중국전체: 7,532			

주: '경제특구 우대정책'은 대부분 도시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톈진, 허베이(친황다오), 랴오닝(다롄, 친양, 잉커우), 지린(창춘), 헤이룽장(하얼빈), 상하이, 장쑤(연운항, 난퉁, 곤륜산), 저장(닝보, 원저우, 항저우, 사오산), 안후이(우후), 푸젠(푸저우, 융교), 산둥(엔타이, 칭다오, 웨이하이, 둥산), 후베이(우한), 광둥(광저우, 하이저우, 난사), 광시(베이하이), 충칭 등이다.

자료: EIU(2003)

49) Paragraph 174,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O에 통보된 중국 보조금의 규모는 통보내용이 보조금별, 연도별 일관성을 띠지 않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우나, 1998년의 대체적인 규모는 3,792.8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규모는 중국 GDP[50]대비 4.8%에 이르는 수준인데, 한국의 0.33%, 일본의 0.1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어서 보조금 통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관련 통계의 신빙성 역시 낮은 것으로 평가돼, 전체적으로 중국의 보조금 통보내용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실무진의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부 WTO 회원국은 중국의 보조금 통보가 불완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51] 중국은 WTO 가입과정에서 모든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보조금 통보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52] WTO 가입 후 첫 통보시점인 2002년 6월말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정부는 보조금 통보의무 이행과정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모든 종류의 보조금 통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53]

USTR(2003)에 따르면, 미국 역시 중국의 보조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계관세법과 WTO 보조금 규범에 대한 기술지원 및 훈련과정을 적극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과거 계획경제체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문준조 2001, p. 65). 특히 WTO 보조금협정의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보조금으로 판정될 정책이 아직

50) 1998년 중국의 GDP는 7조 9,553억 위안이다.

51) Paragraph 166,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52) Paragraph 167, *Ibid.*

53) WTO 문건, *Statement by Head of the Chinese Delegation on Transitional Review of China to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G/SCM/W/522.

<표 4-12> 중국의 보조금 규모 추정(1998년 기준)

보조금	규모(억 위안)	비 고
적자 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원	74.7	-
적자 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지원	258.8	-
국가정책은행의 대출(국가개발은행)	666.7(추정)	통보된 금액의 연평균, 1994~96년 총 규모: 2,000.0, 이 중 9.6%가 제조업
국가정책은행의 대출(수출신용)	42.0(추정)	통보된 금액의 연평균, 1991~95년 총 규모:210.0, 수출입은행 주도
국가정책은행의 대출(농업개발)	1,666.7(추정)	통보된 금액의 연평균, 1994~96년 총 규모: 5,000.0
빈곤완화 금융지원(중앙정부지원)	178.0	1999년 243.0, 2000년 240.0
빈곤완화 금융지원(대출)	30.0(추정)	1991년 이후 총규모: 300.0
기술혁신・연구개발 기 금	641.0	1996년 526.0, 1997년 643.0
농업용수 및 홍수방지를 위한 인프라건설기금	208.9	1999년 213.6
소득세 환급	26.0	하이테크기업 소득세 우대, 쓰레기 이용기업 소득세 우대, 빈곤지역 기업 소득세 우대, 기술이전기업 소득세 우대, 재난기업 소득세 우대, 실업자 고용기회 제공기업 소득세 우대
합 계	3,792.8	-

주: 중국정부는 수출관련 대출・외환 거래우대(자동차)의 경우 우선지위(priority)의 영위로부터 혜택을 받은 기업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자동차생산 국산화율에 기초한 관세우대, 수출생산품에 대한 세금 및 관세환급, 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및 면제, 특별산업부문에 대한 투입재 저가공급, 임업부문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부지정지역에 수입된 기술 및 투자자의 설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고 중국정부는 통보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 우대정책, 경제기술개발지역 우대정책, 상하이 푸동지역 경제특구 우대정책, 외국인 투자기업 우대정책 등의 경우 적용세율만 통보하였다.

자료: WTO 서류,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WT/L/432).

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정 국유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국유은행의 대출행위,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변형된 형태의 생산보조금 지급 등은 향후 중국과 관련된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 일부 WTO 회원국을 중심으로 중국이 보조금 통보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WTO 보조금협정에서 금지된 대출형태의 보조금과 생산보조금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5)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 현황 비교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 현황을 비교해 보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WTO에 통보된 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단순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즉 WTO 회원국의 보조금 통보에 대한 진실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므로, WTO에 통보된 보조금 현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자료에 한계가 있어 WTO에 통보된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 현황을 비교한다.

<표 4-13>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 현황

	한국	일본	중국
WTO에 통보된 보조금 건수	19건	115건	23건
GDP 대비 보조금 규모	0.33%	0.11%	4.8%
농업보조금 비중	57.9%	70.0%	5.5%
R&D 보조금 비중	13.1%	3.1%	16.9%

먼저 WTO에 통보된 보조금 건수에서 일본이 115건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23건, 한국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건수의 단순비교로 인해 일본이 보조금 운용에 적극적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제규모에 비해 중국이 보조금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GDP 대비 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일본 0.11%, 한국 0.33%인 데 반해 중국은 4.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 보조금 중 농업보조금의 비중이 일본(70.0%), 한국(57.9%)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의 농업보조금은 미미한 것(5.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농업에 대한 비교우위와 농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중국의 농업은 광활한 토지 및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한국 및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돼,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유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농민단체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보조금 편성과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R&D 보조금의 경우 한국(13.1%), 중국(16.9%)이 유사한 비중을 나타낸 반면, 일본은 3.1%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 19건의 통보된 보조금 중 4건(21.1%)이 R&D 보조금인 반면, 중국은 통보된 총 23건의 보조금 중 단 1건만이 R&D 보조금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일본은 60건의 산업보조금(표 4-8 참고) 중 17건이 R&D 보조금이며 대부분이 에너지 개발 및 수송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적인 금액 측면에서 한국은 농업, 석탄산업, 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정책우위를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은 농업·임업·수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농업·임업·수산업 금융협회 보조금 포함) 비중이 86.2%에 달해, 보조금이 1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주로 세계상의 우대 정책을 위주로 WTO에 통보하였는데, 보조금 통보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미국의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공동으로 '보조금 시행 연례보고서(Subsidies Enforcement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데, 2003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보조금 통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USTR 2003, pp. 18～19).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중국은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인 동시에 경제개발단계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체제전환국과 개도국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체제전환국으로서 공기업에 대한 지원문제와 관련된 보조금 정의 적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1) 체제전환국 관련 규정의 적용

WTO 보조금협정 제29조는 이와 같은 체제전환국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체제전환국은 "보조금협정 제3조(금지보조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조금계획을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까지 보조금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보조금협정 제29.3조). 또한 체제전환국은 "제3조의 범위에 해당하고 제29.3조에 따라 통보된 보조금계획을 WTO 발효일로부터 7년의 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제3조에 합치시켜야" 한다(보조금협정 제29.2조).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WTO 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추가적인 보조금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WTO 발효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라는 규정을 중국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WTO 가입협상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다만 중국정부는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과 같은 금지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54]

미국은 1986년 '조지타운 철강회사 對 미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 NMEs)에 대해 상계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체제전환국의 경우 상계가능한 보조금의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계관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그 이유는 보조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인식이 '자원의 부적절한 배분, 시장원리의 왜곡 및 파괴를 야기하는 행위'인데 반

54) Paragraph 168,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해, 비시장경제국에서는 '시장원리'가 존재하지 않아 그것의 왜곡 및 파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55]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이와 같은 방침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미 법원의 판결 해석에 대해 Magnus(2000)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미국의 상계관세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으므로 중국 수입품과 관련된 상계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56]

2) 개도국 특별우대(S&D) 조항의 적용

WTO 보조금협정 제27조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이 규정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실무회의에서 무역왜곡을 야기하는 보조금의 존재 가능성과 그에 따른 중국시장으로의 진입과정에서의 효과, 중국 수출품의 기타 회원국 시장에서의 효과 등이 거론되어, 중국이 개도국 특별우대 조항으로부터 혜택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 감축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전제 아래, 중국은 보조금협정의 제27.10조(개도국 원산지의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조사 종료),[57] 제27.11조(제27.10조에 대한 추가 규정),[58] 제27.12조(제

55) Magnus(2000) 참고

56)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 러시아 수입품에 대한 상계조사결정 여부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Magnus(2000)는 언급하였다.

57) "개발도상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모든 상계관세조사는 관계당국이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즉시 종료된다. (a) 당해 상품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이 단위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b)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물량이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 총수입량의 4% 미만인 경우. 단, 개별적으로 총수입량 중 점유율이 4% 미만인 개발도상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동 수입회원국의 동종상품 총수입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8) "제2항 (b)호에 속하는 개발도상회원국으로서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수출보조금을 폐지한 회원국과 부속서 7에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제10항 (a)호의 숫자는 2%가 아닌 3%가 된다. 이 규정은 수출보조금의 폐지가 위원회에 통보된 날로부터, 그리고 통보를 행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 의해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동안 적용된다. 이 규정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 후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7.10～제27.11조에 대한 추가 규정),[59] 제27.15조(보조금위원회의 검토규정)[60] 등의 권리를 보유하는 반면, 이 협정 제27.8조(심각한 손상),[61] 제27.9조(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한 구제),[62] 제27.13조(민영화)[63]에서의 권리를 호소하지 않기로 하였다.[64]

3) 공기업의 행위

중국의 WTO 가입 협상과정의 실무회의에서 중국 공기업(은행 포함)의 재정지원(financial contributions)은 WTO 보조금협정 제1.1(a)조에 해당되는 정부행위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59)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모든 최소 허용수준의 결정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60) "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인 개발도상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상계조치가 당해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적용가능한 제10항과 제11항의 규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동 상계조치를 검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1) "개발도상회원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이 협정에 정의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심각한 손상은 제9항의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제6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합치하는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62)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보조금 외에 개발도상회원국이 지급 또는 유지하는 상계가능보조금과 관련, 이러한 보조금의 결과로서 1994년도 GATT에 의한 관세양허나 다른 의무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저해하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수입회원국의 시장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제7조에 따른 조치가 승인되거나 취해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63) "이러한 보조금이 개발도상회원국의 민영화 계획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동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 직접적인 채무감면, 정부의 재정수입의 포기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및 다른 채무의 이전에 대하여 제3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계획 및 관련 보조금은 제한된 기간 내에 지급되고 위원회에 통보되며, 이러한 계획이 관련기업의 궁긍적인 민영화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4) Paragraph 171,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공기업의 재정지원이 보조금협정 제1.1(b)조에 규정된 혜택(benefit)을 반드시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목적은 상업적 기준에 의한 운영이며 공기업 자체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공기업 자신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다. 상계조치제도

1) 개요

본 절에서는 한・중・일 3국의 상계관세제도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WTO가입과정에서 제출된 가입의정서와 2003년 3월 단행된 국무원 조직변경 등이 고려되었다.

2) 한국의 상계조치제도

한국의 상계조치 관련 제도는 2001년 2월 제정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6417호)」, 동년 5월에 제정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7222호)」, 「관세법(2000년 12월 개정, 법률 제6305호)」, 「관세법 시행령(2001년 3월 개정, 대통령령 제17157호)」, 「관세법 시행규칙(2001년 3월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86호)」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상계조사와 관련된 업무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소관인데,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은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 ①).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무역위원회는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 …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 ①).

<표 4-14> 상계조치제도 관련 규정: 「관세법」을 중심으로

항 목	내 용	비 고	조항
상계관세 부과대상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포함), 국내산업발전의 지연	보조금 정의(시행령 제72조, 시행규칙 제21조)	제57조
실질적 피해 조사	구체적 내용 시행령 위임	조사개시절차(시행령 제74~79조, 시행규칙 제23~제29조)	제58조
잠정조치	잠정조치 발동 조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추정 증거의 존재, 적용기간(시행령 제80조)	제59조
약속의 제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제거 약속	관련 절차(시행령 제81조, 시행규칙 제30조)	제60조
상계관세의 부과시기	상계관세 및 잠정조치의 부과시기	소급부과(시행령 제82조), 정산(시행령 제83조)	제61조
재심사	재심사 절차	재심사 관련 구체규정 및 이해관계인 통지(시행령 제84~제85조, 시행규칙 제31조)	제62조

자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2002)

또한 "무역위원회는 …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 ②). 이러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 ③). 본 조사는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무역위원회는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 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본조사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 ⑦).

그러나 이와 같이 상계조사 및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상계조사를 개시한 적이 없다. 이는 상계조사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상계조사는 덤핑조사와는 달리 상대국의 정부행위(보조금 지급)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덤핑조사의 경우 가격설정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동종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의 정보수집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계조사의 경우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역상대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환경이 충족되는 국가는 주로 선진국일 수밖에 없다.

<표 4-15>의 WTO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상계조사개시는 주로 미국, EC와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WTO 출범 이후 2002년까

<표 4-15> WTO에 통보된 제소국가별 상계조사개시 현황(1995~2002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미국	3	1	6	12	11	7	18	4	62
EC	0	1	4	8	19	0	6	3	41
캐나다	3	0	0	0	3	4	1	0	11
남아공	0	0	1	1	2	6	1	0	11
뉴질랜드	1	4	1	0	0	0	0	0	6
칠레	0	0	0	0	4	0	0	0	4
이집트	0	0	0	4	0	0	0	0	4
아르헨티나	1	1	1	0	0	0	0	0	3
호주	0	0	1	0	1	0	0	1	3
이스라엘	2	0	0	0	0	0	0	0	2
페루	0	0	1	0	0	1	0	0	2
베네수엘라	0	0	0	0	1	0	0	1	2
브라질	0	0	0	0	0	0	1	0	1
멕시코	0	0	1	0	0	0	0	0	1
합계	10	7	16	25	41	18	27	9	153

자료: WTO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지 총 153건의 상계조사개시가 WTO로 통보되었는데, 이 중 미국이 62건으로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EC는 41건으로 26.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캐나다와 남아공이 각각 11건(7.2%), 뉴질랜드 6건(3.9%) 등이다.

3) 일본의 상계조치제도

일본의 상계관세법의 法源은「關稅定率法(Customs Tariff Law)」제8조로서 상계관세의 정의, 상계관세부과의 요건,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하위법으로서 '상계관세 및 부당염매(덤핑) 관세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상계관세절차의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 또는 규칙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규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일본정부가 구체적으로 상계관세절차를 수행할 경우 이에 근거해서 행한다는 의미에 있어 법규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WTO에 통보된 상계조사개시가 없으며(표 4-7 참고), 1982년 파키스탄 목화 방사에 대한 상계조사가 유일한 실정이다.[65]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기 법률 및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상계관세와 관련된 일본의 제도를 살펴본다.

가) 제소요건

제소자가 어떤 수입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부과를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일정한 적격성을 충족할 것과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정율법 제8조 4항에서는 '아국의 산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65) 1982년 12월 27일 일본방적협회는 파키스탄 목화 방사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상계조사를 신청하였으나, 1984년 2월 28일 보조금률이 낮아 상계관세부과를 결정하지 않았다.

‘아국의 산업’은「상계관세에 관한 政令」제1조에 “해당수입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여 총생산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비율[66] 이상인 일본의 생산자”로 정의되어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은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일본 법령에서는 ‘아국의 산업’)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을 갖는 주체는 (1) ‘아국의 산업’인 생산자(즉 일본의 총생산고에서 차지하는 생산고의 비율이 50% 이상인 일본의 생산지), (2) (1)의 생산자로 구성된 업계단체, (3) (1)의 생산자로 고용되어 있는 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단지 이들에 의한 신청은 일본의 산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제소・조사・관세부과절차

제소는 일본의 산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대장대신(재무부장관, 구체적으로 대장성 관세국 기획과)에게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며, 제소가 접수되면 대장대신, 해당산업을 소관하는 장관(이하, 산업소관대신), 통산대신(상공부장관)의 3대신이 협의한 후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3대신이 협의하여 조사를 발의할 수도 있다. 상기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사개시의 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을 시한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사는 그 개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한 이유에 의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피제소자가 조사에 협력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의한 조사결과가 인정되고 있다.

잠정조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충분한 증거에 의해 일본의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동시에 일본의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관세정율법에 규정되어 있다.

66) 상기 가이드라인 1(3)①에 따르면 50%로 정의되어 있다.

조사종료 전 확정조치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본정부는 이를 관세율심의회에 자문한 뒤 결정한다. 일본정부는 확정조치를 강구한다는 취지의 정령을 공포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조사에 의해 판명된 사실, 이에 기초해 얻어진 결론 등을 통지한다.

약속 및 확정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때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대장대신에게 제출하여 일본정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약속 및 확정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피해・조정

관세정률법 제8조 1항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물품의 수입이 일본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일본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피해의 판단에 있어서 WTO 보조금협정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를 줄 우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보조금협정 제15.7조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물품의 수입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보조금협정 제15.5조의 규정을 따른다.

4) 중국의 상계조치제도

중국은 WTO 가입과정에서 상계조치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이 WTO규정과 합치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67]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2003년부터 발효시켰고 2003년 2월 WTO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통보된 법령은 (1) 상계조사개시에 대한 규정, (2) 상계조사 질의서에 대한 규정, (3) 상계조사 현장검증에 대한 규

67) Paragraph 148, *Ibid.*

정, (4) 상계관세조사 공청회 실시에 대한 규정, (5) 상계조치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한 규정, (6)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에 대한 규정 등 6가지이다.[68]

행정조직 중 대외경제무역부(MOFTEC)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가 상계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였으나, 2003년 3월 단행된 국무원 조직변경 이후 상무부(MOFCOM, 구 대외경제무역부) 위주로 재편되었다. 상무부 공정무역국(Bureau of Fair Trade for Imports and Exports)은 상계조사신청에 근거하여 외국의 보조금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보조금이 부과된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산업피해조사국(Department of Industry Injury Investigation)인데, 이 기관은 원래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소속이었으나 2003년 3월 상무부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전반적으로 상계조사와 관련된 법규가 완비되어 해당 법규의 WTO 합치성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평가되나, 아직 상계조사의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운용상의 적법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 4-16> 중국의 상계조치제도 관련 WTO 가입 합의사항 및 이행사항

WTO 가입 합의사항	이행사항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 중국을 15년간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하는 특례 인정	· 반덤핑 조례와 반보조금 조례를 분리 실시(2002. 1)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국과 공정무역국 설립

자료: 한국무역협회(2002)

68) 이 중 (1)~(4)는 G/SCM/N/1/CHN/1/Suppl.1, (5)~(6)은 G/SCM/N/1/CHN/1/Suppl.2의 서류를 통해 통보되었다.

그러나 상계관세의 부과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인 피해우려와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 제15.7조는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아예 생략되어 있어 향후 중국이 상계조사에 임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근거하여 상계조치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3년 초에 중국정부가 취한 철강분야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역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근거하고 있고, 긴급수입제한에 대한 WTO협정의 규정이 보조금협정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규정의 이러한 취약점은 상계조치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 한 · 중 · 일 3국의 상계조치제도 비교

가)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기본적으로 한·중·일 3국의 상계조치제도는 WTO 보조금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한·중·일 3국간 제도 및 규정상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4-다-4)'절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의 판정 근거에서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고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WTO 보조금협정(제15.7조)의 규정이 중국에는 없다.

이에 반해 한국의 관세법 시행령 제77조②는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상계조사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Almstedt and Norton(2003)은 중국의 2003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와 같은 '비구체적인(unsubstantiated)' 피해의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계조사 역시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나) 기타

그 외 미세한 부문에서 한・중・일 3국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일본과 중국에서 상계관세의 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WTO 보조금협정과 같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데 한국에서는 여기에 해당 산업의 주무부 장관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모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원인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우려 등이며, 한국과 중국은 국내산업발전의 지연 및 저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을 추가하여 무역구제조치로서의 상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필요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표 4-17> 한・중・일 3국의 상계조치제도 비교

	한 국	일 본	중 국
소관 기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대장성 관세국 기획과	상무부 공정무역국, 산업피해조사국
부과 신청자	국내산업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 해당 산업의 주무부 장관	아국의 산업에 이해 관계를 갖는 자	국내산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
상계관세 부과원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포함), 국내산업발전의 지연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포함), 국내산업의 보호필요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포함), 국내산업발전에 저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실질적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 근거는 사실에 근거	실질적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 근거는 사실에 근거	관련 규정 없음.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1) 보조금 규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WTO 보조금협정보다도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상계조사개시 및 상계조치 부과 건수의 통계를 살펴보면, WTO 보조금협정보다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규범 설정은 한국에 이롭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에 통보된 상계조사개시 153건 중 일본의 피제소 건수는 하나도 없는 반면, 한국의 피제소 건수가 13건(8.5%, 미국 6건, EC 6건, 남아공 1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중 상계관세가 부과된 경우는 총 4건(전세계 94건)인데, 모두 미국이 부과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되는 특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계조사를 실시할 경우 특별 취급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수령자의 이익 산정시 중국의 공여조건이 아닌 제3국에 있어서의 공여조건을 감안하여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한국무역협회 2002, pp. 30~31). 따라서 보조금 규율을 WTO 보조금협정보다 강화할 경우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표 4-18> 한국의 연도별 상계조사개시 피제소 및 상계조치 건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상계조사개시	0	0	0	5	4	1	1	2	13
상계조치	0	0	0	0	2	1	0	1	4

자료: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

2) 농업보조금의 허용 불가피성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수출보조금을 금지하면서 WTO 농업협정에서의 보조금 규정보다도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진전된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중이 높아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아직 한국과 일본의 농업 현실상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중・일 FTA 협상과정에서도 농업보조금 문제에 한국의 농민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 한국정부로서도 농업보조금을 규제할 유인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데, '4-가-5)'절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농업보조금이 70.0%, 1차 산업의 보조금이 86.2%에 달해 농업보조금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 보조금 규율과 동일한 수준의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나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다자협상과정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이 합의된다면, 다자규범을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규범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중국의 규정 중 일부 조항은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하지 않는데, 한・중・일 FTA 추진시 이러한 부분이 협상과정에서 거론되고 사전에 시정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의 판정을 내려 상계조치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러한 남용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앞서 지적된 상계조사절차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이외에도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문이 있는데, 중국규정은 WTO 보조금협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보복조치(retaliatory measures)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상계조치규정(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ountervailing Measures) 제55조에 따르면, 어느 국가가 중국의 수출품에 차별적으로 상계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해당 국가를 상대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보복조치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중국의 현행 규정은 WTO 보조금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rule-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국가간 모든 무역행위가 법대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고, 법에 의해 경제체제가 운용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근대적인 요소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미국 및 EU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범준수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각종 시장개방 양허와 무역규범분야 등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문준조 2001, p. 196). 이러한 시각은 불투명한 내규 및 지침의 존재, 자의적인 법령 해석, 낙후된 법조 전문인력 교육 및 공급, 관련 지식과 노하우 수준의 미흡 등에 근거한다.

또한 중국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WTO에 가입한 역사가 짧아 다자체제에 대한 적응 여부 역시 의문이다. 특히 WTO 규범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 국내법규와 WTO 규범과의 조화가 중국의 WTO 가입 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중·일 FTA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WTO 규범과의 부합성을 강조하고, 규범의 명확화 및 개선에 협상력을 집중하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를 이용한 법적 구속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경쟁정책

1. 경쟁정책과 무역

경쟁정책은 독립적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요구·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도모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을 금지시키고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통제대상에 속하는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에는 국제카르텔, 특히 수출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거래제한, 또는 기업결합제한의 차별적 운영을 통한 시장접근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경쟁정책이 공정한 시장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므로 이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통합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논하는 데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분야이다. 국경에서의 무역자유화는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수입품과 국내제품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배제된다면 이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효율성 증대를 희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한 회원국의 미온적 경쟁정책 집행이나 전략적 활용(예를 들면, 자국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는 관대하고 외국기업에게는 엄격하게 경쟁법을 집행한다든지, 법률상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이 실질적으로 무역자유화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무역자유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통의 경쟁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역과 경쟁간의 관계가 항상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주장에 반하여 수입이 시장을 규율하는 경쟁요소의 원천으로 경쟁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Hoekman & Mavroidis 2002; Hoekman & Kee 2003). 이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에 따라 특별히 경쟁정책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수입경쟁은 대체로 경쟁제한 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독점적 수익을 희석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할 동기를 저해하며, 수입이 급증할 경우 담합기업간 상호감시가 어려워지므로 담합이 해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특정한 경우 무역자유화가 약탈적 가격책정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경쟁이 촉진되면 기존사업자의 이윤이나 신규진입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윤이 모두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규진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정도의 위협용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도 하락하게 되어 이러한 투자를 감행할 동기가 증가할 수도 있다(Neven & Seabright 1997). 그러나 약탈적 가격책정이 가능한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며 약탈적 가격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므로 실제로 신규진입자가 이로 인해 퇴출되고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전에 섣불리 경쟁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 경제 분석의 추세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경쟁정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의 논리가 이론적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가 경쟁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은 경쟁의 양태나 종류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Davies and Lyon(1996)은 유럽시장 통합을 연구한 결과 무역자유화 또는 시장 확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면 R&D 집약적 분야에서는 오히려 시장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구조와 무역흐름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한 Mirza (2003)는 EU의 경우 수입이 시장집중도에 약 30～50% 정도를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쟁정책의 방향이나 중

요성의 정도는 무역자유화가 경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쟁정책 측면의 협력이 논의되는 것은 경쟁법규의 내용적 조화보다는 주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경쟁정책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국의 일방적인 경쟁정책의 국제적 집행이 통상 상대국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간 경쟁과 협력이 세계화됨에 따라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간 담합을 한다든가 합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단일국가 내의 경쟁제한 행위가 외국에 심각한 경쟁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GE-Honeywell 합병에 대한 EU와 미국의 분쟁, 라이신, 비타민 등 최근에 적발된 대규모 국제카르텔이 이러한 추세를 대변해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 등 주요 경쟁당국은 자국 내에서는 물론 경쟁법의 역외적용[69] 등을 통한 경쟁정책의 국제집행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경쟁당국의 판결에 근거하여 일부 중진국 및 개도국에서도 자국 경쟁법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라이신 및 비타민 사건에 대해 미국과 협조하여 관련된 기업의 멕시코 지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며 한국에서는 일본기업을 포함하여 흑연전극봉 카르텔에 연루된 외국기업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였고 최근 비타민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집행은 항시 국가간 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 통상마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실제로 기존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경쟁정책 관련 양자협정 또는 자유무

69)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란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토 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자연인, 법인)에 대해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이 역외에까지 미친다는 의미에서 역외적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의 자국 영토 외에서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제3절 참고).

역협정은 전반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EU를 제외하면 경쟁규범의 실체내용의 조화 또는 수렴보다는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 및 조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자유무역협정에서 경쟁규범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무역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경쟁정책을 통한 대응을 마련하는 과제이다. 둘째, 각 회원국 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회원국에서의 경쟁정책 제도 및 집행 강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쟁제한적 행위의 제재를 위한 절차적 협력과 조율을 도모하는 협력규범을 형성하는 과제이다. 이 장에서는 경쟁규범의 실체 내용의 조화는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경쟁법의 집행은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등을 전제로 수행되는 것으로 법제의 통일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는 주권 국가 간에 단기간 조화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경쟁정책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통상마찰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경쟁정책과 다른 무역규범과의 조율 문제가 있다. 특히 반덤핑규정이나 보조금관련 규정 등 경쟁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무역정책을 규율하는 무역규범은 경쟁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반덤핑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경쟁정책의 협력문제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다만 밝혀둘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만큼 원칙적으로는 모든 무역규범은 경쟁의 관점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70]

제2절에서는 세계적인 경쟁정책의 집행을 위한 WTO에서의 다자경쟁

70) 물론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나 이익단체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해질 수 있으므로 경쟁 자체가 항상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 목표는 아닐 것이다.

규범화 논의 및 WTO의 기존 경쟁관련 규정들을 조망하여 본다. 제3절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경쟁정책 조항의 주요형태를 살펴본 후 한·중·일 3국의 경쟁정책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간의 법제차이, 무역관계, 그리고 국내경쟁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쟁정책 분야에서 한·중·일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안들을 도출하여 본다.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속적인 국제규범이 없다. 경쟁정책은 기존의 지역협정에서도 보통 분쟁해결대상이 아니며 양자협력협정은 구속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규범의 형태가 아닌 협력 분야로 되어 있다. 현재 OECD, UNCTAD,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및 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경쟁정책의 국제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무역과 관련된 구속적인 경쟁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주로 WTO에서 진행되었다.[71]

WTO에서는 1997년부터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이하 경쟁작업반)'을 설치하여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협상을 개시하기에는 회원국간 이견이 심하여 먼저 교육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뒤 2000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경쟁정책에 대한

71) UNCTAD는 비구속적인 국제모델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OECD는 카르텔 규제 및 국제협력에 대한 권고안을 제정하였다. ICN은 가장 최근에 형성되었지만 합병절차의 수렴과 관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경쟁정책에 대한 다른 국제포럼에서의 논의 내용은 윤미경(2003)을 참고.

국제규범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논의는 그다지 진전된 것이 없고 칸쿤 각료회의 결렬에 따라 협상이 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현재 협상개시 대상이 되고 있는 규범(안)의 주요 요소는 카르텔의 규제, 비차별성, 투명성 등 WTO 원칙의 적용, 공정한 절차, 협력 방식, 이행의무 확보 방안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배려 등이다. 경쟁정책은 경쟁법 적용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실체규정과 법의 집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안은 유일한 실체규정으로 카르텔의 규제를 담고 있는데 카르텔의 경우 합병 등 다른 경쟁정책 분야에서와는 달리 그 폐해가 명백하며 모든 회원국에 구별 없이 폐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쉽게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포함되었다.

비차별성, 투명성 등 WTO 원칙의 적용, 공정한 절차, 협력 방식 등에 대한 문제들은 대부분 절차적 측면에 대한 것이다. 특히 관할권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국제카르텔이나 수출카르텔의 경우 사건의 조사, 관련 증거의 확보, 그리고 형벌의 집행 등을 위해서는 절차상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간의 통보 또는 조사 요청, 정보의 교환, 상대국 관할권에 대한 예양(禮讓: comity)[72] 등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서는 기업 또는 민간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경쟁당국에 대한 접근, 항소권, 적법절차에 의한 경쟁법 집행의 검증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관련법의 투명성 등 WTO 원칙들도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국제경쟁규범이 의

72) 국제예양(comity of nations)이란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예의(禮儀), 편의(便宜), 호의(好意) 등에 의한 관례를 일컫는다. 이러한 관례에 대한 위반은 도덕적인 비난과 정치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기는 하지만, 국제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 국제예양은 그것이 국제관습화되거나 조약에 규정되어 국제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법집행에 있어 예양이란 자국 내에서의 법집행이 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집행함을 의미한다.

미가 있으려면 이러한 부분의 조율까지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정책적 요소들을 WTO라는 무역규범의 틀에 담아내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카르텔의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효율성 제고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므로 각국은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카르텔, 연구개발 카르텔 등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제기준의 조율 없이는 카르텔을 실체규정으로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개발 단계가 매우 다른 회원국간 이러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원칙을 적용하거나 협력방식을 설정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WTO에서의 비차별은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처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동일한 경쟁정책 관련 사건이란 없다는 점에서 비차별원칙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경쟁정책상의 결정은 차별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 특성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차별을 법적으로 명시한 차별로부터 구별해내기 어렵다. WTO 원칙 적용이 명시적 차별, 또는 국적에 대한 차별로만 국한된다고 하여도 어떤 규정이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지는 사전적으로 알기 어렵다.

투명성 원칙도 관할권간 정보교환, 그리고 비밀정보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투명성의 범위와 대상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서,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에 대한 해석은 회원국의 법제에 따라 각각 다르다. 비밀정보의 보호는 투명성 및 추가 정보의 확보를 위해 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적절한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데 비밀정보 노출 정도에 대한 결정은 일상적인 일과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WTO규범에 일일이 면제규정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적법절차 보장의 경우 경쟁당국에 대한 접근과 관련, 과연 어느 정도의 접근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상의 문제들은 특정 사건에서 고소 또는 제소자의 상대적 법적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들인만큼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각국의 사회적 특성을 떠나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다자경쟁규범에 실무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문제들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자경쟁규범은 원활한 국제협력을 위한 큰 틀을 만들 수 있을 뿐 실체적 규정이나 적법절차에 대한 규정의 조율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민간에 의한 경제행위이며 시장접근과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쟁정책이 WTO 무역규범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에 아직 명쾌한 답변이 제시된 바 없다.

WTO협정이 법률상의 실체규정도 포함하지 않고, 집행 또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구체적 규정을 포함할 수 없다면 규범의 어떠한 부분이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불이행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구속성이 어떻게 부여될 수 있는지 모호해진다. 현재로서는 경성카르텔 규제 및 WTO 원칙 등 핵심원칙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구속적 의무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DSU)를 통하여 이행을 확보하고, 경쟁이슈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상호심의(peer review)를 도입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이 제안에 의하면 상호심의는 집행수단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법과 규제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경쟁법 이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WTO 협정이 민간행위가 아닌 정보조치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분쟁해결절차는 개별사건이 아닌 관련법 또는 규정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73]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상호심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호심의는 회원국들간 의견차를 좁히고 정보와 지식의 공유, 기술지원 수행, 그리고 투명성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이다.[74] 그러나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의

73) EU 제안서 <WT/WGTCP/W/229>

74) 한국과 미국 등이 상호심의를 의무이행 확보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국제안서 <WT/WGTCP/W/233>

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상호심의 또한 보이지 않는 압력을 통하여 다자경쟁규범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개도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75]

나. 경쟁관련 WTO 규정

경쟁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국제협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의 WTO협정에 경쟁관련 조항들이 산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민간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다(표 5-1 참고). 대표적으로, 비위반제소(GATT XXIII:1(b)) 및 비차별원칙(GATT Ⅲ:4) 등의 규정은 수입품과 국내제품간의 공정한 경쟁을 요구한다. 또한 세이프가드 협정 제11:3조는 수량제한을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이나 수출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서, 통신협정 등 서비스 부문,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그리고 기술장벽 등의 분야에서는 해당 부문에 특화된 경쟁관련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960년의 결정(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s: BISD 9S/28)은 경쟁 제한적 관행이 문제가 될 경우 회원국간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국제협력의 원칙을 담고 있다(표 5-1 참고). 코닥-후지필름 사건에서 미국은 이 결정에 의거하여 일본에 경쟁정책적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Hoekman(1996)은 국제적인 경쟁정책 문제 또는 시장접근과 관련이 있는 경쟁정책 문제라면 별도의 다자경쟁규범이 없이 기존의 WTO협정을 통하여도 충분히 회원국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WTO협정에 친경쟁적 규정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들과 같이 원칙적으로 경쟁정책과 상

75)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호주 제안서 <WT/WGTCP/W/232>를 참고. 일본 제안서 <WT/WGTCP/W/236>. 개도국 제안서 등을 참고.

치하는 규정들도 있다. 따라서 WTO에서 다자경쟁규범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규정들과의 충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WTO에 존재하는 한 별도의 WTO 경쟁규범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위의 반경쟁적 규정들을 보다 친경쟁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일 수도 있다.

<표 5-1> 현재 WTO협정에 반영된 경쟁관련 조항

- GATT
  - ○ 제Ⅱ조: 수입독점업자의 행위 관련 조항
    - ・체약국이 양허표에 표기된 품목의 독점을 설정하거나 유지 및 인가할 때에는 양허표에 규정한 경우나 교섭당사국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허표에서 규정된 보호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 제Ⅲ조: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관련 조항
    - ・수입상품은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물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함.
  - ○ 제Ⅷ조 및 제Ⅸ조: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시 협의요청 및 협의의무,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조항
    - ・체약국이 수입, 수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수수료 및 과잉금은 제공된 용역에 대한 비용에 그 액수를 한정시켜야 하며, 국내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수출・입에 대한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과세가 되어서는 안됨을 규정함.
    -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자국법률 및 규칙의 운영을 검토하여야 함.
    -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물품의 특수한 지역적 또는 지리적 명칭이 그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것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상호 사용을 방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함. 또한 타체약국이 자국에 통고한 상품의 명칭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 동 체약국의 요청이나 사정설명에 대해 충분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함을 명시함.
  - ○ 제Ⅳ조 (b)호: 스크린쿼터제에 의한 영사시간 제한시 국별 차별금지 조항
    - ・스크린쿼제하에서 국산필름에게 확보된 영사시간을 제외하고 국산필름에 확보된 영사시간중 행정조치에 의해 해제된 부분을 포함한 영사시간은 국별 공급원들에게 사실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할당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임.

- 세이프가드 협정 제XI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물품수입이나 수출판매에 대해 할당제나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어느 것을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수출금지 또는 수출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됨.

<표 5-1> 계속

- 국제협력에 대한 Decision(1960)
  - ○ 회원국간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의(consultation)를 통해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해소할 것을 권장. 협의 요청을 받은 국가는 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경쟁 제한적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한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요청국과 피요청국은 협의를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합의에 실패하였을 경우 사무국에 분쟁 내용 및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사무국은 이러한 정보를 체결국에 통보해야 함.

- GATS(부속서 1B)
  - ○ 제Ⅹ조: 서비스 부문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조항
    -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GATT에서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가 수입국의 특정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 상품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Ⅷ: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 ·독점적이거나 실질적 경쟁을 막는 배타적·소수간의 경쟁적인 상황하에 있는 서비스공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독점력의 남용으로 협정의 기본적인 목표인 공정거래와 약속된 사항들에 위배되는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임.
  - ○ GATS 부속서 기본통신서비스 협정: 상호보조금 금지, 통신망 접속 개방(기업관행에 대해 직접 언급)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
    - ·각 회원국은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공급을 위해 그밖의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공급자에게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고 있음.

- TRIPS(부속서 1C)
  - ○ 제Ⅱ장 8조: 불합리하게 통상을 제한하거나 국제적 기술이전에 악영향을 주는 지재권 남용 금지 조항
    -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이 남용되거나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기술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제40조(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 행위 규제 조항)
    - ·회원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몇가지 라이센스 관행 및 조건이 무역에 장애가 되고 기술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와 협의를 규정하고 있음.
    - ·회원국은 반경쟁적 행위의 유형을 각국의 국내법이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각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라이센스 규약에 있어서 배타적인 권리 행위를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 5-1> 계속

- 정부조달 협정(부속서 4): 경쟁입찰 및 제한입찰 등에 대한 경쟁관련 조항
  - ○ 경쟁협상은 각공급자간의 장단점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공급자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조달기관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입찰이 공급자간 최대한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타협정국 공급자간의 차별수단 혹은 국내공급자의 보호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장벽협정(TBT: 부속서 1A)
  - ○ 기술규정, 표준, 적합판정절차 등과 같은 표준화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여 수출시 외국의 표준규격에 맞도록 자국의 상품을 변형하거나 외국의 수준에 맞는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조정비용이 발생함. 이 경우 표준화의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반면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억제의 효과가 발생함.
  - ○ 적합판정절차는 다른 회원국 영역 내에서 동종상품의 생산자들에게 내국민대우원칙에 입각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적합판정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 표준에 대한 공정관행규약에 나타나 있는 실질 규정들은 다음과 같음(부속서 3).
    - 내국민대우원칙 및 무차별원칙
    - 무역장벽화의 금지
    - 국제표준의 최대한 활용 및 채택
    - 표준의 국제적 조화 및 국제표준화에의 적극참여
    - 상품성능의 측면에서 표준을 설정
    - 표준제정시 사전 공시

자료: 윤미경(2000, pp. 414~417)을 수정·보완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자유무역협정에서 주요 의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자경쟁규범에서와

같이 실체규정이 얼마나 수렴되어야 할지, 그리고 집행절차상 협력의 정도와 형태를 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덤핑 등 다른 무역규범과의 조율, 분쟁해결 절차 도입 여부 및 이를 집행할 중앙통제 기구의 설치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된다. 나아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공기업 등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기업들의 설립 여부 및 경쟁법 적용 여부도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 공동의 경쟁법이 도입된 경우는 아직 소수이다. EU 이외에 역내 공통의 경쟁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COMESA, MERCOSUR, ANDEAN 공동체, 그리고 EFTA 등이다.

회원국 구성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경쟁정책 관련 조항은 대체로 EU 및 영연방 유형과 북미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OECD 2002). 전자의 경우 가능하면 실체규정을 포함하고 반덤핑 규정을 폐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EU·투니지아 협정의 경우에는 경제개발 단계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경제전반에 걸쳐 심화된 통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체규정(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왜곡적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실체규정의 포함이 투니지아의 경쟁정책 집행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캐나다·칠레 협정은 구체적 실체규정의 조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을 폐지한 유일한 사례이다. ANZCERTA의 경우에는 실체규정의 조화 및 반덤핑 폐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EU 또는 영연방 유형과는 반대로 북미형은 실체규정보다는 일반적인 경쟁법 도입 원칙 및 협력내용을 담고 반덤핑 규정은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NAFTA이다. 아직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이 체결한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인 한국·칠레 협정도 북미형을 따르고 있다. 이 협정은 구체적 실체규정의 조화는 없는 한편 반덤핑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교환 등 협력 조항과 공기업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구체적 사항은 표 5-2 참고).

한·중·일 FTA가 경쟁법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과 아직 경쟁법의 도입 단계인 중국과 같이 그 차이가 현저한 국가간의 FTA라는 점에서 NAFTA가 시사하는 점이 많다. 특히 독점적인 국영기업에 대한 조항은 중국에 대해 한국이 요구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NAFTA에서는 국영기업의 독점력 행사에 있어 NAFTA의 투자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투자나 거래에 있어 다른 회원국의 투자자나 거래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이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특정부류의 기업군을 다른 기업과 달리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차별적 대우란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의미한다.

또한 NAFTA에서는 회원국이 독점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다른 회원국에 사전 서면통보할 것과 NAFTA의 이익에 해를 미치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운영조건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점기업이 판매와 구매에 있어 일반적인 영업 관행을 따르고 투자나 거래에 있어 다른 회원국의 투자자나 거래자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간 내부거래, 차별적 거래를 하거나 상호출자, 또는 약탈적 행위를 통해 다른 회원국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체결에 따라 1993년 포괄적이고 근대적인 경쟁법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그 후 7년 이내에 미국과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양자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는 한·중·일 FTA도 각국에, 특히 중국에 경쟁법 도입과 경쟁의 촉진을 위한 주요한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FTA의 경우 분쟁해결 절차가 없고 구체적인 절차적 협력에 대한 부분은 각국간 개별 양자협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 FTA에 경쟁규범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절차적 협력을 위해서는 한·중, 한·일 양자협정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할권의 조정 등 절차적 협력에 관해서는 기존의 다른 FTA를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체규정이 상당히 심층적으로 통합된 ANZCERTA나 EU의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 FTA에서는 관할권의 조정 메커니즘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ANZCERTA의 경우에는 각 관할권을 상호・인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 EU 집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행위원회의 업무가 중으로 인하여 카르텔 규제 등 중요한 사항만을 집행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 탈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타 FTA의 경우에는 보통 분쟁해결절차가 없으며 중앙에서 회원국간 관할권 또는 이해를 조절하는 조정기구가 없다. 그 대신 양자협의체제에 의존하든지, NAFTA의 경우는 NAFTA집행위원회에 무역 및 경쟁에 관한 실무작업반을 설치, 정책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WTO규범과 합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캐나다・코스타리카 협정의 경우 최근 진행된 WTO 논의 사항, 투명성(정부조치, 면제조항), 비차별성,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기술적 지원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한・칠레협정의 경우에도 “양 당사국이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기구에서 양 당사국에 의해 수용되는 경쟁원칙을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제1.3조)”고 명시함으로써 WTO 경쟁규범이 제정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표 5-2> 자유무역협정: 경쟁정책 관련 내용

자유무역협정	실체규정	절차적 규정 및 분쟁해결
EC협정	공동: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정부 보조금 경쟁법 적용, 수량제한 금지(예: 배타적 수입권), 회원국간 차별금지 반덤핑 조항 폐지(반덤핑, 상계조치, 불법 상거래)	역내 공동 경쟁법, 사법절차에 회부 가능 집행기구: EC집행위원회

<표 5-2> 계속

자유무역협정	실체규정	절차적 규정 및 분쟁해결
ANZCERTA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반덤핑 폐지	양자협정을 통한 조사협력, 정보교환, 집행협력 'overlapping' 관할권: 소장, 구제명령 등의 상호인정 절차적 규정은 양자협정을 따름. 국가별 독립 경쟁법 집행기관
EU · 투니지아 FTA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정부보조금 반덤핑 가능	
캐나타 · 칠레 FTA	경쟁법 · 정책도입, 촉진 반덤핑 폐지	양자협의 체제, 분쟁해결 절차 없음. 중앙 조절 기구 없음.
캐나다 · 코스타리카 FTA	경쟁법 · 정책 도입, 촉진	
EEA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정부 보조금, 합병 EC협정과 유사 반덤핑 조항 폐지 (반덤핑, 상계조치, 불법상거래)	EC집행위원회와 EFTA Surveillance Authority가 권한을 분담
EFTA	공동 경쟁법	협의 및 이의제기 절차 중앙 조절 기구: EFTA Surveillance Authority 조사 및 집행 권한 없음.
MERCOSUR	공동 경쟁법, 국제교역에는 반덤핑 규제 가능, 경쟁법 조화 진전과 함께 폐지 예정	
안데안 공동체	공동경쟁법	Board of Cartegena Agreement: 조사, 중지, 시정명령 권한, 법적효과
COMESA	부당공동행위 반덤핑 규제 가능 (약자, 취약산업 보호)	집행협력 고려중
JSEPA	경쟁법 · 정책 도입, 촉진	
NAFTA	경쟁법 · 정책 도입, 촉진 독점기업 설립가능, 반경쟁행위 금지, 회원국간 비차별 반덤핑 규제, 상계조치 가능	사법공조, 통보, 협의,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음. 분쟁해결 절차 없음: 절차적 규정은 양자협정을 통해 협력, 중앙 조절기구 없음. 단, NAFTA집행위원회에 무역 및 경쟁에 관한 실무작업반을 설치, 정책권고를 할 수 있음.

<Box 5-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경쟁정책 관련 조항(제14장)

목적
- 무역자유화가 경쟁 제한적 기업행위에 의해 저해되는 것을 방지. 반경쟁적 합의, 담합, 그리고 단독이나 공동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주목할 것을 특별히 명시

통보
- 각 경쟁당국은 자국 경쟁법 집행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제한 조치 또는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주로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경쟁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타방 당사국 경쟁당국에 통보해야 함.
- 이러한 통보는 당사국 경쟁법에 반하지 않고 수행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타방 당사국의 이익에 비추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함.
-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집행활동에 관하여 공조할 의사를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할 수 있음. 이러한 공조는 당해 당사국이 각각 자율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해하지 않음.

협의 및 예양
- 각 당사국은 집행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을 자국법에 따라 고려해야 함.
-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수행하는 조사나 절차가 자국의 중요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당국은 타방 경쟁당국에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요청국은 최종결정에 대한 자유를 저해 받음 없이 동 견해에 대해 완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함.

정보교환 및 비밀정보 보호
- 양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실효적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 양 당사국은 상대국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사건에서 적용된 제재 및 구제조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근거를 제공해야 함.
- 모든 정보의 교환은 각 당사국 내에서 적용 가능한 비밀유지 기준에 따르며 유포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비밀정보나 유포시 당사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는 제공되지 않음.

<Box 5-1> 계속

공공기업
- 양국은 내법에 따라 공공독점 또는 민간독점기업을 지정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 공기업 및 정부지정독점을 포함하여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기업과 관련, 경쟁규칙의 적용이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그 기업의 특정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업에도 경쟁법을 적용할 것을 보장함.

분쟁해결
- 경쟁관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칠레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될 수 없다.

기타
- 투자와 관련, 양국은 자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기술이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만약 법원, 또는 행정적 tribunal, 또는 경쟁당국에 의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요구되는 것에 대해 예외를 둠.

4. 한·중·일 경쟁법·경쟁정책

가. 개관

한·중·일 3국 모두 경쟁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가 주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1980년 제정되어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재벌의 확장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재벌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고 장관

급 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혁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었다.

일본의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독금법)은 1947년 미군정하에서 재벌을 해체시키고 재벌의 재형성을 방지할 의도로 제정되었다. 처음에 독점금지법은 대규모 기업의 분할, 합병허가제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외국의 압력에 의해 법이 제정되었던 만큼 1949년과 1953년에 완화개정과 많은 적용제외법 제정 등을 통해 현재의 틀이 만들어졌다. 그 후 제1차 석유파동의 원인 중 하나가 과점적인 경제구조와 카르텔에 있다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1977년 법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일본은 매우 소극적으로 독금법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미국과의 '미・일구조협의'의 결과로 경쟁정책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후 일본은 해마다 경쟁법 적용제외대상을 폐지해 오고 있으며,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국총국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쟁당국 조직이 강화되었다.

중국은 「불공정경쟁방지법(1993)」을 중심으로 「소비자권익보호법(1993)」, 「가격법(1998)」, 그리고 「입찰법(1999)」 등 4개 개별법을 통하여 경쟁정책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 경쟁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반독점법 초안이 마련되었다.[76] 이 법안은 곧 입법될 예정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감안할 때 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 기존법과 반독점법(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자는 폐지되고 후자만을 통하여 통합적인 경쟁정책이 운영될 것인지 또한 불명확하다.

76) 이 법안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Jung & Hao(2002)가 초안내용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자료이다. 이들은 중국 반독점법(안)이 다른 국가들의 기존 경쟁법과 다른 특성으로 행정기구에 의한 독점 규제, 복수의 집행기구 제도 및 사소의 역할, 그리고 사회경제적 분석에 의한 합병심사기준을 꼽고 있다.

나. 한·중·일 경쟁정책의 특성

제1절에서 본 바와 같이 경쟁정책은 독립적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요구·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도모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의 통제 대상에 속하는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경쟁법을 비교하고 있는데 모두 위의 분야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 중국의 경우 반독점법(안)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는바, 현행법에는 인수합병 및 카르텔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정이 없다. 여기서는 FTA에 실체규정을 담기는 어렵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각국 경쟁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특징적인 점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초기의 공정거래법이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참조하여 만들어진만큼 양국의 경쟁법은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구미 경쟁법의 경우,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 경쟁당국의 전속 고발권, 그리고 과징금 제도의 운영 등이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 근대 경쟁정책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소수의 재벌기업들에 경제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열기업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이 이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경쟁이 전반적으로 제한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시장경쟁보다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적절한 외부 또는 내부 감시·감독체제가 존재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경쟁법으로 규율될 사항이 아니라 회사법 또는 금융 감독기관에 의해 규율될

사항들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이러한 사안들이 계속 규율되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에도 중요한 논쟁대상이다. 이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출자총액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2003년까지 여러 번 폐지되었다가 부활된 연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재벌정책의 근간은 대체로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이다. 1997년 개정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던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2002년 법 개정시에는 대규모회사의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되었다.

경쟁법 집행은 한국과 일본 모두 사법절차보다 행정절차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미국식보다는 유럽식에 더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양국 모두 경쟁정책에 특화된 하나의 규제기구(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를 통하여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들 행정기구들은 직권조사 및 신고에 의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제재수단으로 행위중지, 법위반 사실의 공포, 경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1977년 일본에서 위법 카르텔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서 카르텔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당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가 현재에는 기업결합을 제외한 모든 법 위반행위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불법적으로 얻어진 이득의 환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제도와는 달리, 1996년 법개정에서 위반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제재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제재에 더해 양국 모두에서 형사고발에 의한 형사벌, 그리고 사소(私訴)를 통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국 모두에서 이와 같은 제도들은 법제 및 관행상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경쟁당국이 전속고발권을 가지

고 있어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이 먼저 위법성을 판단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경쟁당국에 고발을 의뢰할 수 있으나 통상 검찰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전속고발권의 완화를 통한 사소제도의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쟁법 및 집행제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의 위상이나 집행의지 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공취위는 한국의 공정위와는 달리 독립된 부처가 아니어서 그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서와 같이 법령협의제도나 규제개혁위원회 참가 등을 통해 경쟁당국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법적제도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양 경쟁당국의 최근 제재 실적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나아가서, 적발하기 어려운 카르텔의 경우 참여자의 밀고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정책 등 최근의 혁신적인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데는 한국이 보다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쟁당국이 강제조사권 등 강력한 수사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은밀하게 행해지는 카르텔의 적발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경쟁법의 형태 및 내용, 그리고 집행현황 모든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미흡한 형편이다. 특히 중국은 아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경쟁정책에 대한 법적 기준은 발전된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의 모든 유형의 독점이 어느 정도 행정적 색채를 띠고 있고,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조차도 정부의 보조와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혁과 발전 없이 경쟁법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불공정경쟁방지법은 독점력을 가진 사기업 및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행정독점, 부당염매, 끼워팔기, 부당경품, 입찰 담합 등 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에 대한 규제는 가격법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법은 담합행위에 의한 시장가격의 조정, 그리고 가격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에 대한 구체적 정의의 결여, 공공부문에 대한 미약한 통제, 낮은 수준의 과징금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경쟁법이 여러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집행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불공정경쟁방지법을 집행하는 공상행정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AIC)이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중앙정부로 국무원(State Council)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현 이상 지방정부의 공상행정관리국은 부정경쟁행위를 감시,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총국은 불공정경쟁방지법 외에 상표법, 소비자이익보호법, 광고법, 기업법, 경제계약법 등도 관장한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은 불공정경쟁사례 관련 책자발간, 관련부처·언론과의 협조를 통한 업계·소비자의 법적 이해도 제고, 공정경쟁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공정경쟁사건처리 건수는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제재현황 보완). 한편 1987년 저전압 전기기구를 생산하는 108개 기업들의 260개 품목상품에 대한 공동가격제한, 1993년 8개 국영백화점이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에어컨에 대한 최고가격 공동부과 같은 사례는 카르텔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을 말해 주고 있다.[77]

가격법의 집행기관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The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이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무원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략, 계획 및 전체적 균형과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가격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가격

77) 오승한, p. 857.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며 가격수준을 규제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중요 상품의 가격 등을 결정·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격법의 운용과 관련된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조직으로는 가격사, 가격감독검사 등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경쟁법 체제 및 집행경험 정도가 한국, 일본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나 반독점법(안)의 작성에 있어 중국은 미국 법제보다는 EU,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법체계를 주로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Jung & Hao 2003, pp. 24～30). 특히 한국과 일본이 서구의 경쟁법에는 없는 재벌에 의한 독점규제 관련 규정이 중요한 것과 유사하게 중국에는 국영기관의 행정적 독점 규제가 중요한 사항이다. 행정적 독점규제란 전반적인 규제완화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역외적용

전술한 바와 같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의 자국 영토 외에서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경쟁정책관련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정책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경쟁법에 역외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공정거래법은 그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고, 최근까지는 이 점에 관한 사례나 판례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개방화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해 국내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역외적용의 논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78] 국내 경쟁법의 역외적

78) 구체적 논의는 권오승(2000, pp. 714～721), 김진국 외(2000), 윤미경(2003 출판예정)을 참고.

용 첫 사례인 흑연전극봉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고등법원은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들간의 합의가 비록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합의의 실행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위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경쟁법에도 역외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공정취인위원회는 역외적용에 관해 특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 주로 속지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외적용을 문제삼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근거로 일본 독점금지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일본도 경쟁법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일본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일본 내에 영업거점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역외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1998년의 캐나다 MDS 노디언사에 대해 권고심결이 내려진 것이 좋은 예이다.[79] 이 사건에서 일본 공취위는 부당거래제한의 실행행위가 일본에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은 캐나다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경쟁제한 결과를 초래하는 한 일본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해 Microsoft 사건에서도 미국 Microsoft사의 배타적 조건부거래에 대하여 시정권고조치를 하고, 일본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끼워 팔기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내렸다.

위의 심결들은 진정한 의미의 역외적용에 해당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독점금지법에 기업결합관련 규정(제10조 등)이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를 '국내회사'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회사'로 개정하고 외국회사도 일본내 연간 매출액이 10억 엔을 초과할 때는 기업결합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79) MDS 노디언 사는 일본의 2개 회사와 방사선 동위원소인 몰리브덴 99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전량을 자사로부터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고영한(2000, pp. 711~712)을 참고.

함으로써 외국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이 가능한 입법 조치를 취하였다(고영한 2000, pp. 710~713).

중국의 경우 반독점법(안)은 독일 경쟁법을 따라 역외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2조는 "이 법은 중국 밖의 영토에서 이 법을 위반하거나 중국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Jung & Hao 2003, pp. 36~39). 그러나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법규정에 이를 명문화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적 관할권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당해 경쟁법의 실체규정 위반의 증명 가능성 여부 등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법절차, 효과의 증명을 위한 기준의 설정 등 구체적인 실행규정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바, 중국의 경우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위하여 얼마나 이러한 역외적용 능력강화를 중요시할지 아직은 알기 어렵다.

명문의 법규정이 없이도 자국시장에서 실행의 효과가 있는 경우 당해국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는 국제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할권이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해 법정출두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없다면 관할권의 확보가 무의미하다.[80] 법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법적 문서의 송달을 위해서도 사법공조가 필요한데 경쟁법의 집행은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등을 전제로 수행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경쟁정책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상의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 FTA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80) 한국의 공정거래법의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처리지침에 의하면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국외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지사나 영업소 등이 국내법상 법인격이 있는 경우에만 그 국내지사나 영업소를 상대로 고소 및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처리지침에는 한국측에서 가능한 절차만을 언급할 뿐 상대국에서 외국으로부터의 문서송달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한 예양차원에서의 처리방침이 부재하다.

라. 경쟁환경

이 소절에서는 한・중・일 3국에서 상대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경쟁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쟁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산업분야를 도출하여 본다. 중국의 경우 계획생산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에 의한 계획생산의 범위가 급감하고 있으며 국가독점가격체제도 붕괴되고 있다.[81]

또한 기업의 소유구조가 공공소유에서 국가와 집단, 개인의 다양한 소유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경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80년 초 전체생산의 80%를 차지한 국유기업의 생산량이 1990년대 중반에는 50%로 급감하였다. 아울러 국영기업들이 점차 더 많은 경영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추세이다.[82] 나아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개방을 위한 구조가 확립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으로 인해 5개의 특별 경제구역 및 14개의 해안에 근접한 개방도시들과 몇몇 해안에 경제개발지구를 설립하였으며, 지난 20년간 중국의 대외거래는 16배로 증가하여 그 규모가 2000년 현재 세계 7위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쟁'이 제대로 도입・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미한 상

81) 자연독점상품 및 공공복리관련 상품들을 제외한 약 90%의 생산품들이 시장기구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소비상품 품목은 1978년 6%에서 1999년 95%가, 농산품과 부산품은 1978년 6%에서 1999년 85% 이상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82) 현재 30만 개 이상의 중국 국영기업들 중 단지 1만여 개만이 국영생산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1993년 말 이래로 국가에 의해 독점화되는 소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들이 자산재정립 및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실제로, 1999년까지 기업결합, 합병, 임차, 주식회사 설립, 파산 등을 통해 소규모 국영기업의 75~80%가 경영체제 재조직화 혹은 개혁되었으며, 14,000개의 대규모・중간규모 국영기업들 중 1/3이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오승한, 「중국의 WTO가입과 경쟁법의 제정: 중국의 독점금지 입법에 대한 전망」, p. 849).

태이다. 중국 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크게 네 범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83]

첫째, 가격설정체제와 가격통제를 들 수 있다. 중국에서의 가격설정은 1998년 5월 1일에 발표된 가격법에 의해 통제되며, 동법은 두 유형의 가격통제, 즉 정부가 가격을 지정(government-set)하는 경우와 가격의 변동범위를 지정(government-guide)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카르텔 형성 요인이 될 수 있다.

가격통제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발전에 필수적이나 극소량인 상품, 국소자원의 일용품, 자연독점경영체제하의 상품, 필수공공설비, 필수적인 비영리서비스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통제가 인정되는 분야에 관해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수입곡물, 전기, 가스, 수도, 희귀광물, 항공, 우편, 통신, 민영항공기 등에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항만서비스의 경우 dispatch money 및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지만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였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수입항구를 7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요설비에 대한 접근이 사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여 왔으나 WTO 가입 후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EU 등과 WTO 가입합의에서 기초통신, 이동통신, 부가가치 통신분야에 대해 개방을 약속하였으며 WTO의 통신서비스 경쟁관련 사항도 적용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도 독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이동통신분야는 중국이동과 중국연통이 경쟁토록 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중국전신에서 중국망통을 분리시켜 경쟁시키고 있다. 나아가, 경쟁체제에

83) 허선 & 김대영(2002), pp. 111~113.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통신망 상호접속 분쟁처리규칙을 제정하여 2002년 실행중이다. 그러나 경쟁정책의 핵심 요소인 통신망 상호접속분쟁처리규칙은 모호한 부분이 많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당한 진입장벽 요소가 존재한다. 1999년 진입장벽에 관한 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는 아직도 기업설립, 인력의 고용 및 운용, 생산공장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차별도 존재한다. 우선,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상이한 영업허가권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보험사업자는 지방별로 영업허가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상이한 종류의 기업간에는 차별이 존재하여, 기업의 형태 또는 소유권에 따라 권리, 의무, 청산절차가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다.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자본조달상의 차별을 들 수 있는데, 한 예로 은행을 통한 자본조달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계획 혹은 선호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원인이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은행에 떠넘겨진 기업의 악성부채를 보전, 퇴출장벽을 형성함으로써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등 추가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끝으로, 행정장벽에는 국내외 기업간 상이하게 적용되는 인・허가, 등록 조건이 포함되며, 정부관리들이 지정한 특정업체로부터의 물품구입 명령행위 및 부처간에 존재하는 보호주의[84]가 있다.

셋째, 지역적 보호주의를 들 수 있다. 지역적 보호주의란 지방정부가 타지역 특정상품의 시장진입을 금하는 행위 또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84) 중국학계는 경쟁에 대한 행정제한을 부서독점과 지역독점, 보다 실질적으로 수평적 독점과 수직적 독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직적 독점은 수많은 정부부처들이 승인하고 설립한 행정적 기업들을 일컬으며, 이들은 정부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 타기업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익을 보유, 특정 상품들과 관련해 생산・판매・원료구매에서 인위적인 독점지위를 형성하고 있다.

원재료가 타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국의 몇몇 지방정부는 타지방에 본거지를 둔 사업자에게 자기 지역의 도매·소매 영업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거나 지방경계선에 검사소를 세워 상시로 조사, 몰수하며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보호주의는 수년간 중국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국영으로 운영되던 유통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어 지방정부 생산업자가 그간 향유하던 독점이익을 상실케 되자 이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탈적 가격, 차별적 법적용 등 지역간 교역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지방간의 효율적 합병, 투자, 교역 및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방해하고 있다.

넷째, 시장정보 부족을 들 수 있다. 여타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가격변동, 재고량 감소, 생산추이 등의 시장정보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획득·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중국에 비해 시장경제 체제를 오랫 동안 유지해온 일본의 경우에도 경쟁이 향상될 여지는 크다. 특히 만성적인 건설분야에서의 관공사에 의한 입찰담합(kansei dango) 문제는 악명이 높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평면유리, 철강, 종이 및 종이제품, 소다회 시장에서의 기업관행은 명시적으로 경쟁법을 위반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수입을 제한하여 전반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러한 완제품 시장에서의 수입제한은 특히 대점법 등에 의한 유통시장에서의 규제 때문에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무역대표부 무역장벽보고서 1997~2002).

최근에는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제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로 NTT 등 일본내 독점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제재, 과다한 규제의 철폐, 공정하고 투명한 접속료의 운영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의 경쟁촉진,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 부문의 경쟁촉진, 구조적으로 독점적인 시장에 대한 감독 등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제도적으로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 형사처벌의 강화, 사소제도의 활성

화, 그리고 경쟁당국의 독립 및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미국의 對일본 연차규제개혁 권고 2002).

한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의 광고시장 독점은 오랫동안 문제되어 왔다. 또한 외국사업자들은 한국의 산업협회 등이 많은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권한을 외국사업자의 시장배제를 위해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쟁법의 강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외국 사업자들은 경쟁의 촉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경부 등에 비해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미국무역대표부 무역장벽보고서 1995~2002). 나아가서, 건설분야의 입찰담합 문제는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규탄되어 온 만성적인 반경쟁적 관행이다.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이 보고서에서는 경쟁규범의 실체 내용의 조화는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경쟁정책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통상마찰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경쟁법의 조화보다는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쟁법의 대상이 되는 실체규정은 한·중·일 모두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으며 규제강도가 대체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실체규정보다는 위에서 살펴본 대다수의 자유무역협정에서와 같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국의 경쟁법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 대한 예양을 존중하면서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협력 체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역외적용의 발효 기준, 절차적 관할권 확보 과정에서의 협력을 위한 통보, 협의, 국제예양 및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개별사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각국과 양자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은 이미 일본 및 중국과 정기적으로 경쟁당국간 회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분산된 집행체계는 이러한 협의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포괄적이고 통일된 경쟁법제와 집행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3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반독점법(안)의 조속한 도입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에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것도 이 과정의 가속화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본다.

한·중·일 FTA의 경우에는 경쟁법 수준의 차이가 많은 나라들간의 FTA인 NAFTA가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NAFTA는 멕시코에서의 경쟁법 도입 및 경쟁촉진을 위한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NAFTA는 국영기업, 공기업 등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을 고려한다면 한·중·일 FTA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중국의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실체 내용의 측면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필요설비에 대한 접근 등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통신 등 망산업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비용이 높고 제약이 있으므로 주시하여야 할 산업분야이다. 유통, 건설(입찰담합) 등 특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정책 강화는 3개국 모두 필요한 과제로 보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협력 또는 공동의 학술적 연구를 추진하여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효과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WTO에서 다자경쟁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캐나다·코스타리카 FTA에서처럼 다자경쟁규범 제정시 이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FTA가 형성된다면 WTO를 포함한 여타 국제포럼에서 경쟁정책 이슈와 관련, 역외 국가들에 대항하여 한・중・일 3국이 공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Box 5-2>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바람직한 한・중・일 FTA의 경쟁규범의 주요 요소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Box 5-2> 한・중・일 FTA 경쟁규범의 주요 요소

1. 경쟁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특히 통신, 에너지, 건설, 유통 분야 등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공동 연구 추진
2. 공기업, 국영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특히 이를 이용한 외국사업자의 진입제한, 차별대우 등을 규제
3. 절차적 협력: 상대국에 중요한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법 집행에 대한 통보, 상대국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규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협의 및 예양과 관련된 절차 등
4. WTO 등 경쟁관련 국제규범의 원용. 국제포럼에서의 공동보조 형성
5. 경쟁당국 및 통상당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과 무역

냉전체제의 붕괴와 전세계적인 경기하강으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각국은 그 대응 수단으로 지역협정(regional agreemen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협정은 주요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주도하여 강한 추진력을 형성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 지역협정의 논의가 점차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는 지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분야가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분야는 세계최대시장이면서 동시에 기술최강선진국인 미국이 특허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1980년대 초반 Bayh-Dole Act 제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보호(pro-patent)로 나선 이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국은 강력한 기술력에서 기인하는 이득을 전유할 목적으로 각국간의 지적재산권분야의 통일에 주력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이 세계적인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 제정을 통해 해외에서의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고, 유럽 역시 1993년의 공동시장 설립의 일환으로서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를 통일화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각국, 특히 주요 선진국이 해외기업 유치, 자국기업의 혁신활동촉진과 혁신의 성과에 대한 전유(appropriation)를 목표로 지적재산권제도의 강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서 지역무역협정(특히 강한 기술력을 가진 주요선진국이 개입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지적재산권분야가 핵심적인 영역으로 등

장하게 되었다.

한편 지적재산권보호는 혁신에 대한 유인제공을 통해 직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국제적인 특허법의 변동혁신에 따른 이득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의사결정, 특히 여러 나라의 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결정을 통해 무역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지적재산권제도는 무역과 성장간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요소이다(Helpman 1993).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harmonization)에 대한 논의에서는 국제경제 활동에서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무역과 관련된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지적재산권보호는 국제무역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즉 각국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가 외국의 이익을 차별하거나, 국제적・일반적으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는 등의 방식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일되지 못한 보호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제조와 유통을 초래하여 새로운 상품의 개발 유인과 그러한 활동에 자원배분을 위축시키는 등 지적재산 보유자의 권리의 획득과 강화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자유무역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독점적 이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삼자에 의한 활용과 경쟁을 억제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에 의해 창출된 지적재산을 활용해 오던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선진국으로의 국제적인 소득재분배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기술혁신 축적이 어려워지고, 혁신의 성과를 나누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다.

특허 등록된 상품을 각국에 수출하고 가격차별전략을 구사하는 수출기업을 고려할 때,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제도의 변화가 무역흐름에 미칠 영향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 첫째, 강력해진 특허에 따른 시장지배력 강화(market-power effect), 둘째, 수입국 기업의 제품 모방능력의 축소에 따른 유효한 시장규모의 확대를 들 수 있다(market

expansion effect).

첫째 요소는 외국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탄력성을 축소하여 강한 지적재산권제도를 가진 시장에 대한 (특허제품의) 수출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반면에 둘째 요소는 수요곡선을 확대시켜 보다 많은 수출을 유도한다. 보다 큰 시장에서는 수입국 기업의 모방을 저지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비용지출을 축소시켜 수출을 확대시키는 비용절감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시장에서 두 요소는 모두 작동한다. 경쟁력 있는 모방기업이 존재하는 보다 큰 시장에서는 시장규모 확대라는 요소가 지배적이지만, 제한적인 모방능력을 가진 작은 시장에서는 시장지배력 요소가 보다 지배적일 수 있다(Maskus and Penubarti 1995).

한편 무역체제가 개방될수록,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사이의 연계관계가 강화된다. 무역이 개방될수록, 현지기업은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해외기업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기업이 해외로부터의 최신기술 구매전략을 사용하는 데 약한 지적재산권제도는 장애로 작용한다. 실제로 최신기술을 생산하는 해외기업이 라이센싱 계약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약한 지적재산권제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라이센싱이나 임대를 주저하기도 한다(Gould and Gruben 1996).

이상에서 드러나듯이 국제적인 경제활동에서 지적재산권제도가 그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기술선진국이면서 경제대국인 주요 선진국이 지적재산권의 조화와 통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인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제도 통일과 조화를 꾀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강제력과 절차에 대한 규정까지 포괄하는 WTO에서의 TRIPS, 그리고 199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는 세 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양상은 WIPO가 주로 관장하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협약을 TRIPS와 지역무역협정이 각각의 수준에 걸맞게 점차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채택

된다.

이러한 추세를 염두에 두면서 이 글에서는 한・중・일 3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3국간에 이루어질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논의를 미리 추론해 보고자 한다. 즉 TRIPS 발효와 강화에 따른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이라는 국제적인 추세를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 우리는 한・중・일간에 지역협정 혹은 자유무역협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적재산권분야의 협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TRIPS에서의 지적재산권규정을 살펴보고,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규정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북미자유무역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이를 기반으로 한・중・일 3국간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각국의 입장, 즉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재적 위치, 이와 관련된 3국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3국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움직임에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UR의 타결과 WTO의 출범이다. 기존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제도의 조화와 통일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이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던 반면에, WTO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은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개선과 동조화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TRIPS협정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가 표준화・통일화되는 최소 강제규범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WTO/TRIPS는 기존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의 상이한 해석으로 인

한 각국간의 상이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국제협약들을 편입시켜 WTO라는 다자적 질서 안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체제 수립을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상 초기에는 위조상표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협상의제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권,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최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협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와 이의 조속한 실행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위조상품의 교역방지 같은 최소한의 보호와 가능한 한 장기간의 유예기간 설정을 주장하였다. 결국, 논의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협상의 기본방향도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 보호수준으로 하여 보호정도를 강화시키는 '국제협약 플러스(plus)'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TRIPS가 성립하였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보호는 전의 파리협약, 베른협약, 세계저작협약 등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협약은 GATT의 다자간 규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규제가 미흡하였고, 특히 위조상품의 무역에 대한 규제와 신기술분야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 그리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마침내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 협약문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약(Trade-Related Aspec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IPS)이 채택되었다.

TRIPS협정은 전문과 총 7부, 제73조의 조문,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2부 보호기준, 제3부 행사절차, 제4부 권리의 획득, 유지, 관련내부 절차, 제5부 분쟁방지 및 분쟁해결, 제6부 경과조치, 제7부 제도관련규정 및 최종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RIPS에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상표(trademarks),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의장(industrial design), 특허(patents), 반도체회로설계(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미공개정보의 보호(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등 7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85]

<표 6-1> TRIPS 협정문의 구성

	내 용		관련 조항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제1조~제8조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9조~제14조
	제2절	상표	제15~제21조
	제3절	지리적 표시	제22조~제24조
	제4절	의장	제25조~제26조
	제5절	특허	제27조~제34조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35조~제38조
	제7절	미공개정보 보호	제39조
	제8절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의 통제	제40조
제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절차		
	제1절	일반적 의무	제41조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제42조~제49조
	제3절	잠정조치	제50조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제51조~제60조
	제5절	형사절차	제61조
제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의 절차		제62조
제5부	분쟁방지 및 해결절차		제63조~제64조
제6부	경과조치		제65조~제67조
제7부	제도적 규정 및 최종조항		제68조~제73조

TRIPS의 기본적인 제도적 특성으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지적재산권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란 점이다. 즉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TRIPS협정으로 다자교역체제로 흡수되었다. 이 협정

85)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은 종래의 지적재산권 협정들과 달리 지적재산권에 관한 최초의 다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과 국제경제활동을 연계시켜서 다자간 교역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WTO체제하에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향유하기 위해 TRIPS협정을 포함한 WTO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최소보호기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TRIPS는 '국제협정 플러스 방식'을 채택하였고, 협정의 취지를 국제협정을 최소 보호수준으로 하여 보호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데 두고 있다(협정 제1.1조). 회원국은 이 협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법으로 더욱 강화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강화된 보호를 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사항이다.

셋째,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 혜택은 즉시 조건 없이 다른 모든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협정 제4조).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조약이나 협정은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나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넷째, 권리소진의 원칙이다.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은 'First-sale Doctrine'이라고도 하는데 적법하게 만들어진 특허품 등을 일단 판매하면 그 권리자는 원권리자의 독점적인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즉 제1의 판매로써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자의 권리는 소진(exhaust)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적용시 병행수입과 대여권이 문제가 된다.[86] TRIPS에서 이 문

86) 추가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적법하게 만들어진 특허품 또는 저작품을 일단 판매하면 권리자의 권리는 소진하므로 이를 구매한 자는 원권리자의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병행수입과 관련되는데, 병행수입이란 권리자 이외의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조하거나 복제된 특허상품, 저작물 등이 권리자의 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가리킨다.

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추가적으로,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국내법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고, 회원국들간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TRIPS협정은 사실상 4개의 기존협정을 준용하고 있어, 기존협정의 '플러스(pl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병학 2002). 기존협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1967) 제1조와 제12조 및 제19조(1967년 7월 14일자 스톡홀름 의정서), 둘째, 어문 및 예술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 제1조와 제21조 부속서(1971년 7월 24일자 파리의정서), 셋째, 실연가, 음반저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정(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 넷째,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재산권협정(IPIC 협약) 제2조와 제7조 및 제12조, 제16조 제3항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제도와 관련하여 TRIPS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서는 문학·예술 창작물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저작물 등 데이터 베이스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권리자가 사람일 경우 권리자 사망 후 50년이며, 권리자가 없거나 법인일 경우 창작 후 50년으로 한다. 음반제작자 및 실연가의 저작인접권을 50년간 보호하고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은 20년간 보호한다.

둘째, 상표(trademark)의 경우 등록된 상표는 물론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는 보호한다. 보호기간은 최소 7년으로 하되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생산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한다.

넷째, 의장(industrial design)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 10년 간 보호하며 직물의장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섯째, 특허(patent)는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모든 기술분야의 물질과 제법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고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간 보호한다. 그러나 ① 공서양속(公序良俗), 공중보건,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발명, ② 진단, 수술, 처치방법, ③ 식물과 동물 발명은 이른바 불특허대상으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섯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layout-design of IC)에 대한 보호는 집적회로(IC)의 칩뿐만 아니라, IC칩이 내장된 제품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IC는 등록출원일 또는 최초 상업 이용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보호한다.

일곱째, 영업비밀(trade secret/undisclosed information)은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호되며, 또한 정부의 의약품과 농약의 제조허가시 제출된 비공개 임상실험 자료를 불공정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각 회원국은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시행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손해배상, 침해물품의 압수 및 폐기 등 민사재판·행정절차를 부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한 통관중지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국경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자유무역협정(FTA)은 전통적으로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간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 추세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 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은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점차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부문 조항을 정리하고 이 협정조항 분석을 통해 간략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해당 지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분야의 조항이 삽입되었는가, 기존 지적재산권관련 국제조약 중 어느 것을 활용하는가, 보호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여러 지역무역협정은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보호수준의 조화나 통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Maskus 2000).

<유형 1> 지적재산권의 완전한 조화추구방식(예: EU)- 이 방식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서,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일한 표준을 채택하게 하는 것이다. EU와 같이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이 선택된다.

<유형 2> 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예; NAFTA)- 이 방식은 TRIPS에 규정된 표준을 초과하는 높은 최소표준(high minimum standards)을 설정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동조화(harmonization)를 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NAFTA가 이러한 방식의 사례를 제공한다.

<유형 3> TRIPS-plus방식- 이 방식은 TRIPS 형성 이후에 상당수의 지

역무역협정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력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다. 기존의 TRIPS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TRIPS 협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호대상을 규정하는 경우이다. 통상 이러한 방식은 TRIPS 표준을 채택하기로 확약한 국가들 사이에 의해서 사용된다. 이러한 유형들의 사례는 EU와 중앙유럽 및 동유럽의 국가들,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국가들 사이의 협정에서 나타난다.

<유형 4> 상호권고방식(mutual exhortation)- 이 방식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공식적인 협상이 없이 각각의 국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절차에 대한 상호간의 권고(mutual exhortation)에 기초한 접근이다. 이것은 APEC과 같은 낮은 차원의 통합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협상 당사자들이 가지는 보호수준에 대한 전략이나 의도에 따라 크게 '적극형', '유보형', '소극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가장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과 조화를 의도했던 것으로 TRIPS의 형성과 그 시기가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하고 독자적인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시행(enforcement)과 절차를 추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협정은 역시 기존의 국제협약을 활용하면서도 TRIPS와 비교할 때 지적재산권의 남용, 시행조치, 미공개정보의 보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의 영역에서 TRIPS보다 강력한 조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거에 상승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87]

둘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지적재산권제도의 조화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협정은 전형적인 TRIPS-plus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사항은 TRIPS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87) TRIPS와 NAFTA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Maskus(1997)을 참고할 수 있다.

대체하고 추가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셋째,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이 모두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국가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과 절차상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유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미래적인 쟁점에 대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정하고 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명시했다는 점에 있다.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서비스마크, 공정특허(Process Patents) 등의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을 베를린협약, 제네바협약, 파리협약 등의 국제수준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협정은 당사국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 집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멕시코에는 3년 이내에 이 요건과 부합하도록 개정을 의무화하였다.[88], [89]

NAFTA의 조항은 첫째, 특허와 관련,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의 보호,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보호를 엄격하게 하며, 둘째, 저작권과 관련, 50년 동안의 보호와 최소한 1971년의 베른협약의 보호수준을 준수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베른협약의 문학작품처럼 보호한다. 셋째, 상표는 적어도 7년 동안 상표등록을 보호하고 무제한 갱신 가능하게 한다.

NAFTA의 지적재산권협정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지적재산권법의 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하여 미국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

88) 1994년 1월 발효된 NAFTA는 크게 본협정과 부속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협정은 전문, 본문 8개부(22개 장), 부속서(Ⅰ~Ⅶ)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품교역, 제3편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제4편 정부조달, 제5편 투자와 서비스 및 관련사항, 제6편 지적재산권, 제7편 행정 및 기구규정, 제8편 기타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89) http://www.mac.doc.gov/nafta/ipr.html

<표 6-2> NATFA의 지적재산권 영역의 조항 구성

조항	내 용
제1701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제1702조	보다 광범위한 보호
제1703조	내국민대우
제1704조	남용(abuse) 및 경쟁저해 관행과 조건에 대한 통제
제1705조	저작권
제1706조	음성녹음(Sound Recordings)
제1707조	위성신호를 담은 암호화된 프로그램(Encrypted Program Carrying Satellite Signals)의 보호
제1708조	상표
제1709조	특허
제1710조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1711조	영업비밀
제1712조	지리적 표시
제1713조	산업의장
제1714조	지적재산권의 시행: 일반규정
제1715조	민사 및 행정절차의 특수한 절차 및 구제 측면
제1716조	잠정조치
제1717조	형사절차 및 처벌
제1718조	국경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시행
제1719조	협력과 기술적 지원
제1720조	기존 대상물의 보호
제1721조	정의
부속서	1701.3: 지적재산권협약 1705.7: 저작권 1710.9: 배치설계 1718.14: 지적재산권의 시행

록 하는 것이고, 주로 멕시코의 지적재산권법의 개정 및 보호강화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정상조 1994). 그런데 그 방식은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국제조약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즉 멕시코의 지적재산권법의 개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멕시코 등의 체약국이 최소한 가입해야 할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을 열거함으로써 기존의 국제규범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협정체약국이 가입해야 하거나 충실히 이행해야 할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들은 아래와 같다.

(1) 1971년 음반 불법복제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2) 1971년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3) 1967년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4) 1978년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협약)
(5) 1991년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협약)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우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5부 16장이 지적재산권부문을 다루고 있다.

<표 6-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영역의 조항 구성

조항	내 용
제1조	의무
제2조	더 광범위한 보호
제3조	상표의 보호
제4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제5조	집행
제6조	협의체계

한·칠레 FTA는 지적재산권과 관련, 주로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집중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행이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의 이행을 위한 보호조치가 정당한 교역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둘째, WTO/TRIPS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법을 통해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광범위한 보호가 가능하다.

셋째, 양국간 무역 및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사회기반의 한 축을 이루는 지적재산권, 특히 상표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넷째, 양국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가 경제활동의 왜곡을 방지하고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양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서 상대국에서 등록 및 또는 보호되고 있고, WTO/TRIPS협정 관련 조항(제2장 제3절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보호의 범위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당사국은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이 당해 국가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그 상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2002년 체결된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86조 지적재산권과 10장 지적재산에서 다루고 있다. 제86조 지적재산권에서는 TRIPS에서 규정하는 내국민대우를 준용하고 있다. 이들 협정에서는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협력과 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공동위원회제도의 설정이다. 10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6-4>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영역의 조항 구성

조항	내 용
제96조	협력의 영역과 형태
제97조	지적재산에 관한 공동위원회
제98조	특허과정의 촉진
제99조	지적재산 데이터 베이스 활용 촉진
제100조	협력활동의 비용

이들 조항은 주로 지적재산과 관련된 협력에 집중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협력의 영역으로 지정된 영역은 첫째, 특허, 영업비밀 및 관련 권리, 둘째, 상표와 관련 권리, 셋째, 불공정경쟁의 억제, 넷째, 저작권, 의장 그리고 관련권리, 다섯째, 지적재산 중개나 라이센싱, 지적재산 관리, 등록 및 활용, 그리고 특허지도 작성(patent mapping), 여섯째, 디지털환경과 전자상거래의 성장 및 발전에서의 지적재산 보호, 일곱째,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보 확보(intelligence), 여덟째, 지적재산에 대한 교육과 인식 프로그램 등이 지정되었다.

또한 지적재산과 관련된 협력의 형태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 교환과 경험 공유, 나아가 지적재산관련 전문가의 공동훈련과 교환을 들 수 있고, 둘째, 지적재산의 집행(IP enforcement)과 관련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경험을 공유하며 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협력을 감독하고 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며 지적재산관련 이슈를 논의할 기구로 지적재산에 관한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설립이 설정되었다. 추가적으로 특허활동 과정의 촉진과 지적재산 데이터 베이스의 활용 촉진이 제시되고 있다.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한편 앞에서 거론한 지역무역협정 이외의 협정에서 TRIPS와의 관계는 <표 6-5>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과 인접권에 대해서 EU-멕시코 협정은 TRIPS의 규정을 인정하고 이에 추가하여 1996년 WIPO 저작권조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조약 등을 수용하고 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외에도,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의장, 특허영역에서도 기존의 TRIPS 조항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국제협약까지 포괄하는 방식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표 6-5>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지역무역협정을 보면, 상표권 영역에서는 1979년의 상표등록목적의 재화 및 용역의 국제적 분류에 대한 Nice협정, 1989년의 국제적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 1999년의 유명상표보호조항에 관한 합동제안이 추가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허권 영역에서는 1980년의 특허절차를 위한 미생물기탁에 대한 국제적 인지에 대한 부다페스트 조약, 1984년의 특허협력조약, 1991년의 신식물변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추가적인 요건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EU-멕시코, 미-요르단, FTAA초안 등 지역무역협정은 TRIPS를 최소요건으로 하고, WIPO가 관장하는 지적재산권 국제협약 등 각종 기존 국제협약을 활용하여, TRIPS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거나 넓은 범위의 지적재산권제도의 조화를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TRIPS-plus의 방식을 보여준다.

한편 이들과는 달리 NAFTA에서는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미공개정보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남용, 민사 및 형사조치와 국경에서의 시행 등의 영역에서 기존 TRIPS의 조항을 구체화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표 6-5> TRIPS 규정과 지역무역협정

TRIPS규정	지역무역협정
저작권과 인접권	
· 베른협약 · 로마협약 · 최소 50년의 보호 · 어문저작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보호 허용 · 음반제작자, 실연자에 대한 인접권리 보호 · 임대권	· WIPO저작권조약(1996)(EFTA, EU-멕시코, 미-요르단, FTAA 초안) · WIPO실연 및 음반조약(1996) (EFTA, EU-멕시코, 미-요르단, FTAA 초안) · 음반제작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정(1971) (NAFTA, FTAA-초안)
상 표	
· 파리협약 · 강제실시 금지	· 상표등록목적의 재화 및 용역의 국제적 분류에 대한 Nice협정(1979)(EU-모로코, EU-멕시코) · 국제적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1989)(EU-모로코, 미-요르단) · 유명상표보호조항에 관한 합동제안(1999) (US-요르단, APEC, FTAA-요르단)
지리적 표시	
· 불공정경쟁이나 오도가능한 사용 금지 · 와인과 주류에 대한 높은 보호	· 와인과 주류 이외의 제품에 대한 높은 보호(EFTA)
산업의장	
· 최소 10년 보호	· 국제적인 산업의장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법(1999)(EFTA)
특 허	
· 파리협약 · 모든 기술영역에서의 물질(products)과 제법(processes)을 포괄 · 동식물에 허용된 예외를 제외한 생명공학 · 제작, 사용, 판매위탁, 판매 및 수입의 배타적인 권리 ·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의 보호 · 제법특허에서 입증책임의 역전 ·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한 식물변종의 보호	· 특허절차를 위한 미생물기탁에 대한 국제적 인지에 대한 부다페스트조약(1980) (EU-모로코, EU-멕시코, 미-요르단) · 특허협력조약(1984 개정)(EU-모로코, EU-멕시코, 미-요르단) · 신식물변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91) (EU-모로코, EU-멕시코, 미-요르단, NAFTA)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 집적회로의 지적재산에 관한 워싱턴 조약(1989) · 침해된 설계를 포함하는 품목으로의 보호 연장 · 최소 10년의 보호	· 보다 구체적(NAFTA)
미공개정보의 보호	
· 침해된 설계를 포함하는 품목으로의 보호 연장	· 보다 구체적(NAFTA)
지적재산권의 남용	
· 경쟁적인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경쟁정책	· 구체적으로 거론(NAFTA)
시행조치	
· 민사 및 형사조치와 국경에서의 시행	· 구체적으로 거론(NAFTA)

자료: D. Lippoldt(2003)

마. 소결: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기존에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존 국제협약을 원용하고 있다. 기존 국제협약을 활용하여 이를 기초로 최소한의 보호수준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의 강화는 체약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행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WTO/TRIPS 협상비준 이전에 비해 이후에는 제반 규범이 정비된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가 보다 중시된다. 동시에 발전단계가 크게 볼 때 유사한 경우에도 역시 법적인 조항이나 규범보다는 실행(enforcement)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행과 관련된 제반 절차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가 논란이 된다. 셋째, 각국의 협상 내용은 체약국간의 무역흐름이나 투자흐름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즉 지적재산권제도 통일은 일반적으로 보다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보다 열위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압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 중에서 논란이 되는 영역은 보다 열위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의 수입의 구성과 관련된다. 즉 제품수입의 경우 상표와 의장 등이 논란이 되며 기술수준이 체화된 자본재 수입의 경우 특허 등이 논란이 된다.

이렇게 볼 때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도 NAFTA나 EU 방식보다는 TRIPS-plus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NAFTA의 경우에는 미국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멕시코에게 보다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한 것이고, EU의 경우에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동조화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심은교 2004). 그러나 한・중・일 3국의 경우는 기술수준의 차이도 크고 중국에게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보상으로 한일 양국이 어떤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념이 현 경제발전 단계에서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정

도이기에 어떤 NAFTA와 같이 공통된 최소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조차도 TRIPS 정신과 괴리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TRIPS를 통해 합의된 수준이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정책을 논하면서 더 살펴보기로 하자.

4.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지적재산권제도는 실제로 많은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법률의 크고 작은 개정과 제정을 통해 변화한다. 이들 제도는 해당국의 독특한 지적재산권제도의 특성과 국제조약 및 협약에의 가입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의 집행 정도가 각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정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특히 한・중・일 3국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집행실태가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3국의 제도적 특성과 변천 및 현황을 살펴보고 3국간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TRIPS 이사회 의사록을 기초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집행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1) 일본

전통적으로 일본은 경제발전 초기에 선진국에서 생성된 지적재산으로부터 크게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특허시스템은 특허 그 자체에 대한 보호보다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진외국의 발명행위에 따른 파

급효과를 국내기업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특허시스템이 설계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1885년 특허시스템이 설립되고, 1888년 특허조례가 성립되었는데, 생산과정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975년까지 음식료, 제약, 화학복합물은 특허보호의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1905년에는 실용신안업이 도입되어 기계류나 설비에 대한 적용, 개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여 국내 발명자에 의한 서구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였다. 공업의장의 경우에도 신규성만으로 등록과 이에 따른 보호가 가능했다.

또한 일본지적재산권제도의 특성으로 거론되는 것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이다. 또한 출원 후 18개월이면 공개하는 등록전 공개제도와 활용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이란 차원에서 이루어진 강제실시와 특허출원이 단일의 협소한 청구조항으로 한정되었다. 이 사실은 국내 기업과 발명자에 의한 작은 개선과 해외기술의 적용을 촉진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일본시스템은 역엔지니어링 등을 통한 해외기술의 흡수, 이전과 확산을 가져와 경제발전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범위는 1975년에 가서야 화학 및 제약제품을 포괄하도록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들어 일본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능력을 형성, 개발하고 스스로의 혁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부터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전통적인 특성과 함께 자국의 독자적인 기술능력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표가 함께 얽혀 있었다. 미국은 1980년대 적극적인 보호(pro-patent)로 나서면서 강력한 기술력에서 기인하는 이득을 전유할 목적으로 해외에서의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도 1993년의 공동시장 설립의 일환으로서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를 통일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1990년대의 장기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에서도 2000년을 마감하면서 자국의 기술능력과 그 성과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로 적극 선회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01년 경제산업성 주도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회를 설치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시스템이 특허보호 위주로 선회했음을 의미하고 더욱이 동아시아에서의 지적자산보호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산업경쟁력 둔화와 중국의 추격 그리고 신기술영역에서의 미국의 독주에 자극받은 측면이 강하고, 1980년대 초반 미국의 특허중시정책으로 전환이라는 경험을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본지적재산권제도의 특성이었던 수동적인 보호입장에서 탈피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2002년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을 발표하면서 지적재산입국을 지향하는 기본 방향 중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첫째, 지적재산의 창조의 강화, 둘째, 지적재산보호의 강화, 셋째, 지적재산활용의 촉진, 넷째, 인적기반의 확충을 설정하였다.[90] 이 중 지적재산보호의 강화에서 신속하고 적확한 심사, 심판, 실질적인 '특허재판소' 기능의 강화,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 국제적인 제도의 조화와 협력의 촉진, 영업비밀의 보호강화, 신분야 등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 등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2003년 3월 지적재산기본법이 발효되었으며 동시에 총리산 하에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었다.

한편 이미 일본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2001년 한국정부에게 제출한 개선방안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상표, 캐릭터 도용에 대한 엄격한 처리, 인터넷 위법사이트 제작 행위 엄단,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의 엄격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방품과 해적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모방품 피해는 이륜차, 산업기계, 전자기계, 식품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

90)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ndex.html

으며, 상표권 침해에서 의장권, 특허권 침해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침해국에의 조치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 한국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하게 지적재산권제도는 산업발전에의 기여라는 차원에서 형성되었다. 크게 구분하면 일본과 유사한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다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압력으로 지적재산권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에서는 1961년 12월 31일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이 제정되었다. 제정특허법의 특징으로는 첫째, 특허요건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규정, 둘째, 선출원주의 채택, 셋째,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도 규정, 넷째, 불특허 대상 발명과 특허권의 한계설정, 용도발명은 불특허발명에서 제외, 다섯째, 선사용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부여, 여섯째, 신규성 예외규정으로 시험, 전시회 출품 등을 규정, 일곱째, 3년 이상 불실시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강제실시권 및 실시권의 취소 등), 마지막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12년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실용신안법은 특허·실용신안·의장출원간의 변경출원을 인정하고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의장법은 의장등록의 대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신규성을 가진 의장을 명시하고, 신규성 예외규정 마련, 동일 유사의장에 대한 선출원주의 채택, 실용신안과 의장의 변경출원제도 도입, 의장의 불가분성을 규정, 의장권의 존속기간을 8년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1980년에 파리협약에의 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특허시스템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우선 특허법은 파리조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 정비차원에서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우선권주장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청구범위 다항제를 채택하고, 출원공개제도 및 심사청구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상표법의 경우에

는 단체표장제도 및 우선권주장제도가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의장법은, 용이창작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파리조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 정비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여타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한 압력이 특허시스템의 본격적인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1985년에는 한·미간 지적재산권 관련 '미통상법 제301호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법 개정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의 경우, 의약 또는 의약조제방법의 발명, 물질 또는 물질용도의 발명을 불특허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약품 등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특허대상의 확대는 미국에서 좀더 넓은 범위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필요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용신안법은 출원일로부터 12년으로 제한한 권리존속기간의 단서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상표법은 상표사용권의 설정 자유화 및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87년에는 미생물 특허가 인정되고,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하였으며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1990년에 지적재산권법 전반이 다시 개정되었다. 이 시기의 특허법 개정으로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음식물·기호물의 발명을 불·특허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권리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였다. 실용신안법의 경우에도 출원시 명세서의 요약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권리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규정하였다. 의장법은 의장등록요건의 국제공지주의를 채택하고, 의장권의 효력 범위를 명시하였다.

1991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1993년 특허법 개정은 '공업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변경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을 출원공개 이후의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의장법 개정으로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해에는 동시에 WTO/TRIPS의 최종협정이 채택되었다.

1995년에는 UR/TRIPS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개정하였고, 의장법을 개정하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상표법을 개정하여 색채상표를 도입하였다.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를 신설하고 특허법원과 기술심리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식물변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다.

1997년에 다시금 특허법,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어, 출원공고제도가 폐지되고,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침해 벌금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변경되었다. 또한 의장법은 의장 일부 무심사등록제도,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다의장 1출원제도가 도입되었고 신규성의제 요건이 확대(공개후 6개월 이내 출원)되었고, 의장권 존속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상표법도 역시 입체상표제도, 다류 1출원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연합상표제도의 폐지,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록출원 등록 배제, 상표등록 갱신출원의 실체심사제도 폐지, 상표권 이전공고 제도 폐지와 상표권의 보호 강화가 이루어졌다.

1998년에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1999년에는 온라인 전자출원이 개시되어 신속한 특허등록을 가능하게 했고, 1996년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중 공중전달권을 수용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2000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법을 개정하여 권리자가 복제방지를 위해 장치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회피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부 관계공무원에게 불법복제단속권을 부여하였다. 2001년에 유명상표를 희석시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토록 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를 간행물로 인정하고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쉽

게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내부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지적재산권제도를 강력한 형태로 유지하기보다는 TRIPS나 WIPO의 국제조약 가입에 따른 수동적인 개정이었다. 이는 한국의 기술혁신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비교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 가능하다.

3) 중국

중국 최초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인 「발명특허 보호에 관한 잠행규정」이 시행된 것은 1949년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바로 다음 해인 1950년 8월의 일이다. 당시 소련의 대규모 인적·물적 지원을 받고 있던 중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소련의 법을 모방하였다. 이 시기 지적재산권 보호의 취지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지식인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즉 '국가 건설'과 그를 위한 인적 동원의 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1958년까지 단 4건의 특허만이 등록될 만큼 이 법은 유명무실했다. 그 원인은, 사적 재산권이 엄격히 보호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와 함께, 중국에서는 구소련에 비해서도 훨씬 강한 반지식인 정서가 조성되어 과학기술인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대약진 운동(1958~60년)이 시작되면서,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발명특허 보호에 관한 잠행규정은 폐기되고 말았다. 1960년대 초반 짧은 '반성과 회복'의 기간이 있었지만, 이내 지식과 지식인에 대한 부정이 극에 달한 문화대혁명(1966~76년)이 진행되면서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의 개념은 중국에서 성립될 수 없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이 새롭게 마련된 것은 맹아적인 법령이 폐기된 뒤 20여 년이 지난 1978년 등소평 체제가 출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이른바 '4대(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현대화 정책'과 시장화 개혁이 추진되면서 지식의 중요성이 새롭게 평가되었으며, 지식인

들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1979년 미국과 무역을 정상화하면서 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약속하였으며, 중국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는 거대한 소비시장인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장치가 단계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 1983년에 상표법이, 1984년에는 특허법이 제정(198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작권(1991년), 영업비밀(불공정 거래에 관한 법, 1993년)에 관한 법령들도 차례로 만들어졌다. 또한 1993년에는 특허의 보호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등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1980년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한 데 이어, 1985년 Paris Convention(산업재산권), 1989년 Madrid Agreement(국제상표등록), 1992년 Berne Convention(문학 및 예술작품), 1993년 Geneva Convention (음반) 등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했으며, 2001년 WTO 가입에 따라 TRIPS규정에 맞춰 지적재산권 관련법안을 크게 손질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법의 개정은 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뤄져 왔다. 1979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정상화함으로써 중국에게 거대한 소비시장을 열어주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으로서 작용하면서, 지적재산권법의 정비와 개선을 중국측에 압박해 왔다. 특히 1989년부터 중국은 미국과 일련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며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위를 높였다(1993년 특허법 개정). 이어 WTO 가입을 위한 미국측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법령을 TRIPS규정과 WIPO협약에 맞춰 크게 개정(2001년 지적재산권 관련법 개정)했다. Chen(2001)은 2001년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1) 가처분 명령의 도입, 2) 강제적 시행(compulsory license)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3) 직무발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 4) 특허소송절차의 개선 등으로 정리했다. 또한 개선의 성격에 따라 크게

1)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의 강화, 2) 특허 출원 절차의 간소화, 3) 법 집행의 개선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우선 이뤄지면 사후적으로 지식경제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는 관점보다는 '과학기술 및 지식중심의 중장기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도 보조를 맞춰 강화되어야 할 것'이란 관점을 택하고 있어, 외부의 강력한 압력이 없는 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 중앙정부의 자발적인 조치는 비교적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것임을 암시한 즉 전반적으로 중국정부의 입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라는 큰 흐름은 인정하고 따르되 그 집행은 국내 발전단계를 봐 가면서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4) 한 · 중 · 일 3국의 기존 국제협약 가입을 통해 본 지적재산권제도

여기에서는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재적 수준을 이미 가입한 국제조약을 통해 파악하는 접근방식을 따른다. <표 6-6>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91]

첫째, 표준설정조약(standard-setting treaty). 이들은 서로 다른 지적재산권에 대해 기초적인 보호표준을 규정하고 동시에 내국민대우를 규정한다. 파리협약(1883), 베른협약(1886), 로마협약(1961), WCT(1996), WPPT(1996)이고, WIPO가 주관하지 않는 것으로는 UCC(1952), UPOV(1961), TRIPS 등이 있다.

둘째, 국제적인 보호시스템조약(global protection system treaty)이다. 다수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PCT(1970), 마드리드협정(1891), 원산지표시보호와 관련되는 리스본협정(1958)

91)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ch. 5.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를 참고.

등이 있다.

셋째, 분류조약(classification treaty)이다. 지적재산권 관련정보를 조직하여 다루기 쉬운 구조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니스협정(1957), 로카르노협정(1968), 스트라스부르크협정(1971) 등이 있다.

<표 6-6> 한·중·일 삼국의 국제조약 가입 비교

조약/기본내용	한국	중국	일본	TRIPS에서 포괄여부
유형 1: 표준설정조약				
(1) Paris Convention/산업재산권 보호	1980	1985	1899	○
(2) Berne Convention/예술저작물 보호	1996	1992	1899	○
(3) 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87	1992	1956	
(4) Rome Convention/실연 및 방송사업자 보호			1989	○
(5) Geneva Convention/저작권 무단복제 규제	1987	1993	1978	
(6) UPOV Convention/식물신변종 보호	2002	1999	1982	
(7) WCT(WIPO Copyright Treaty)			2002	
(8) WPPT(WIPO Performances&Phonographs Treaty)			2002	
유형 2: 국제보호시스템조약				
(9) PCT/국제특허협약	1984	1994	1978	
(10) Madrid Protocol/국제상표등록	2002	1995	2000	
(11) TLT(Trademark Law Treaty)	2003		1997	
(12) Budapest Treaty/미생물 관련 발명	1988	1995	1980	
유형 3: 분류조약				
(13) Nice Agreement/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	1999	1994	1990	
(14) Locarno Agreement/산업의장 국제분류		1996		
(15) Strasbourg Agreement/IPC(국제 특허분류)	1999	1997	1977	
한·중·일 가입연도				
WIPO Convention	1979	1980	1975	
WTO/TRIPS Agreement	1995	2001	1995	

자료: WIPO

가) 표준설정조약(standard-setting treaty)

(1)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은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최초의 협약으로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공통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한다. 특허협력조약(PCT)은 이러한 파리협약의 기조를 계승하여 파리협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상호, 원산지 표시 및 부정경쟁방지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내국민 대우, 우선권 제도,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2)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이며 첫째, 무방식주의, 즉 저작물의 완성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속지주의, 즉 가맹국은 서로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도 서로 보호할 것을 규정한다. 또 내국민 대우,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자국민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3)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은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1952년에 체결되어, 유네스코(UNESCO)가 관장하고 있다.

(4)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Rome Convention)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설정하고 20년간 보호를 규정한다. 한편 이 협약과 관련, TRIPS협정은 이 협약의 계속적인 적용을 위한 명시적 보장만 담고 있을 뿐, TRIPS협정 보호의 한 기준으로 그것의 실체적 규정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TRIPS협정의 이 같은 차별적 태도는 로마협약이 국제적으로 승인받고 있는 정도가 베른협약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5)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은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무단복제물 배포, 공중배포 목적의 복제물

작성・수입으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한다.

(6) 새로운 변종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UPOV Convention)은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 실제 재배심사에 의해 보호요건을 갖춘 경우 15년간 보호하며, 세포융합에 의한 신품종도 보호한다.

(7) WIPO 저작권조약(WCT)과 (8)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은 WIPO 신조약으로 불리며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체결되었다.

WCT는 WIPO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1996년 채택한 조약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WPPT는 인터넷상에서 가수, 연주자, 음반회사 등의 음악 저작 인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CD나 레코드 등을 통해 복제하는 행위, 배급 및 대여 등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조약에 일본은 2002년에 가입한 상태이고, 한국과 중국은 미가입한 상태이다.

나) 국제적인 보호시스템조약(global protection system treaty)

(9) 특허협력조약(PCT)은 동일발명을 각국에 중복출원하고 각국이 독립해서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낭비와 불편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파리협약에 의한 특별협정의 하나로 새로운 국제출원방법을 도입한 조약이다.

(10) 국제상표등록을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는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원인(개인 또는 기업)이 상표등록 희망국가를 지정, 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자동적으로 출원된다.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은 본국에 등록한 상표를 국제등록하면, 각 체약국에 직접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제등록의 존속기

간은 20년이다.

(11)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은 각국이 서로 다른 상표출원과 등록절차를 단순・통일화해서 출원인에게 더욱 간편하고 손쉬운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상표등록절차를 표준화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이 조약에 가입해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아직 미가입 상태이다.

(12) 부다페스트 조약(Budapest Treaty)은 미생물에 관한 발명을 국제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출원 대상국들에게 모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WIPO에 의해 공인된 미생물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면 특허보호를 지정한 모든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다) 지적재산권관련정보를 정리하기 위한 분류조약(classification teaty)

(13) 상표등록을 실행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은 상품・서비스를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공통적인 분류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약이다.

(14) 산업의장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Locarno Agreement)은 산업의장 분류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다.

(15) 스트라스부르크협정(Strasbourg Agreement)은 IPC협정으로 불리며, 특허에 관한 발명과 기술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체결됐다.

<표 6-6>에서 볼 때, 한・중・일 3국은 모두 WIPO 및 TRIPS 가입국이고 그 외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한편 TRIPS는 이미 세 개의 조약, 즉 산업재산권의 기초적인 협정인 파리협정,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정, 실연 및 음반, 방송사업자에 관한 로마협정을 포괄하고 있으나, 한・중・일 3국간에 가입여부가 차이나는 일부 국제조약은 포괄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요한 점은 TRIPS가 포괄하지 않은 조약 중에서 중국이 상표법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디지털 및 온라인 환경에 적절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하여 최근 체결된 WIPO 저작권조약(WCT)과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이 로마협정, WCT, WPPT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이 조약들이 저작인접권과 온라인 관련 저작권에 관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92] 한국은 WIPO 저작권조약 내용의 일부분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1999년 12월에 개정하여 WCT에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3국간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중·일간의 쟁점

한·중·일 3국은 WTO/TRIPS를 거치면서 TRIPS가 요구하는 최소수준은 표면적으로 이미 확보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에서는 TRIPS 이상의 국제조약을 최소수준으로 하거나 실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합의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93] 그렇지만 동시에 기존 TRIPS의 규정을 수용하는 방식에 각국간의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중·일 3국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92)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보호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이다.

93)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이 그 동안 세계 특허법 통일화에 최대 장애요소였던 선발명주의를 조만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2003년경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이 타결된 다음 2005년부터는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TRIPS 이사회에 제출된 의사록을 기초 자료로 주요하게 활용한다. 이들 자료는 TRIPS 가입에 따른 각국 국내의 제도변경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94] 중국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의사록은 2002년 12월에 작성되었고, 한국은 2000년 10월에 작성되었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보고에 대한 타국의 질의와 답변을 이들 국가의 관심사와 입장에 대한 표출로 본다. 따라서 이들 질의·응답을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1) 특허

한·중·일 3국이 특허와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의 신속한 부여와 특허권 강화라는 요소와 특허가능대상의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에 대해 주로 전자에 주목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선, 중국에서 특허허여나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합리적인가에 주목하고 이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특허권과 관련,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이나 정부개입 이전에 이해당사자가 협의해야 한다는 중국측의 조항과 TRIPS규정이[95]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94) 각국의 질의영역은 해당국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일본의 질의는 크게 7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미공개정보(closed information)의 보호, 집행(enforcement), 신식물다양성 보호(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기타가 그것이다. 반면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질의는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저작권 및 인접권리, 미공개정보(closed information)의 보호, 집행(enforcement)이 그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질의는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상표, 특허, 미공개정보(closed information)의 보호와 불공정경쟁,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집행(enforcement)이 그것이다.

95) 제41조 지적재산권 시행의 일반적 의무 2항 지적재산권의 시행 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 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하게 시간을 제한 또는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외국인에게의 양도는 관계당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중국측의 조항이 TRIPS가 규정한 내국민 대우[96]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문제제기를 한다.[97] 또한 특허권이 침해당할 경우 관련 증거보전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우선 강제실시(compulsory licences)를 허용할 경우 그 구체적인 조건이 명확하지 않음을 제기하였고, TRIPS 제30조[98]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가와 TRIPS 제34조 제법 특허, 입증 책임[99]을 이행하

96) 제3조(내국민 대우) 1항 각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에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 조건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기 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에 관하여는,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베른협약(1971년)의 제6조 또는 로마협약의 제16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97) 나아가 외국인출원은 중국정부가 지정한 변리사를 통해야 한다는 조항과 TRIPS의 내국인 대우 규정의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98) 제30조(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회원국은 특허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9) 제34조(제법 특허, 입증 책임) 1. 제28조 제1항 나호에 언급된 특허권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 절차를 위하여 특허 대상이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인 경우, 사법당국은 피고에게 동일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이 이미 특허된 제법과 다름을 증명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회원국은 다음 중 최소한 하나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질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생산된 경우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이미 특허된 제법에 의해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가. 특허된 제법에 의해 취득된 물질이 신규인 경우, 나. 동일 물질이 그 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실제로 사용된 제법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국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규정된 입증 책임이 주장된 침해자에게 있다고 자유로이 규정한다. 3. 반대되는 증거의 제시에 있어서 제조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된다.

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허가능대상과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은 중국측이 특허보호 허여 예외 영역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100] 이외에도 일본은 TRIPS에서 규정된 것 이상으로 비즈니스모델 등을 특허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특허대상의 확대를 통해 지적재산권분야의 성과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2) 상표

일본은 중국측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제기를 하였다. 첫째, 상표등록취소의 예외조항 혹은 안전장치(safeguard)[101]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유명 상표(well-known marks)'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유명상표목록이 국내기업소유로만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이 조항이 국내로 한정되는가 아니면 국외의 상황에도 적용되는가에 주목하였다.

100) 제27조(특허 대상)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제65조 제4항, 제70조 제8항 및 이 조의 제3항을 조건으로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

2.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외는 동 이용이 자기 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국은 또한 아래 사항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나.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이 호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 재검토된다.

101) TRIPS 제19조에 의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지속적인 기간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상표 소유자가 활용에 대한 장애물의 존재 근거에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나아가 일본측은 중국의 상표법이 TRIPS가 규정한 내국민대우와 합치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셋째, '법에 의해 규정된(predetermined) 재화에 사용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하고 등록 이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국측 조항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TRIPS의 제46조[102]와 같은 위조상표제품(counterfeit trademark goods)의 처분에 관한 중국측의 엄격한 법제 조항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측은 상표소유자의 의지와 독립적인 환경이 상표 사용의 장애를 구성하는가와 상표 비사용(non-use)의 적절한 근거[103]를 제공하는가에 주목하여 자의적인 상표권 취소가능성을 경계하고 상표권의 강화에 주목하였다.

한편 국제조약차원에서 보면 상표영역에서는 중국이 각국 상표법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제적인 조화와 표준화를 다룬 협약인 상표법조약(Trademark

102) 제46조: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사법당국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을 아무런 보상 없이, 권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하거나, 또는 현행 헌법상 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사법당국은 주로 침해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재료나 기구를, 아무런 보상 없이 더 이상의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요구를 심사할 때는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및 제3자의 이익 사이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가 고려된다. 상표권 위조 상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의 단순한 제거는 이러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허가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103) 제19조(상표의 사용요건) 1.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는 데 대한 장애의 존재에 기초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은 적어도 3년간의 계속적인 불사용 이후에만 취소될 수 있다. 상표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또는 그밖의 정부의 요건과 같이 상표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표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상황은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2. 상표권자의 통제에 따르는 경우, 타인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Law Treaty)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삼국간의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3) 저작권

저작권영역은 일본측이 가장 주목하는 영역 중의 하나이다. 우선 저작권 침해시 중국 국내경우와 외국기업이 개입한 경우에 차별적인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에서 규정한 배포권리가 국외에서 유통중인 작품의 복사본이나 재생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주목하였다.

집행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집행규정이 취약함을 제기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법당국의 유약한 조치에 대해 행정당국이 보인 제안(recommendation)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다. 나아가 저작권법이 TRIPS 제41조 2항[104]의 지적재산권 집행관련 절차의 공정성 및 공평성과 합치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일본측은 한국측에 대해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제대로 구현되는가와 TRIPS 제13조[105]와 부합해서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예외조항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국제조약과 관련해서, TRIPS 이사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조약과 저작인접권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WIPO 저작권조약(WCT)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의 수용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들 조약은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공중전달권, 기술

104) 제41조 2항 지적재산권의 시행 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 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하게 시간을 제한 또는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05) 제13조(제한과 예외)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를 다루고 있다.

4) 시행(enforcement)

시행관련 이슈는 일본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지적재산권분야의 이슈이다.[106]

일본은 시행과 관련해서, 중국이 전반적으로 기구와 조항이 엄격하지 않고 침해방지나 억제수단이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TRIPS 제61조[107]와 같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요소가 약하며, 둘째, 집행관련 행정기구와 그 기구의 기능이 분명하지 않으며, 셋째, 국경조치(border measures) 집행 관련 법제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넷째, 추가적인 침해를 억제할 만한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낮은 벌금과 피해보상의 유효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섯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반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지적재산권 집행관련 피해 증명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용이 필요로 하지 않는가에 주목하고, 권리보유자의 피해액을 결정하는 계산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일본측은 본질적으로 중국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을 위해 위조품의 생산과 여타 지적재산권침해를 방

106) 가장 강경한 주장은 일본판 ITC(국제무역위원회) 창설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강력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107) 제61조: 형사절차 회원국은 적어도 고의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와 처벌을 규정한다. 이용 가능한 구제는 이와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 수준과 일치하고 억제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구금 또는 벌금을 포함한다. 적절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 구제에는 침해 상품과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된 재료 또는 기구에 대한 압수, 몰수 및 폐기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그밖의 다른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특히 그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조하는 지역주의(localism)에 대한 문제제기, 둘째, 침해에 대처하는 태도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첫째, 지적재산권 침해서 사법당국이 명령을 가할 수 있는 조치와 피해액 산정방식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 위조상표나 해적 제품의 출시 중지가 규정된(prescribed) 조항을 분명히 하고, 권리소유자에 의한 청구로 인해 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류의 지적재산권 유형을 적시하길 요구하였으며, 셋째,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처벌의 종류와 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다.

한국측은 중국에 대해 가처분조치의 신청 중 법원인증의 평균비율, 지적재산권 침해사례와 처벌조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을 요구하였다.

5) 기타: 미공개정보, 식물신품종,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미공개정보(closed information)의 보호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모두 중국측에 대해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테스트나 정부에 제출된 자료 보호와 관련된 법제 조항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108]

또한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 일본측은 외국인에게 식물다양성에 관한 출원권이나 다양성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중국측 조항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또한 라이센싱의 활용으로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라이센스 부여자(licensor)가 책임을 진다는 중국

108) TRIPS 제39조 미공개 정보의 보호 3항: 회원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실험 결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불공정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회원국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이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측의 기술수입·수출 통제규정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라이센스 부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관련해서, 한국측은 중국측에 대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를 책임지는 기구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외 한·중·일 삼국이 모두 한자를 사용하므로 지명이 같은 경우가 많아 지리적 표시 문제가 잠재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3개국 지적재산권제도 통일협상에서 중국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거론되며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109] 따라서 중국 지적재산권제도의 현재적 실태와 그 변화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적재산권법 집행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각종 제도적 요인(지방 이기주의, 행정부처간 조율 실패, 법원 및 행정 당국의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바(혹은 중앙정

109) 최근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DVD 플레이어, 오토바이 등 부문에서 지적재산권(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침해에 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아 상당한 양보를 했다. DVD 플레이어의 경우, 이른바 6C로 불리는 일본 DVD 플레이어 제조사 연합의 공세에 밀려 결국 중국기업들이 30억 위안(약 4천 400억 원)에 달하는 라이센스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일본 기업과 정부의 잇단 항의성 방문 끝에 '중-일 오토바이산업계 지적재산권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는데, 이는 중국에서의 오토바이 지적재산권 침해실태를 공동 조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중국 유관인사에 대한 교육을 일본에서 실시하고, 오토바이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양국간 조정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中國經濟時報, 2002.9.13). 또한 이를 계기로 2002년 11월 30일, 중국 국가경제합작무역위원회는 '오토바이 생산기업 진입에 관한 법(摩托車生産準入管理方法)'을 제정, 오토바이 설계 및 개발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오토바이 산업의 신규진입을 막기로 했다(中國汽車報 2002. 12. 24).

부의 의도)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는 점이다. 즉 제도적 장벽에 부닥쳐 법 집행이 실패하는 문제다. 또 다른 문제는,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사법(私法)'적 차원이 아닌 국가 및 사회의 이익 수호라는 '공법(公法)'적 차원에서 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중심적 집행(State-centered Enforcement, Potter and Oksenberg 1999)'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한 민간 경제주체가 민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낙후돼 있어, 결과적으로 법의 집행은 정부(특히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공존한다. 즉 법의 취지나 중앙정부의 의도가 실제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문제와 법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도만이 크게 반영되는 문제가 공존한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중국적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낮은 국가발전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적 장벽들 때문이다. 제도적 장벽 중 대표적인 것으로 1)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중앙정부 시책의 무효화 및 왜곡, 2) 정부부처간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조율 실패, 3) 법원 및 행정당국 내 전문인력의 태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지적재산권법의 집행에서 지역 이기주의는 큰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간 경제발전 수준과 과학기술 역량의 차이가 매우 심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각 지방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위조품의 생산이 지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관련 취업인구가 많은 경우,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해 지방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각 지방은 지식경제 발전정도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그 이해관계를 (비록 편법적이지만)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둘째, 정부조직 정비 미흡과 부처간 조율 실패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대표적인 행정기관은 199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특허국(專利局)이 확대 개편된 국가지식산권국(SIPO)이다. 국가지식산권국은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특허심사 및 등록, 특허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법률 초안 작성 및 규칙의 제정, 지적재산권 관련 외국과의 협상 및 협력 등을 맡고 있는, 한국의 특허청(KIPO)에 준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상표권은 아직 국가공상국 산하의 상표국이 주관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국가판권국이 주관하고 있다. 비록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기능을 집중시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상표권과 저작권 영역 등에 있어 주관 행정기관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110]

셋째, 법원, 행정조직내 전문인력의 부족도 중대한 장애로 작용한다.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원과 행정조직의 인력이 소질 및 절대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 집행기관이 자체수사보다는 외부 제보에 크게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98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상표권과 저작권을 관할하는 국가공상국 및 국가판권국의 인원이 축소돼(Clark 2000),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의심케 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민사적 해결 시스템의 낙후와 국가중심적 집행(State-centric Enforcement)이 지적될 수 있다. 1997년까지도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즉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기업이 민법에 호소하여

110) 이밖에 지적재산권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세관, 품질기술감독국(소비자보호법 및 제품품질법에 의거하여 위조 및 불량제품을 단속하는 기관), 공안국 등 정부기관 사이에 책임 및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연유로 '중복된 행정조치'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상'이 번갈아 가며 발생하고 있다.

사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1997년 이후 이것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지적재산권 분쟁 조정이 그리 보편적이진 않다. 그 까닭은 한마디로 민사소송이 지적재산권 침해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111]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은 법원의 판결보다는 정부기관의 행정조치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나, 이는 법원을 통한 피해액의 보상보다는 자사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전략 차원의 행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Groombridge 2000).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거나 사전에 그 같은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없다. 대신, 정부가 벌이는 단속 캠페인에 의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제재와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를 두고 Potter와 Oksenberg(1999)는 지적재산권법의 '국가중심적 집행(State-centered Enforcement)'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국가중심적 집행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첫째, 경제행위에 대한 당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 둘째, 피해당사자가 아닌 정부당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적 기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점, 셋째,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선택적 집행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부패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111) 지적재산권 피해당사자들은 흔히 "법원이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가처분명령을 내리는 데 매우 인색하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당국이 조사중인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인 경우 행정당국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보통 3~6개월씩 걸리는 행정조치가 내려지기를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때는 이미 증거와 사람이 모두 사라지고 난 경우가 많다고 한다(Chow 2000).

라. 소결

전반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중국측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각 영역에서 내국민대우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지적재산권 침해 억제가 효과적인가에 주목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국의 문제제기에 대해 중국측은 대외적으로 중국 국내법이 TRIPS협정의 규정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으며 TRIPS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국가간 시각의 차이를 드러낸다.

영역별로 보면, 특허에 관해서는 출원 및 허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즉 내국민대우의 수용이 쟁점이다. 상표에 관해서는 중국측이 상표법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표권 보호가 미흡하며 해외 유명상표 보호 정도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일본측은 보고 있다. 저작권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충실히 수용되고 있지 못하고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협약, 즉 WCT와 WPPT에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공세적인 입장을 택할 것으로, 중국은 수세적인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존 조약에 대한 해석의 수준과 그 실행(특히, 중국의 경우)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크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들간의 연대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WTO규정을 준수하고, 자체 성과를 대외에 충분히 선전한다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中國工業報 2003. 3. 20). 중국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규범과 독립적으로 중국측의 지적재산권보호의 집행문제는 중요성을 가지며, 핵심적인 쟁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이상의 논의로부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는 TRIPS-plus방식을 채택하여 3국이 최소한 TRIPS협정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이루되, TRIPS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으나 한·일은 가입하고 중국은 가입하지 않은 상표법조약을 중국이 가입토록 유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112]

둘째, 일부국의 국내 지적재산권법과 TRIPS규정과의 불합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국내 지적재산권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일본이 중국측 지적재산권 조항자체에 대해서(특히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침해억제책의 유효성에 집중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TRIPS에서 포괄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도 각국간 집행력에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국내의 집행부분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특히 중국의 집행력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중국의 국내적 시행조치를 좀더 투명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TRIPS 수준의 지적재산권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행정조치, 국경조치에서 최소수준의 동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112) TRIPS-plus 방식에서는 기존 TRIPS의 충실한 이행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인 영역을 설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즉 원칙적으로 TRIPS-plus는 TRIPS협정에서 규정된 조항을 넘어서는 조항을 의미한다. 통상 TRIPS-plus협정은 첫째,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영역 포괄, 둘째, 보다 확대된 표준(a more extensive standard)의 이행, 셋째, TRIPS협정에서 선택사양으로 설정된 영역의 제거를 의미한다(Vivas-Eugui 2003).

전술한 것처럼, 중국은 지방 이기주의, 행정부처간 조율 실패, 법원 및 행정당국의 자원 부족 등의 각종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법과 중앙정부의 의도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점과 '국가중심적 집행'이 주된 기조를 형성하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단속과 보상에 대한 법적 집행이 정부(특히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재산권보호의 이행문제가 삼국간의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다.

넷째,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훈련, 집행 등을 협력 및 감독할 기구를 설치한 지적재산권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를 한·중·일 3국간에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상표권의 담당부처가 특허청 및 문화관광부 (중국은 지식산권국, 국가공산국, 상표국, 국가판권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제분쟁발생시 효과적인 대처와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기구가 인력과 기구 등에서 여전히 취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국측의 지적재산권 관련 인력과 기구의 교육 및 훈련, 기술적 지원, 지적재산권관련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해 동아시아 3국에서의 지적재산의 창출의 확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적재산권보호수준에서 저작권분야가 각국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분야에서는 전술하듯이 디지털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조약이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고 현재 일본만이 가입한 실정이다. 인터넷의 활성화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조약의 준수여부가 TRIPS

가 규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쟁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이 지적재산권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일정한 수준까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 주제는 이미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미 특허절차의 통일과 조화를 꾀하는 특허법조약이 체결되었다(2000년 체결). 그리고 어떠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 즉 특허요건(특히 비기술분야로의 특허대상확대)에 대해 각기 나라별로 상이한 법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실체특허법조약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양국은 2004년부터 한나라의 특허를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특허상호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간에도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의 노력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한・중간의 특허심사 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플랜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선행기술공동조사의 확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한・중・일 지역특허청설립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내국민 대우의 실질적 보증을 통하여 지적재산 창출을 확대하여 3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원산지 규정

한·중·일 FTA의 목적이 3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산지 규정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특혜원산지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3국간 FTA의 원산지 규정의 기본 원칙은 공평하고 투명하며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성이 있으며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단명료하고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정으로 구성된다면 FTA의 기본 목표라 할 수 있는 무역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직 3국간 FTA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원산지규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확정하여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완전생산(wholly obtained)의 기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협상을 통해 3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

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변형의 기준으로 세번변경의 원칙 아래,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품목의 특성, 3국의 산업구조의 특성,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 규정이 통관비용의 증가를 가져와서 회원국간의 관세인하 혜택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통관비용의 증대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회원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첨부되어야 한다.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산업구조 및 보완관계가 한・중・일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AFTA에서는 역내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물품이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취득된 경우나 역내산 재료를 가지고 역내 생산 공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역외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으로 판정하며, 세번변경기준만으로 북미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입장관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향후 산업구조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은 과감히 양보하고 우리의 산업구조전개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원산지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각국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정책적 함의도 갖고 있는 것이다.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산지규정은 향후 산업발전의 방향에 따라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원산지규정은 21세기 한국의 산업발전 전망에 기초한 정책적 고려가 보다 반영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반덤핑

WTO 통계에 따르면 한·중·일 3국 모두 세계 피제소국 최상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3국은 반덤핑제도를 수입규제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반덤핑규제를 받는 국가들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이 국내 내수에 비해 수출이 경제에서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의 반덤핑 조사 및 제소 현황을 보면, 세계적으로 피제소국인 한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의 무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반덤핑조사가 수입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품목의 수입은 조사개시 다음해에 약 23.8%, 2년 뒤에는 62.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통합과 반덤핑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1) 반덤핑조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라는 견해, 2) 반덤핑은 어떤 경제적인 근거도 갖지 못하는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견해, 3) 공동의 독점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덤핑은 공평성(level the playing field)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간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의 마련이 반덤핑법의 철폐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반덤핑법이 경제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인 약탈적 덤핑은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독과점금지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외국의 독과점금지법 및 산업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후방연계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각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반덤핑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순한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및 쿼터의 폐지와 함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서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중·일 3국 공동의 독과점금지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협력이 심화되어 'deep integration'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독과점금지법을 비롯한 공동의 경쟁법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다만,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과도기적으로 반덤핑규범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정도로 정부의 우려가 클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 또는 과도기적으로 반덤핑규범이 필요할 수는 있다. 즉 반덤핑제도의 유지가 경제적인 근거가 아닌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국가의 현행 반덤핑규범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공동의 반덤핑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 반덤핑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각국에서 행해지는 보호무역주의적인 관행을 제거하고 나아가 향후 반덤핑법의 완전한 철폐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반덤핑규범은 현행 보호주의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고 규정이 불명확하여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WTO규정을 넘어서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양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디자인하는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경제 정책적 주권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국가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왜곡적 기능 역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정부는 일방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개별 국가의 후생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제적 구속력을 지닌 다자간 무역협정인데, 보조금과 관련된 다자무역협정이 WTO 보조금협정이다.

이러한 보조금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운영하며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는데, EU의 로마조약, 유럽경제지역(EEA)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WTO 보조금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규제하는 자유무역협정 역시 존재하는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 등이 해당된다. 전반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은 보조금 규율에 있어 WTO 보조금협정보다 규범적으로 개선되거나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WTO 보조금협정에 비해 이를 포함하는 무역(경쟁)을 왜곡하거나 왜곡의 위협이 존재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유럽 및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농업부문의 수출보조금 금지에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이 미주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된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이 WTO 보조금 규율보다 자유무역(free trade)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NAFTA와 CUSFTA의 경우 농업부문을 제외한 공산품분야에서는 WTO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WTO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WTO에 통보된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비교한 결과, GDP 대비 보조금 비중 측면에서 중국(4.8%), 한국(0.33%), 일본(0.11%)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농업보조금의 비중이 각각 57.9%, 70.0%인 반면, 중국은 지역개발보조금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 FTA 추진시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아직 한국과 일본의 농업 현실상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협상과정에서도 농업보조금 문제에 한국 및 일본의 농민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 한국 및 일본정부는 농업보조금을 규제할 유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협정 보조금 규율과 동일한 수준의 규범이

필요하며, 비농산물 부문에서도 WTO 보조금협정과 유사한 정도의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계조사절차와 관련하여 중국의 일부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중국은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보복조치의 허용' 등 보조금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러한 남용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라. 경쟁정책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속적인 국제규범이 없는 실정이며, 일부 지역무역협정 및 양자협력협정에서도 구속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쟁정책은 국제규범의 형태가 아닌 협력분야로 취급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7년부터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하여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현재 협상개시 대상이 되고 있는 규범(안)의 주요 요소는 카르텔의 규제, 비차별성, 투명성 등 WTO 원칙의 적용, 공정한 절차, 협력 방식, 이행의무 확보 방안,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배려 등이다.

지역 내에 공동의 경쟁법이 도입된 경우는 아직 소수인바, EU 이외에 역내 공통의 경쟁정책을 적용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인 국가들은 COMESA, MERCOSUR, ANDEAN 공동체, EFTA 등이다. 경쟁정책 관련 조항은 대체로 EU 및 영연방 유형과 북미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실체규정을 포함하고 반덤핑 규정을 폐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후자의 경우 실체규정보다는 일반적인 경쟁법 도입 원칙 및 협력내용을 담고 있으며 반덤핑 규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경쟁정책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경우 실체 내용의 측면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필요설비에 대한 접근 등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통신산업은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비용이 높은 등 제약이 있으므로 주시하여야 할 산업분야이다. 유통, 건설(입찰담합) 등 특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정책 강화는 3개국 모두 필요한 과제로 보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협력 또는 공동의 학술적 연구를 추진하여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효과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절차적 협력의 부문에서는 우선 상대국의 법을 존중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낮은 단계의 협력 협정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경쟁법의 대상이 되는 실체규정은 한·중·일 모두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고 규제강도가 대체로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실체규정보다는 위에서 살펴본 대다수의 자유무역협정에서와 같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국의 경쟁법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 대한 예양을 존중하면서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협력 체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이미 일본 및 중국과 정기적으로 경쟁당국간 회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분산된 집행체계는 이러한 협의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국이 포괄적이고 통일된 경쟁법제와 집행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3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반독점법(안)의 조속한 도입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에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것도 이 과정의 가속화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본다.

마. 지적재산권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및 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

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각 영역에서 내국민 대우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지적재산권 침해 억제가 효과적인가에 주목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국의 문제제기에 대해 중국은 대외적으로 중국 국내법이 TRIPS협정의 규정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으며 TRIP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국가간 시각차이를 드러낸다.

영역별로 보면, 특허에 관해서는 출원 및 허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즉 내국민대우의 수용이 쟁점이다. 상표에 관해서는 중국이 상표법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표권 보호가 미흡하며 해외 유명상표 보호 정도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문제 있는 것으로 일본은 보고 있다. 저작권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충실히 수용되고 있지 못하고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협약, 즉 WCT와 WPPT에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공세적인 입장을 택할 것으로, 반면에 중국은 수세적인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존 조약에 대한 해석의 수준과 그 실행(특히 중국의 경우)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FTA 추진시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는 TRIPS-plus방식을 채택하여 3국이 최소한 TRIPS 협정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동조화를 이루되, TRIPS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한국 또는 중국이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표법조약,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조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일부국의 국내 지적재산권법과 TRIPS 규정과의 불합치성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국내 지적재산권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TRIPS에서 포괄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도 각국간의 집행력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의 집행부분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넷째, 지적재산권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를 설치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훈련, 집행 등을 협력 및 감독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에서 저작권분야가 각국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조약의 준수여부가 TRIPS가 규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쟁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이 지적재산권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일정한 수준까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 한·중·일 FTA 추진시 한국정부는 <표 7-1>과 같은 사항을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NAFTA 규정을 원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반덤핑의 경우 한·중·일 FTA에서 각국의 반덤핑제도가 존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반덤핑제도의 철폐를 통해 WTO 규율보다 자유무역 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허용되어야 하며, WTO규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조금 규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상계조사 관련 규정이 WTO규율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해,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부문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정책의 경우 한·중·일 3국 모두 실체규정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3국간 절차적 협력 및 공동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그 수준은 WTO 경쟁작업반에서 논의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TRIPS-Plus 방식을 채택하여 한·중·일 3국이 최소한 TRIPS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동조화를 이루되,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 관련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조약의 준수여부가 WTO규정의 Plus 부문으로 쟁점화될 전망이다.

<표 7-1> 무역규범별 추진 제안

	원산지 규정	반덤핑	보조금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추진방향	NAFTA 수준	WTO Plus	WTO 유사	절차적 협력 및 공동연구	WTO Plus
비고	서비스 산업 고려	반덤핑제도의 철폐	단, 상계조사 관련 규정 명확화 필요	현 WTO 논의수준과 유사하게	디지털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분야가 Plus

주: 2~6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리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전술한 것처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rule-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교역국과의 모든 무역행위가 법대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동시에, 법에 의해 경제체제가 운용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근대적인 요소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지방 이기주의, 행정부처간 조율 실패, 법원 및 행정 당국의 자원 부족 등 각종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법과 중앙정부의 의도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점과 '국가중심적 집행'이 주된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단속과 보상에 대한 법적 집행이 정부(특히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정부의 자의성에 의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미국 및 EU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범준수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각종 시장개방양허와 무역규범분야 등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한 중국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WTO에 가입한 역사가 짧아 다자체제에 대한 적응 여부 역시 의문이다. 특히 WTO규범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 국내법규와 WTO규범과의 조화가 중국의 WTO 가입 후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중·일 FTA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WTO규범과의 부합성을 강조하고, 규범의 명확화 및 개선에 협상력을 집중하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를 이용한 법적 구속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론〉

국문자료

채 훈. 2003. 8. 1.「우리경제와 FTA추진 필요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정책세미나: FTA 정책 종합토론회. 서울.

〈원산지 규정〉

국문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정책연구 94-05.

송유철. 1997.「WTO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방향과 대응과제」.『WTO 주요논의동향과 대응과제』. 정책연구 97-13.

통상산업부・한국무역협회. 1997.「WTO/WCO 원산지 규정 협상대책자료」.

한국무역협회. 1994.「NAFTA 원산지 규정해설」. 국제 94-16

한국무역협회. 2002.「WTO 통일원산지 규정 해설」.

한홍렬. 1992.『원산지 규정』. 정책연구 92-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문자료

Asakura, H. “The Harmonized System and Rules of Origin.” *Journal Of World Trade,* Vol 27, No. 3.

Business Week. Various issues.

Falvey, Rod and Geoff Reed. 1998. “Economic Effects of Rules of Origin.” *Weltwirtshaftliches Archiv,* 134(2).

Falvey, Rod and Geoff Reed. 2002. “Rules of Origin as a Commercial Policy Instrumen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3(2).

Hoekman, B. 1993. “Rules of Origin for Goods and Services- Conceptual Issues and Economic Considerations.” *Journal Of World Trade,* Vol 27, No. 4.

Inside US Trade. Various issues.

Ishikawa, Jota, Yoshihiro Mizoguchi, and Hiroshi Mukuniki. 2003. “Economic Integration and Rules of Origin under International Oligopoly.” NBER.

Kingston, E. V. 1994. “The Economies of Rules of Origin.” In E. Vermulst, P. Waer, and J. Bourgeois eds.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Ann Arbor, Mi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almeter, N. D. 1993. “Rules of Origin in Customs Unions and Free Trade Areas.” In K. Anderson and R. Blackhurst eds.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Harvester Wheatheaf.

_____. 1994. “Rules of Origin in the United States.” In E. Vermulst, P. Waer, and J. Bourgeois eds.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Ann Arbor, Mi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Stephenson, S. M. and W.E. James. 1995. “Rules of Origin and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Vol 29, No. 2.

Waer, P. 1994. “European Community Rules of Origin.” In E. Vermulst, P. Waer, and J. Bourgeois eds.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Ann Arbor, Mi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WTO. “Report to the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G/L.

_____. “Report to the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to the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G/RO.

_____, “Integrated Negotiating Text for the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G/RO/41.

<반덤핑>

외국문자료

Ahn, D. K. 2002. “Comments on Legal Issues for Antidumping Negotiations.”『WTO DDA 제6차 반덤핑 민관합동 대책반 회의』. 산업자원부.

Anderson, J. 1992. “Domino Dumping I: Competitive Exporters.” *American Economic Review*, 82, 65-83.

Anderson, J. 1993. “Domino Dumping: Antidumping.”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5. 133-150.

Barros, P. and L. Cabral. 1994. “Mergers Policy in Open Economies.” *European Economic Review*, 38. 1041-1055.

Chae, W. 1996. “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KIEP Working Paper No. 96-05.

Clarida, R. 1993. “Entry, Dumping and Shakeout.” *American Economic Review*, 83.

180-202.

Collie, D. 1991. “Export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Tariff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1. 309-324.

Deardorff, A. and R. Stern. 1987. “Current Issues in Trade Policy: An Overview.” In: R. Stern ed. *U.S. Trade Policie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Cambridge: MIT Press.

Dixit, A. 1988.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under Oligopoly.” *European Economic Review*, 32. 55-68.

Grace, D. R. A. Herwig and Y. Feng. 2003. “China’s Antidumping Regime: An Increasingly Costly Element of Doing Business in China.” *World Trade Magazine.* 2003. 3. 1.

Hoekman, B. 1998. “Free Trade and Deep Integration: Antidumping and Antitrust in Regional Agreements.” World Bank Working Paper No. 1950. World Bank.

Huang, T. W. 2002. “The Gathering Storm of Antidumping Enforcement in China.” *Journal of World Trade*, 36. 255-283.

Kermit, W. A. and P. M. Norton. 2000. “China’s Antidumping Laws and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34. 75-113.

Komuro, N. 1997. “Evolution of Japan’s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World Competition*, 21. 5-49.

Marceau, G. 1995. “The Full Potential of the Europe Agreements: Trade and Competition Issues.” *World Competition*, 19. 35-69.

Mavroidis, P. C. 1996. “The Treatment fo Dumping, Subsides and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ent.” Mimeo. University of Neuchatel.

Morkre, M. E. and K. H. Kelly. 2002. *Quantifying Causes of Injury to U.S. Industries Competing with Unfairly Traded Imports: 1984 to 1994.* Washington, D.C: Bureau of Economics, Federal Trade Commission.

Messerlin, P. A. 2002. *China in the WTO; Antidumping and Safeguards.*

Ordover, J. and R. D. Willig. 1986. “Perspectives on Mergers and World Competition.” In R. Grieson ed. *Antitrust and Regulation.* Lexington MA: D.C. Heath.

Prusa, T. J. 2001. “On the Spread and Impact of Anti-Dumping.”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4, 591-611.

Staiger, R. W. and F. A. Wolak. 1994. “Measuring Industry Specific Protection:

Antidumping in the United State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acroeconomics*, 51-118.

USITC. 1995. *The Economic Effects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and Suspension Agreements.* Washington, D.C: USITC.

Willig, R. D. 1996. "The Economic Effects of Anti-dumping Policy." DAFFE/CLP(96)4. Paris: OECD.

<보조금 및 상계관세>

국문자료

강문성・노재봉・이종화. 2002.『DDA 규범협상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WTO 협동연구시리즈 20.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준조. 2001.『중국의 WTO 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산업피해구제관련 법규집』. 서울: 산업자원부.

정혜원・탁지현. 2002.「전환기 경제체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적용에 대한 연구」.『계간 무역구제』2002년 겨울호. 서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최낙균 외. 2000.『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WTO 협동연구시리즈 6.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1998.『일본 반덤핑・상계관세법 해설』. 통상자료 89-7. 서울: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2002.『WTO 가입후 중국의 무역장벽 변화』. 무역연구보고 02-1-06. 서울: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외국문자료

Almstedt, Kermit and Patrick M. Norton. 2003. "China's Anti-Subsidy Regulations: The Latest Weapon in China's Trade Law Enforcement." *Topics in Chinese Law.* (April)

Bagwell, Kyle and Robert W. Staiger. 2002. *The Economics of the World Trading System.* Cambridge, MA: The MIT Press.

Brander, James A. 1995. "Strategic Trade Policy." In Gene M. Grossman and Kenneth Rogoff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II.* Amsterdam: Elsevier.

Brander, James A. and Barbara J. Spencer. 1985. "Export Subsidies and Market Share Rival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8: 83-100.

Croome, John. 1999. *Guide to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EIU. 2003. *Country Profile 2003: China.*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Kang, Moonsung. 2000.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KIEP Working Paper 00-11. Seoul: KIEP.

Magnus, John. 2000. "Subsidies in the Context of China's WTO Accession." *Presented at the ABA Program: What's New on Subsidies. (*June 6)

Mas-Colell, Andreu, Michael S. Whinston, and Jerry R. Green. 1995. *Microeconom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OECD. 2003.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aris: OECD.

Schott, Jeffrey J. 1994. *The Uruguay Round: An Assessment.* Washington, D. 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USTR. 2003. *Subsidies Enforcement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2003.* Joint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n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Vermulst, Edwin and Eolkert Graafsma. 2002. *WTO Disputes: Anti-Dumping, Subsidies and Safeguard.* London: Cameron. (May)

WTO. 1999. *The Legal Texts: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경쟁정책>

국문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1.『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_____. 1999.『미국・EU・독일・일본의 경쟁법 비교・분석』. 공정거래위원회 학술용역보고서.

김양희・조병택. 2002.『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경쟁정책적 접근』. 정책연구 02-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오승환. 2002.『자유경쟁과 공정거래』.

윤미경. 2000.「무역과 경쟁정책」. 윤창인 편저.『WTO 新通商義題 영향분석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한국공정거래협회. 2002.「공정거래관련법규집」.

_____. 2001.「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공정거래제도 교육자료.

허선 & 김대영. 2001.「중국 시장경제의 완성: 경쟁법 도입」.『월간 KIEP 세계경제』, 2001년 12월호. pp. 106~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문자료

Davies, Stephen, and Bruce Lyons 1996. *Industrial Organization in the European Union.* Clarendon Press. Oxford.

Hoekman, Bernard and Hiau Looi Kee 2003. "Imports, Entry and Competiiton Law as Market Disciplines."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No. 3777.

_____. and Petros C. Mavroidis 2002. "Economic Development, Competition Policy and the WTO."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917.

Jung, Youngjin & Qian Hao. 2003. "The New Economic Cooperation in China: A Third Way for Competition Regime?" Manuscript.

Mirza, D. 2003. "How Much Trade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Market Structure." Research Paper Series: Globalisation, Productivity, and Technology. Research Paper 2003/04. The Leverhulme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sation and Economic Policy.

Neven, Damien and Peter Seabright 1997.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Coordination of Competition Policy: Modalities for Cooperation." In *Waverman, L, W. S. Comanor and A. Goto eds. Competition Policy in the Global Economy.* Routeledge: London and New York.

Working Party of the Trade Committee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ompetition." TD/TC/WP(2002)19/FINAL.

Snell, Steven L. 1996.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Polic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28, No. 3. pp. 575-635.

〈지적재산권〉

국문자료

권규우. 2001.「최근 주요 지재권 외교활동 및 국제 동향 -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의 WIPO 총회논의 등」.『지식재산 21』, 2001년 9월호.

김병학. 2002.「무역관련 지적재산권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41호. 2002.
김재덕. 2001.「일본에서의 국제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전략」.『지식재산 21』, 2001년 9월호.
김준희. 2001.「중국 지적소유권의 발전과 WTO와의 전망」.『통상법률』, 2001-12. 법무부.
김홍진. 2001.「지적재산권 관련 한・미간 통상마찰」.『세계경제』, 2001년 1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WTO출범과 신교역질서: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DDA협상 총점검』.
紋谷暢男・윤선희.『WTO, TRIPS협정과 국내실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창권.『TRIPs와 통상정책』
박준우.「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의 한계에 관한 소고. -협상과정과 공개정보보호상의 한계를 중심으로」.
박진석. 2001.「뉴라운드 출범과 TRIPS협정의 과제 -TRIPS 기설정의제와 신규의제를 중심으로」.『지식재산 21』, 2001년 9월호.
성기철. 2003.「지식재산권 DDA협상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지식재산 21』, 2003년 1월호.
송상현・정상조. 199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지적소유권 관련규정에 관한 고찰」.『법학』, 34권 2호(9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심은교. 2004. 2.「한・중・일 삼국 경제협력에서 지재권 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논문.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이석용.『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이행조치』. 한남대.
이여송 편저. 2003.『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효영.『WTO체제와 개도국- 국제규범 조화의무와 그 반대급부에 대한 평가와 함의』.
장만철.「일본특허제도」. 국제특허연수원 자료.
장완호. 1998.「TRIPS의 대내적 영향과 대응방안」.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전상우. 2002.「한・미 특허제도 비교연구」.『지적재산 21』. 2002년 7~9월호.
조수정. 2003.「WTO/TRIPS 협정 쟁점 및 대응」. KIEP IP모임 발표문.
최낙균 외. 2001.『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홍배. 2001.『중국의 WTO가입과 특허법 개정에 관한 고찰』.『통상법률』, 2001-12. 법무부.
특허청 20년사 발간위원회 편. 1997.『특허청 20년사: (1977～1997)』.
특허청 관리국 제도과 편. 1997.『각국산업재산권제도 편람』.
특허청. 1993.『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 추진경위, 내용 및 앞으로의 대책』.
특허청. 1999.『지식재산권 국제 동향 및 전망 : 양자 및 다자차원의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특허청. 특허청연보. 각 연도.
WTO 사무국 편. 김의수 역. 2000.『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문자료

伊從寬 外編. 2002.『APEC諸國における競爭政策と經濟發展』. 中央大學出版部.
「日本 知的財産制度關聯資料」
日本特許廳 編.「特許行政年次報告書」. 發明協會.
井出直孝 著. 1992.『研究開發と特許戰略: 知的財産權時代の勝ち殘り策』. 工業調査會.
佐佐木一芳 編. 2000.「日米知的財産權問題アップデイト2000 = U.S.-Japan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updated 2000」. アイ・エル・エス出版.
知的財産研究所 編.「21世紀における知的財産の展望」. 知的財産研究所10周年記念論文集.
志村史夫 著. 1993.『ハイテク國家・日本の「知的」選擇』. 講談社.
椎名素夫 編. 1994. (ワ-ルド・ワイド)知的財産權 激突から大調和へ:「日米歐技術戰略セミナ-」. は報告する. ダイヤモンド社.
Manoj L. Shrestha 著. 1996.『企業の多國籍化と技術移轉: ポスト雁行形態の經營戰略』. 千倉書房.

冯晓青. 2001.『企业知识产权战略』. 北京: 知识产权出版社.
国家知识产权局. 2002.『中国知识产权年鉴 2001/2002』. 北京: 知识产权出版社.
经济日报 2003. 5. 17.
孔 平. 2000.『面向21世纪的中国知识产权问题』. 北京: 知识产权出版社.
刘春田. 1998.『中国知识产权二十年(1978～1998)』. 北京: 专利文献出版社.
麻剑辉・柯冬英. 2002.「知识经济下的日本知识产权保护及对我国的借鉴意义」.『现代日本经济』, Vol. 122, No. 2.

王景川. 2003.「深入学习贯彻十六大精神 全面开创知识产权事业新局面 在全国知识产权局局长会议上的讲话(2002. 12. 12)」.『知识产权』, 2003年 第一期.

张晟义・刘心鸣. 2003.「论"三个代表"对我国知识产权制度建设的重大意义」.『理论前沿』, 2003年 第一期.

郑成思・韩秀成. 2002.『知己知彼 打赢知识产权之战 中国"入世"知识产权纵横谈』. 北京: 知识产权出版社.

中国高新技术导报. 2003. 6. 13.

中国工业报. 2003. 3. 20.

中国经济时报. 2002. 9. 13.

中国汽车报. 2002. 12. 24.

中国知识产权报. 2003. 3. 24.

Atkinson, Glen. 1998. "Regional Integration in the Emerging Global Economy: The Case of NAFTA."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35, No. 2.

Chaudhry, Peggy E., Michael G. Walsh. 199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nging Levels of Protection Under GATT, NAFTA and the EU."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ummer)

Chen, Jiwen. 2001. "China protects integrated circuit designs." *The China Business Review,* pp. 22-25. (Nov/Dec)

Chen, Jiwen. 2001. "The amended PRC patent law." *The China Business Review,* pp. 38-41. (Jul/Aug)

Chow, Daniel C. K. 2000. "Counterfei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Vol. 78, No. 1.

Clark, Douglas. 2000. "IP rights protection will improve in China eventually." *The China Business Review,* pp. 22-29. (May/Jun)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02. "Integr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Policy."

Drahos, Peter. 1997. "Thinking strategically about IPR." *Telecommunication Policy,* Vol. 21, No. 3.

Eby-Konan, D., La Croix, S. J., Roumasset, J. A. and Heinrich, J. 199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Asian Pacific Region: Problems. Patterns and Policy." *Asian Pacific Economic Literature 4,* pp. 1-25.

Ganguli, Prabuddha. 199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ransition." *World Patent*

Information 20.

Ganguli, Prabuddha. 200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eratives for the Knowledge Industry.” *World Patent Information 22.*

Gould, David M. and William C. Gruben. 1996.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conomic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8.

Groombridge, Mark A.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Clarisa Logn 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merging Markets*, pp. 11-46. Washingt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Helpman, Elhanan. 1993. “Innovation, Imitation and IPR.” *Econometrica*, Vol. 61, No. 6.

ICTSD. 2003. *UNCTAD-ICTSD Project on IPR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JPO. 1999. *History of Japanese Industrial Property System.*

Kotabe, Masaaki. 1992. “A Comparative Study of US and Japanese Patent Syste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3, issue 1.

Kumar Kumar. 200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Asian Countries.*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ll Sanjaya. 2003. “Indicator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IPRs in Developing Countries.” *Research Policy.*

Lehman, Bruce. 1996. “IP: America’s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21st century.”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Lesser, W. 2001. “The effects of Trips-mand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conomic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Cornell University Paper.*

Lippoldt, Douglas. 200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OECD..

Maskus and Penubarti. 1995. “How Trade-related are IP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9.

Maskus *et al.* 2003. Patent Rights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Through Direct Investment and Licensing.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International Public Goods and the Transfer of Technology after TRIPS.” Duke University Law School, April 4-6, 2003.

Maskus, Keith E. 1997. “Implications of Region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orld Economy,* Vol. 20, No 5.

Maskus, Keith E. 200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Global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skus, Keith. 200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IES Policy Discussion Paper.*

Moga, Thomas T. 2002. “The TRIPS Agreement and China.” *The China Business Review,* pp.13-18. (*Nov/Dec*)

OECD.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ECD. 2003.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otter, Pitman B. and Michel Oksenberg. 1999. “A Patchwork of IPR Protections.” *The China Business Review*, pp. 8-11. (Jan/Feb)

Scotchmer Suzanne. 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llectual Property Treaties.*

Simone, Joseph T. 1999. “Countering Counterfeiters.” *The China Business Review*, pp. 12-19. (Jan/Feb)

Taylor, M. Scott. 1993. “TRIPS, Trade and Technology Transfer.”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26, issue 3.

Taylor, M. Scott. 1994. “TRIPS, Trade and growth.”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35, issue 2.

Trainer, Timothy P. 2002. “The Fight against Trademark Counterfeiting.” *The China Business Review*, pp. 21-24. (Nov/Dec.)

USTR. 200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Vick, John. 1994.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of NAFTA and GATT: An Update. TEX. INTELL. PROP. L. J. Vol 2.

Vivas-Eugui, David. 2003. *Regional and Bilateral Agreements and a TRIPS-plus World: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FTAA).* ICTSD.

WIPO.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PO. Field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WIPO.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WIPO.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Development and WIPO’s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Yang and Maskus. 2003. “IPR, Licensing and Innova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www.kipo.go.kr.

www.jpo.go.jp.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www.wipo.org.
www.sipo.gov.cn.

부 록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부표 1> 한·중·일 경쟁법 비교: 실체규정

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다음행위를 금지.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이나 용역 공급의 부당한 수량조절 ③ 타사업자 사업활동의 부당한 방해 ④ 신규사업자 진입의 부당한 방해 ⑤ 경쟁사업자의 부당한 거래배제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사업자(개별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사업자 제외).	과징금: 매출액의 **3%**, 매출액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병행부과 가능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을 금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①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당해 거래에 관계되는 상품 또는 용역 이외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토록 하는 행위 ② 이들에 대해 자기를 위하여 금전, 용역 기타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③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⑤ 거래 회사에 대해 당해 회사의 임원선임과 관련해 사전에 자기 지시를 따르게 하거나 자기의 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연간 국내공급액 **1000**억 엔 이상, 1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또는 2사 시장점유율 합계 **75%** 이상.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엔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8**가지 유형의 남용행위 금지 ① 높은 독점가격 ② 약탈적 가격 ③ 차별대우 ④ 거래의 거절 ⑤ 강요된 거래 ⑥ 불합리한 거래조항의 부과 ⑦ 배타적 거래 합의 ⑧재판매가격의 유지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별 시장점유율 **1/2** 이상인 사업자, 2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3** 이상인 사업자,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4** 이상인 사업자.	

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기업결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 강요 및 기타 불공정한 방법의 기업결합 금지. **기업결합 행위**: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소유, 임원지위 겸임, 합병, 영업 양수·임차, 경영수임.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에 있어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경쟁 제한 판단 기준**: ① 결합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며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인 동시에 그 합계 시장점유율이 시장점유율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 25%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 ②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으로, 그 시장의 5% 이상을 점할 경우. 면제대상: 당해 기업결합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의 자본잠식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기업결합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신고의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계열사 포함)이 천억 원 이상 기업. 대상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적용제외.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병행부과 가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 **기업결합 행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주식의 보유 및 취득, 임원겸임 또는 합병,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영업의 양수, 임차, 경영의 수임, 계약체결. **경쟁 제한 판단 기준**: 금융업 이외의 자본으로 350억 엔 이상 또는 순자산이 1,400억 엔 이상인 주식회사가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가 자기자본액에 상당하는 액 또는 순자산에 해당하는 액 중 많은 쪽의 액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인가 및 신고의무**: 대형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의무, 금융회사의 주식보유 경우 1년 이상 5%초과 소유의 경우는 사전인가 의무.	**벌금 및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집중통제에 관한 기본규칙을 규정, 회사결합을 초래하는 조치들을 금지. **기업결합 행위**: 합병, 주식·자산 매입, 합작투자. 승인 의무화: 규모의 경제를 위해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장경쟁 제한 혹은 제거하는 경우, 국가경제의 건전한 개발을 저해하는 경우,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불허. **특별승인**: 특정 부문에서의 경쟁을 제한 또는 제거하는 것이 국가이익 혹은 공익에 이득이 되는 경우.	**벌금 및 징역**: 10만 위안-천만 위안의 벌금 부과.

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경제력집중 억제 (기업집단 지정)	공정위가 해당 기업집단 지정. 대상 기업집단은 주주 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 타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 내부거래(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 원 이상) 공시 제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필수. **기업집단 설정기준**: 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은 제외).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병행부과 가능				
지주회사 설립	지주회사 신고제도.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자회사 주식을 5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손자회사 소유행위 등을 금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채무보증 해소 전에는 지주회사가 될 수 없음.	과징금: 자본총액 초과 부채액의 10% 이내. (미달보유 주식비율/자회사보유 주식비율)*주식장부가격	자회사 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다른 국내회사를 칭함. 자사 및 그 자회사의 총자산의 합계액이 3천억 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취위에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상호출자	계열회사의 주식 상호 보유 금지. 합병,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의 경우는 제외.	과징금: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법규	한국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 (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출자총액	순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다른 국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신주 취득,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우, 관리절차중인 기업,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투자 및 정부출자기관 인수 경우 등은 한시적으로 제외.	과징금: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채무보증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조세특례법에 의한 보증, 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경우는 제외.	과징금: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 이내.				
금융회사 의결권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자사 소유 비금융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능. 금융업, 보험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의 경우만 의결권 행사 가능.					

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부당한 공동행위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 ① 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 그 상품의 종류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⑧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위법요건**: 실질적 경쟁 제한 효과 없어도 합의 자체가 위법. 명시적 합의 증거 없이 정황적 증거만으로도 법적용 가능(추정요건 도입). **예외**: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경우 면제. 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과징금**: 매출액의 5%,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10억원 이내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병행부과 가능	사업자와 결합, 통모,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거나 지배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담합과 부당한 거래제한(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가를 결정, 유지 또는 인상하거나 수량, 기술, 제품, 설비 또는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을 금지.	**과징금**: 카르텔의 경우 실행기간 매출액의 6/100이며, 도매업의 경우 1/100, 소매업의 경우 2/100. **벌금 및 징역**: 200만 엔 이하의 벌금.	경쟁을 재한 또는 제거하고자 독점 합의하는 사업자는 위법. 6가지 형태의 독점적 합의 금지. ① 가격고정 ② 공모 ③ 수량제한 ④ 시장할당 ⑤ 신기술 혹은 신설비 구입제한 ⑥ 공동거래 방해. **위법요건**: 합의의 모든 반경쟁적 영향 및 효율성·이익 등 결정적 요소를 고려. **예외**: 국가경제발전 및 공익에 혜택이 되는 경우 적용예외.	**벌금 및 징역**: 10만-5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가능.

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불공정 거래 행위	- 공동행위가 아닌 사업자 일방에 의한 행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경우를 제재 -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상대방 차별, 부당한 경쟁자의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거래지원.	과징금: 해당 매출액의 2%,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이내.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병행부과 가능.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정의된 행위. 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② 부당하게 대가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또는 강제하는 것 ④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 ⑤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 ⑥ 자기 또는 자기가 주주 또는 임원인 회사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당해 사업자가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을 그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부당하게 유인, 교사 또는 강제하는 것.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수 제한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방조행위 금지.	과징금: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5억 원 이내, 참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제로 제한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제한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키도록 하는 행위 금지.			

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재판매가격 행위	**금지.**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저작물 또는 동일품질 판별 용이 상품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자유경쟁인 상품은 공정위의 사전지정 및 고시 이후 허용.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계약내용의 수정을 공정위가 명할 수 있음)	**과징금:** 해당 매출액의 2%,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병행부과 가능.	판매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판매 상대방인 사업자와 그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적용하지 않음. 단, 재판매가격 지정 인정요건으로 상품이 일반 소비자에 의해 일상적으로 상용되어야 하며, 상품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이 행해져야 함.			
기타	**국제계약:** 업자·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됨. 그러한 국제계약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위 인정 경우 예외.	**과징금:** 해당 매출액의 2%,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병행부과 가능.	**국제계약:** 부당한 거래제한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 금지.	**과징금:**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에 6/100 (도매업의 경우 1/100, 소매업의 경우 2/100)을 곱하여 얻은 액에 상당하는 금액. **벌금 및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행정적 독점 규제:** 크게 산업독점과 지역독점으로 구분. 정부행위를 5개 범주로 나눠 금지. ① 특정 사업가로부터 구매를 강요하거나 혹은 사업자의 합법적 사업행위를 제한하는 차별적 관행 ② 지역독점 ③ 부서 및 산업독점 ④ 사업자로 하여금 시장경쟁의 제한 혹은 제거를 위한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 ⑤ 정당한 경쟁의 제한 혹은 제거를 위한 규정 입안.	

<부표 2> 한·중·일 경쟁법 비교: 집행체계

집행체계	한 국	일 본	중 국
행정절차	**공정위 권한 및 행정절차**: 직권조사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 개시. 당사자에게 조사결과 서면통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 가능.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위촉권한. 기업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및 영치 권한.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확보 권한.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에 대한 일정한 조건하에 금융거래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 **재재수단**: 모든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 및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 시정권고, 각 위반행위에 특정한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징수 권한. 조사 불응 및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천만 건에서 2억 원 사이의 과태료 부과가능.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종 신고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사대상자의 권리보장**: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명령 이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복사 등이 가능.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내에 재결해야 함.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공정위 시정명령은 집행정지될 수 있음.	**공정위 권한 및 행정절차**: 신고, 직권에 의해 심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두 및 심문 가능, 감정인의 출두 및 감정 가능,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로 하여금 당해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권한, 사건관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입회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 **재재수단**: 위법상태의 배제 및 적당한 조치 권고. 각 위반행위에 특정한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징수 권한.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허위진술 및 감정에 대해서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부과, 검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 각종 신고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 **조사대상자의 권리보장**: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명령 이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공정위 권한 및 행정절차**: 독점정책 및 규정 발포, 반독점 조항과 관련된 문제 조사, 승인조항을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 반독점법 위반사례 조사 및 처리, 위반사항 보고의 지속. 한편 경쟁당국에 대한 사법검토를 규정, 이에 의거해 이해 당사자들은 행정처벌에 대해 일반적 사법검토제도에 호소할 수 있음.

집행체계	한 국	일 본	중 국
사법절차	**공정위 전속고발**: 심각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공소제기 이후에는 고발 취하 불가능. 과징금에 더해 손해배상과 벌칙이 중복 부과 가능(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가능).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통지 30일 내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비밀정보보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 누설 및 공정거래법 시행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조사상에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 비밀누설 위반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 금융정보 누설위반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공정위 전속고발**: 주요한 독금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사법절차는 소극적 절차만 있음) **비밀정보보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업자의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 혹은 도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사소제도(Private Civil Suit), 행정소제도(Administrative Suit against Government), 형사처벌(Criminal Prosecution)의 강한 집행수단 규정. 사업자 혹은 소비자의 법적 권리 및 이익이 독점적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탄원 가능. 반독점법을 위반한 사업가들로부터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 피해자들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리(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행정독점에 의한 행정탄원도 포함). 형사처벌은 책임 있는 공무원에 의한 행정독점에 적용되며, 시장독점적 지위가 행정처벌에 귀속된다고 규정.

Executive Summary

An Analysis on Trade Rules of Korea, Japan and China: Implications on an FTA among Three Countries

Moonsung Kang, Yoo Cheul Song, Soon-Chan Park,
Mikyung Yun, and Keun Lee

This research has analyzed trade rules of Korea, Japan and China, focusing on rules of origin,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competition poli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provide implications on an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Rules of Origin>

This book suggests that an FTA among Korea, Japan and China invoke a clause of rules of origin i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It is because structural and complementary relations among U.S., Canada and Mexico are very similar to those among Korea, Japan and China. In case of invoking the NAFTA clauses, it is needed to develop a negotiation strategy to the extent of considering the current and futur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and restructuring industries without any comparative advantage.

<Antidumping>

This paper argues that establishing common antitrust disciplines in FTAs is

not the precondition for the abolishment of antidumping. Examining the cases investigated by the Chinese authority, we show that antidumping is simply used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not to establish the level playing field or fairness. We consider two options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antidumping measures on establishing an FTA among Korea, Japan and China; either abolishing antidumping rules or stipulating WTO-Plus rules. In particular, even though the Chinese antidumping rules have been improved significantly with the accession to the WTO, there remains much rooms for further improvement.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re are a few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at have attempted to go beyond the WTO disciplines in the area of subsidies.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an RTA among Korea, however, China and Japan, discipline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hould be as stronger as those contained in the WTO because China is considered as being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from a centrally-planned into a market, free-enterprise economy, enjoying special treatments. In addition it would be inevitable to allow agricultural subsidies in the disciplines on subsidies because Korea and Japan have been providing a high proportion of state aids to the agricultural sector. Korea should emphasize harmonization of disciplines on subsidies with those contained in the WTO because in some aspects current Chines disciplines on subsidies are not compatible with those contained in the WTO.

<Competition Policy>

One of the key observations is the widespread use of competition-related provisions in RTAs. Amongst those RTAs, NAFTA would provide valuable implications to an FTA among Korea, Japan and China because NAFTA is an FTA among countries with various stages of competition laws. Specially NAFTA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Mexico to adopt and improve competition laws. As NAFTA also has disciplines to regulate anti-competitive conducts of state enterprises, those clauses should be considered in negotiating an FTA among Korea, Japan and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 Japan and China need to adopt a TRIPS-Plus approach to set disciplin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by harmonizing rules on IPRs among the three countries when they negotiate an FTA. In addition, Korea and Japan need to recommend China to sign several treaties related to IPRs that the two countries have already joined but China didn't yet. Each country should be also asked to improve enforcement of protecting IPRs in a transparent and logical manner. Specially the three countries need to harmonize patent laws which is the key of IPRs system.

KIEP 발간자료 목록 (1997～2003. 12)

■ 정책연구

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 王允鍾

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 王允鍾 編著

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碍要因과 促進方案 / 金準東

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 崔秀雄

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唆點 / 金鍾範

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 李鍾華・李晟鳳

97-07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 王允鍾・羅秀燁

97-08 中國經濟의 浮上과 韓國의 對應 / 李昌在 外

97-09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 金南斗 外

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 趙明哲

97-11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 鄭余泉

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 金元鎬 外

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 金寬澔 外

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 趙顯埈

98-0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層報告① / 張亨壽・王允鍾

98-02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 李章揆 外

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 王允鍾・金琮根

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 權泰亨 外

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 成克濟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 王允鍾 編

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柳在元・李弘求

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李昌在 外

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 李晟鳳・李炯根

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 李晟鳳 外

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張亨壽・李昌在・朴映坤

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 崔秀雄

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展開方向 / 徐錫興

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 Byung-il Choi・Eun Mee Kim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 張亨壽・元容杰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鄭仁敎

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硏究 / 金寬澔・李性美

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 尹昌仁

98-19 中・東歐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현황과 전망 / 鄭余泉・崔秉熙・韓貞澈

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 趙明哲・洪翼杓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 全載旭・崔義炫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 曺琮和 編

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 金元鎬 編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 金博洙・王允鍾・申東和・李炯根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 王允鍾・鄭在完・金琮根・李鴻培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 曺琮和 編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 / 安炯徒 編著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1]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 / 李昌在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2]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 鄭仁敎 外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金益洙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 崔秀雄

99-1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Ⅱ(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2] / 黃祥仁・王允鍾・李晟鳳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3]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 李晟鳳 外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4]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 王允鍾 外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 崔洛均・蔡 旭・金準東・宋有哲・尹美京・徐暢培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 金準東・姜仁洙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 鄭余泉

00-04 WTO 뉴라운드 工産品協商의 시나리오별 實證分析과 韓國의 協商戰略 / 崔洛均・李明憲・朱文培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 琮・李障源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의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 鄭仁敎・李景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 金準東 · 蔡 旭 · 梁俊晳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 趙明哲・權 栗・李哲元・金恩志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 / 金世稙・楊斗鏞・王允鍾・黃祥仁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 尹昌仁 外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 趙明哲・洪爽杓

00-13 WTO 뉴라운드協商의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 蔡 旭・崔洛均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 尹昌仁・韓宅換・庾相喜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 李鍾華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 宋有哲・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 南相烈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敎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 黃祥仁・金寅培・辛仁錫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敎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金尙謙・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 曺琮和・金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 梁俊晳・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 尹德龍・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李鍾華・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 蔡 旭・徐暢培

02-01 DDA 총점검－2002 / 崔洛均 外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宋有哲・朴芝賢・李載玉・林頌洙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高俊誠・具文謨・朴淳讚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 崔洛均・鄭在皓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 姜文盛・魯在峯・李鍾華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 尹美京・崔允僖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南相烈・權 栗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崔洛均・朴淳讚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 姜三模・王允鍾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姜文盛・羅秀燁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 尹德龍・鄭在植・曺琮和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李彰洙

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金良姬・趙炳澤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 池晩洙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 權 栗・金玧慶

02-16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 趙顯埈

02-17 1990년대 이후 韓・美간 무역구조의 변화 / 梁俊晳・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 尹德龍・鄭衡坤・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李昌在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 朴大權・楊斗鏞・吳奎澤・金恩京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 李鴻培

02-26 북한경제백서 / 趙明哲 外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 申寬浩・王允鍾・李鍾和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 姜三模・朱尙榮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 洪裕洙・李彰洙・姜丁實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 安炯徒 外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 地晩洙・李 榮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 洪裕洙・池晩洙・韓正和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 鄭仁敎・吳東胤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權 栗・鄭仁敎・朴仁元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 李鴻培・金良姬・金恩志・程 勳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曺琮和・李炯根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 姜文盛・金元鎬・朴淳讚・全鍾奎・權奇洙・金眞梧・羅秀燁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 安炯徒・尹德龍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 趙明哲 外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 趙明哲 外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 趙明哲

03-16 DDA 중간점검 - 2003 / 崔洛均 外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 宋有哲 外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 金準東・鄭永虎・崔秉浩・安德宣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崔洛均・鄭在皓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李彰洙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 尹美京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 金準東・金鍾一・姜俊求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鄭仁敎 外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宋有哲・尹美京・李 根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 楊斗鏞 外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 申寬浩・楊斗鏞・王允鍾・李鍾和

03-27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 鄭仁敎 外

■ 지역연구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 金興鍾・金良姬・朴英鎬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 金興鍾・李哲元・朴映坤・朴慶錫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 李章揆・趙顯埈・吳東胤

03-04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鄭在完・權耿德

■ 조사분석

97-01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 朴相守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 鄭在完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 鄭在完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 李哲元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 徐承源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 鄭在完・權耿德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 李聖揆・崔秉熙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 金完仲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 崔義炫

97-10 WTO 紛爭解決事例 硏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硏究 / 蔡 旭

97-11 WTO 紛爭解決事例 硏究: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 李鎬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 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 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 金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 朴月羅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投資 制度 / 李炯根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 羅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 鄭仁敎・李昌在 編著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 趙潤濟・金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 鄭聖哲・李明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 李載裕・李載榮

98-0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 朴泰鎬・文宇植・白珍鉉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 孫正植・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 蔡 旭・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金裕燦・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②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李晟鳳・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 金琮根

00-01 透明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 朴映坤・金于珍・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 梁俊晳・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 金元鎬・姜文盛・羅秀燁・金眞梧

00-04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 安炯徒 外

00-05 國際協力體 설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 張亨壽・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 鄭在完

01-02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 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 朴英鎬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 孫讚鉉・尹眞那

01-04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 宋有哲・朴芝賢

01-05 韓・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金良姬・金鍾杰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 鄭余泉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 權奇洙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 權 栗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 金眞梧

01-10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李哲元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 尹美京・李性美

01-12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 趙明哲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 洪翼杓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 姜文盛・羅秀燁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朴英鎬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 宋有哲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 李奎億・尹美京

02-05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영국・스웨덴・이탈리아를 중심으로 / 朴映坤・尹錫明

■ Policy Analyses

00-01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is / Tae-Joon Kim, Jai-Won Ryou, and Yunjong Wang

00-0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Sangyoung Joo, and Doo Yong Yang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2-01 Currency Union in East Asia / Han Gwang Choo and Yunjong Wang

02-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 Inkyo Cheong

02-03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 Sammo Kang,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2-04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 Chan-Hyun Sohn

03-01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 Issues / Sung Yeung Kwack, Choong Yong Ahn, and Young-Sun Lee

03-02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 Nakgyoon Choi, Soon Chan Park, and Changsoo Lee

■ Policy Papers

97-0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Inkyo Cheong

97-02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 Honggue Lee and Jai-Won Ryou

97-03 Northeast Asia's Transbound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 / Sang-Don Lee and Taek-Whan Han

98-01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eds.

98-02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December 1997 - June 1998) / Yunjong Wang and Hyoungsoo Zang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00-01 南北經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 趙明哲

00-02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 李鍾華 · 李東輝 · 趙泓植

01-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 孫讚鉉 編

01-02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 孫讚鉉 · 尹眞那

01-0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 孫讚鉉 編

01-04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 姜文盛 · 羅秀燁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 李晟鳳 · 沈相烈 · 王重植

01-06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 李鍾華

03-01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과제 / 李晟鳳 · 金寬澔 · 金仁夙

■ 행사결과보고/Conference Proceedings

97-01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 Young-Rok Cheong ed.

97-02 제5차APEC頂上會議의 意義와 對策—APEC연구컨소시엄 라운드테이블 / 安炯徒 編

97-03 21세기 韓·中經濟의 비젼과 同伴者關係의 모색—韓·中修交 5주년 세미나 / 鄭永錄 編

97-04 러시아의 外國人 投資環境과 韓·러關係 / 李昌在 · 金秉熙 編

97-05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 Bak-Soo Kim ed.

98-01 新政府의 輸出支援戰略과 通商政策課題: GATT/WTO 체제 50주년기념 정책세미나 / 孫讚鉉 編

98-02 Korea and Central America: Toward a New Partnership in Changing / Won-Ho Kim ed.

98-03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 Mikyung Yun ed.

98-04 21세기를 향한 韓·中·日 經濟協力의 새로운 모색 / 李昌在 編

99-01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00-01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 王允鍾 編

00-02 Shared Prosperity and Harmony / Kyung Tae Lee ed.

00-03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 Chong-Wha Lee ed.

00-04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 Il SaKong and Yunjong Wang eds.

00-05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 Yunjong Wang and Hyong-Kun Lee eds.

01-0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 / Yoon Hyung Kim and Yunjong Wang eds.

01-02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 Hyungdo Ahn ed.

02-01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 Hyong-Kun Lee ed.

02-02 중국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방안 / 朴月羅・崔義炫 編

02-03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 趙明哲 編

03-01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 Young-Rok Cheong, Doo Yong Yang, and Wang Tongsan eds.

03-02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 Choong Yong Ahn, Takatoshi Ito, Masahiro Kawai, and Yung Chul Park eds.

03-03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 Heungchong Kim ed.

03-04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 Chan-Hyun Sohn ed.

03-05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 Chang-Jae Lee ed.

03-06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 Yunjong Wang ed.

■ APEC Study Series

00-01 An Analysis of CO2 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 Kihoon Lee and Wankeun Oh

00-02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 Byung-il Choi

00-03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 Chulwon Kim

00-04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 Taeho Bark and Hwy-Chang Moon

00-05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00-06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 Sung-Hoon Park

00-07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 Sang-yirl Nam

02-01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 Byung-il Choi

02-02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 Yongkyun Chung and Yongwhan Park

02-03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02-04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 Hongyul Han

03-01 Trade Struc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 Sang-yirl Nam

■ Discussion Papers

00-01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Focussing on Non-OECD Economies of APEC / Hyungdo Ahn, Junsok Yang, and Mikyung Yun

00-02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01-01 Korea's FTA (Free Trade Agreement)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01-02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 Chong Wha Lee

02-01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02-02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 Inkyo Cheong

02-03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 / Junsok Yang

02-04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Yunjong Wang

02-05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02-06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 Nakgyoon Choi

02-07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ies / Eui-Hyun Choi

02-08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02-09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02-10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 Chan-Hyun Sohn

02-11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Trade, Investment and Capital Account Market Openings / Chan-Hyun Sohn, Junsok Yang and Seung Beom Kim

03-01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a / June-Dong Kim

03-02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ies / Jonghwa Cho

03-03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 Haesik Park and Yunjong Wang

03-04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 Roadmap to Cancun*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03-05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Improved Financial Architecture for East Asia / Yunjong Wang and Wing Thye Woo

■ Working Papers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June-Dong Kim

97-02 APEC's Eco-Tech : Prospects and Issues / Jaebong Ro and Hyungdo Ahn

97-03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와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 王允鍾·李晟鳳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 Inkyo Cheong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 李晟鳳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 Jong-Bum Kim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 Sang-In Hwang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 Seung-Hee Han and Inkyo Cheong

97-09 IMF 救濟金融事例 硏究 :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 金元鎬 外

97-10 韓·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 李鍾華

97-11 러시아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 / 鄭鎔株

98-01 韓·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 程 勳·李鴻培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 Mikyung Yun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와 展望 / 金寬澔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 June-Dong Kim and Sang-In Hwang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Why the Era of Active Policy is Over / Chan-Hyun Sohn etc.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 Chong Wha LEE

98-07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1]: 英國 / 申東和

98-08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2]: 인도네시아 / 金完仲

98-09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3]: 美國 / 朴英鎬

98-10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4]: 中國 / 金琮根

98-11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5]: 泰國 / 權耿德

98-12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 Hyungdo Ahn and Hong-Yul Han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 金準東 外

98-14 最近 國際金融環境變化와 國際金融市場動向 / 王允鍾 外

98-15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 Yoo Soo Hong

98-16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 / 洪裕洙

98-17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통관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을 중심으로 / 孫讚鉉・任曉成

98-18 주요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 / 申東和

98-19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 尹美京・朴英鎬

99-01 改革推進 外國事例와 示唆點 / 金元鎬 外

99-02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 蔡 旭・徐暢培

99-03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 Inkyo Cheong and Yunjong Wang

99-04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Goals / Inkyo Cheong

99-05 OECD연구시리즈[3]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 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 張權鎬

99-06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 Korean View / Yunjong Wang

99-07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 Myung-Chul Cho and Hyoungsoo Zang

99-08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Hyungdo Ahn

99-09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 June-Dong Kim

99-10 OECD연구시리즈[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姜聲鎭

99-11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 / Jae-Jung Kwon and Joo-Ha Nam

99-12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before the Financial Crisis / Sung-Yeung Kwack

99-13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 Jong-Bum Kim

99-14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 Yunjong Wang

99-15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 Chong Wha LEE

99-16 OECD연구시리즈[4]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 權 栗

99-17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 王允鍾・申東和・李炯根

99-18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Agenda Solutions for ASEM III / Simonetta Verdi

99-19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ariff Reductions / Honggue Lee

99-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 / Sung-Hoon Park

99-21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 Byung-il Choi

99-22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APEC Economies: A Time Series Analysis

/ Sun G. Kim and Wankeun Oh

99-23 Ecotech and FEEEP in APEC / Ki-Kwan Yoon

99-24 OECD연구시리즈 5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尹美京・金琮根・羅榮淑

99-25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 Inkyo Cheong

99-26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The Realities and Prospects of Korea's Participation / Jae-Wan Cheong

99-27 OECD연구시리즈 6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 梁俊晳・金鴻律

99-28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 Hyungdo Ahn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 張亨壽・朴映坤

99-30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Inseok Shin and Yunjong Wang

99-31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the 3rd ASEM Summit: Two Scenarios / Chong Wha LEE

99-3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Enterprise Groups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1990s: The Impact of Financial Restructuring on the Keiretsu Structure / Yongsok Choi

99-33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 Yung Chul Park, Chae-Shick Chung, and Yunjong Wang

99-34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with Export Growth / Sang-yirl Nam

00-01 Issues in Korean Trade 1999: Trends, Disputes & Trade Policy / Junsok Yang and Hong-Youl Kim

00-02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Korea's Perspective / Sang-yirl Nam

00-03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 Jong Bum Kim

00-04 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A Korean Perspective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 Won-Ho Kim

00-05 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 Won-Ho Kim

00-06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ast Asia / Se-Jik Kim and Mark R. Stone

00-07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 Moonsung Kang

00-08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00-09 Patent Infringement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R&D and Export Subsidies / Moonsung Kang

00-10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 Jong-Il Kim and June-Dong Kim

00-11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 Moonsung Kang

00-12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Evaluation of Performances and Future Challenges / Seong-Bong Lee

00-13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Sang In Hwang and In-Sok Shin

01-01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01-02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 Wook Chae and Hongyul Han

01-03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 Kyung Tae Lee and Inkyo Cheong

01-04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 Mikyung Yun and Sungmi Lee

01-05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 Se-Jik Kim and Ivailo Izvorski

02-01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2-02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Rudi Dornbusch, and Yung Chul Park

02-03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ae-Shick Chung and Se-Jik Kim

02-04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Seong-Bong Lee

02-05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 Soon-chan Park

02-06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 Sammo Kang,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02-07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 Chang Soo Lee

02-08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02-09 A Dynamic Analysis of a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bed Asia-Pacific Model / Warwick J. McKibbin, Jong-Wha Lee, and Inkyo Cheong

02-10 Bailout and Conglomeration / Se-Jik Kim

02-11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 Chang-Jin Kim and Jong-Wha Lee

02-12 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 Heungchong Kim

02-13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 Chang-Soo Lee and Soon-Chan Park

02-14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 Chan-Hyun Sohn

02-15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02-16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 Chang-Soo Lee and Chang-Kyu Lee

02-17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Deepened? - Evidence from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02-18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85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 HongBae Lee

03-01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03-02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s Bond Market / Gyutaeg Oh, Daekeun Park, Jaeha Park, and Doo Yong Yang

03-03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3-04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 Hyungdo Ahn and Sunghyun H. Kim

03-05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s Terms of Trade and Real Exchange Rate: The Case of East Asia / Sammo Kang

03-06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03-07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 Zainal-Abidin Mahani,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03-08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y / Sang-yirl Nam and Junsok Yang

03-09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 Chang-Soo Lee

03-10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03-11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03-12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The Case of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03-13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3-14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vity Structure *Application of a Cournot-Ricardian Model* / E. Young Song and Chan-Hyun Sohn

03-15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grams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03-16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 Soon-Chan Park

03-17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 OECD 연구시리즈

00-01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 梁俊晢・金鴻律

00-02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 宋有哲・朴芝賢

00-03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금융・자본시장 / 黃祥仁・李炯根

00-04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 尹昌仁

01-01 OECD 규제개혁 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 梁俊晢・金鴻律

01-02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 張勝和

01-03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 金裕燦

01-04 프로스포츠와 競爭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 金元俊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03-01 Korea'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 Yao Shumei

03-02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朱尙榮

03-0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 李鍾郁

03-04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 安炯徒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 河由貞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 吳東胤・林泓修

02-02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金恩志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 朴映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 河由貞

02-05 인도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 방안 / 崔允瀞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裵嬉娟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배경과 시사점 / 權耿德

02-08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 증가 추이와 시사점 / 朴在旭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 李哲元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 崔義炫・趙錫軍・禹辰勳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 權耿德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 朴馥永・裵嬉娟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 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 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 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 李榮洙・徐煥周
00-05 日・北 經濟協力의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 金正濕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 楊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의 評價와 向後課題 / 金贊浣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 金昌男・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 高在模・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沈義燮・李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01-08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朴明浩
01-09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전략 / 鮮于鍵
01-10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韓鍾萬・成源鏞
01-11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 李奎榮
01-12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 可能性 / 安錫敎・許興鎬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 李忠彦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 程 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金鍊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cent Development /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 吳明錫
03-02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魏艾・范錦明・趙顯竣

姜文盛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mkang@kiep.go.kr)
著書 및 論文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공저, 2002)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공저, 2002) 외

宋有哲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ycsong@kiep.go.kr)
著書 및 論文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공저, 2002)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공저, 2001) 외

朴淳讚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sc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2002)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공저, 2001) 외

尹美京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국제관계학과 졸업
영국 Oxford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mkyun@kiep.go.kr)
著書 및 論文
『DDA TRIPS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공저, 2002)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공저, 2001) 외

李 根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現, E-Mail: kenneth@snu.ac.kr)
著書 및 論文
"China and East Asian Model of Business and Economy: Is China going to leapfrog the model?"(공저, 2002)
『산업재산권제도와 기업의 혁신 및 특허전략』(공저, 2002) 외

政策硏究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2003년 12월 20일 인쇄
2003년 12월 24일 발행

발 행 인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硏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 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1194-9 94320 정가 10,000원
89-322-1072-1(세트)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02)3460-1179 FAX:02)3460-1144
E-mail: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풀 토의자료 등 제공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Joint Research Series on FTA Issues 03-07

An Analysis on Trade Rules of Korea, Japan and China: Implications on an FTA among Three Countries

Moonsung Kang, Yoo Cheul Song, Soon-Chan Park,
Mikyung Yun, and Keun Lee

본 연구는 한 · 중 · 일 FTA가 규범중심의 경제통합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무역규범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무역규범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상기 분야에서 한 · 중 · 일 3국의 운용 현황과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고, WTO 규범과 같은 다자체제의 규범과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규범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기 분야가 한 · 중 · 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논의될 경우 어떠한 점이 쟁점사항으로 될 것인지 판별하였고,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제기하여야 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1179 FAX: 3460-1144

94320
9 788932 211947
ISBN 89-322-1194-9
89-322-1072-1(세트)

정가 10,000원